

2015년 귀속

세무사랑2TM

를 활용한

법인세 신고 실무

세무사랑2

한국세무사회가
소유하고 검증한
실무에서 가장 빠른
회계프로그램

똑같다!



KcLepTM
(케이렙)

한국세무사회 주관
전산세무회계
국가공인 자격시험
표준프로그램

• 케이렙은 '세무사랑2'의 교육용 버전을 말합니다.

차 례

2015년귀속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 개정세법	1
제1장. 「세무사랑2」에 의한 법인결산	43
제1절 기중 전표입력시 유의사항	44
1. 계정과목 중 적요내용과 세법과의 관계	44
2. 영수증수취거래의 구분	46
3. 선납세금관련 사항	55
제2절 기말결산과정	58
1. 오류확인을 위한 데이터체크	58
2. 현금예금조정	58
3. 결산자료의 수집과 정리	60
4. 재무제표의 확정	64
5. 표준재무제표	66
제2장. 재무제표에 의한 법인세조정	68
제1절. 법인세무조정의 기본적인 개념	68
1. 법인의 구분과 납세의무 범위	68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71
3. 세무조정	72
4. 소득처분	75
5. 법인세 계산구조	81
제2절. 재무제표에 의한 법인세조정	86
1. 재무제표 내용 중 즉시 세무조정 할 항목	86
2. 인건비	91
3. 이자소득 등의 귀속시기	97
제3장. [세무사랑2]에 의한 세무조정명세서 작성	99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99
2.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작성	114

3.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 관련 사항	129
4. 과목별세무조정-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155
5. 과목별세무조정-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162
6. 과목별세무조정-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170
7. 과목별세무조정-접대비등 조정명세서	177
8. 과목별세무조정-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185
9. 과목별세무조정-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	192
10. 과목별세무조정-세금공과금명세서	197
11. 과목별세무조정-선급비용명세서	201
12. 과목별세무조정-업무무관지급이자조정명세서	204
13. 과목별세무조정-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207
14. 과목별세무조정-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211
15. 과목별세무조정-준비금 조정명세서	221
16. 과목별세무조정-국고보조금등 손금산입조정명세서	234
17. 과목별세무조정-기부금조정명세서	236
제4장. [세무사랑2]에 의한 세액계산	245
1. 소득 및 과세표준계산	245
2. 공제감면추납세액	254
3. 조특법서식	293
4. 세액계산 및 신고서작성	294
5. 신고부속 기타서식	304
6. 세액계산및신고서-법인세과표 및 세액신고서	316
7. 납부서 작성	318
8.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서 작성	319
9. 결손금소급공제에 대한 환급신고서	332
10. 법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338
1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342

※ 본 교재는 프로그램 기능 설명 위주의 책자이므로,
실제 적용시 꼭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 개정세법

I. 법인세법 주요개정내용

01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가. 개정취지

- 금융회사 등의 정기에금이자율 변동을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요율2.9%	<input type="checkbox"/> 요율 조정 2.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2 유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허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가. 개정취지

-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신 설></p> <p>※ 현재 임원·사용인 사망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에 대해 손금불인정</p>	<p><input type="checkbox"/> 손금산입 허용</p> <p><input type="radio"/> 사용인·임원(지배주주 등 제외)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p> <p>- 사망 전 정관이나 이사회결의 등으로 결정되어 사용인·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급분부터 적용

03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손금산입 허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가. 개정취지

-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시 손금산입</p> <p><input type="radio"/> (적용대상) 현금정산형, 자기주식 교부형 스톡옵션*</p> <p>*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주권상장법인 등의 스톡 옵션에 적용</p> <p><input type="radio"/> (손금산입비용)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p>	<p><input type="radio"/>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추가</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0.1. 이후 주식 발행분부터 적용

04 폐기물매립시설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제2항제3호)

가. 개정취지

- 매립량에 따라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의 특성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감가상각액 계산방법 <input type="radio"/> 건축물, 무형고정자산 : 정액법 <input type="radio"/> 건축물 외 유형고정자산 : 정률법 또는 정액법 <input type="radio"/> 광업권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신 설>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bottom: 10px;">(좌 동)</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폐기물매립시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폐기물매립시설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05 중소기업 설비투자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유형고정자산(시험연구용 자산 제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input type="radio"/>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의 설비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input type="radio"/> (요건) 전년 대비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 <input type="radio"/> (대상자산) 2014.10.~2015.12월 중 취득한 설비자산 <input type="radio"/>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0.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06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①+②) ① 기본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업 : 1,200만원 - 중소기업 : 1,800만원 ② 수입금액 × 적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소기업 기본한도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중소기업 : 2,400만원 ② (좌 동)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0.2%
100 ~ 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 적용기한 : 2016.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의 취득가액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6호)

가. 개정취지

-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가액 <input type="radio"/> 정부로부터 무상할당 받아 취득한 배출권 : 영(0)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에 대해서도 적용

08 적격합병·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 완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바목)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적격합병·분할 이후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처분해도 사후관리 위반이 되지 않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에 따른 회생 절차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주식 처분시 <div style="margin-left: 20px;"><추 가></div> <div style="margin-left: 20px;"><추 가></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 금융기관협의회 등이 부실징후기업의 주식매각을 심의의결하여 주식 처분시 ○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해 부실징후기업의 주식 처분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0.1. 이후 주식등을 처분하는 분부터 지원

09 법인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

가. 개정취지

- 부동산 거래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법인보유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추가과세 <input type="radio"/> (세율) 법인세율 + 10% <input type="radio"/> (시행시기) 2014.1.1. 이후* <p style="margin-left: 20px;">* 단 중소기업은 2015.1.1. 이후 (2014년 추가과세 유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추가과세 1년 유예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중소기업 1년 추가 유예 (2016.1.1. 이후 시행) <p style="margin-left: 20px;">* 「법인세법」(제2166호, 2014.1.1.) 부칙 제8조</p>

10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을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4항제1호의2)

가. 개정취지

- 토지의 효율적 활용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input type="radio"/>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input type="radio"/>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 체결시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추가 <li style="margin-left: 20px;">(좌 동) <input type="radio"/>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해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p style="margin-left: 20px;">* (요건)</p>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분할일 것 ② 토지의 교환으로 인한 변동면적이 교환 대상 토지 전체 규모의 2/10 이내일 것 ③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것 등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11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기준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제1호다목, 제2호다목, 제3호나목)

가. 개정취지

-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판정시 토지의 장기 소유자에 불리한 보유기간 기준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업용 토지 사용기간 (①~③ 중 하나의 요건 충족)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초과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초과 ③ 토지 소유기간의 80% 초과	<input type="checkbox"/> 기간기준 합리화 <input type="checkbox"/> (좌 동) ○ 80% → 60% 초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시 취득가액 적용 방법 보완

(법인세법 제55조의2제6항)

가. 개정취지

- 비영리법인의 특수성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취득가액 계산방법 <input type="checkbox"/> 장부가액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 취득가액 - 장부가액	<input type="checkbox"/> 비영리 내국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보완 (좌 동) - 다만, 1990.12.31. 이전 취득자산 : Max(장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법인세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가계소득 간 선순환 유도

나. 개정내용

- 당기 소득의 일정액 중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
-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 (과세방식) 개별기업 상황에 따라 , 방식 중 선택
 - [소득 × 60 ~ 80%(α) - (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 10%
 - [소득 × 20 ~ 40%(β) - (임금증가+배당액등)] × 10%

종 전	개 정
<p><신 설> <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세부 과세기준 <input type="checkbox"/> (기준율) 투자포함방식(α) 80%, 투자제외방식(β) 30% <input type="checkbox"/> (과세대상 소득) 「법인세법」상 소득금액(개별기준)에 가감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항목)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국세환급금 이자 익금불산입액, 당기 투자자산의 당해연도 감가상각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 투자자산(과세대상소득 차감)의 당기 감가상각분은 당기비용으로 소득에서 기차감되므로 이중차감 제거를 위해 가산 조정(투자포함방식만 해당) - (차감항목)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환류세 제외),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접대비·과다경비 등 기타 손금부인액은 미차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준비금(2013년말 일몰종료) 환입액은 준비금 적립 후 3년내 R&D지출비용에 한해 차감 <input type="checkbox"/> (투자의 범위)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형고정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등(협력중소기업 무상설치자산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상각되는 비품 등은 당기소득에서 비용으로 기차감되므로 제외 -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 및 신·증축용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사업장 등 업무용 건물 범위 및 업무용 판단기준은 시행규칙에 규정 ② (무형고정자산) 개발비*, 특허권·상표권·광업권 등(영업권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경우 개발비(자산)로 계상 가능 ③ (투자자산 사후관리) 취득 후 2년 내 양도·임대시 추정

	<p>- 단, 2년 내 협력중소기업에 무상임대·양도시는 예외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증가액) 임원, 고액연봉자(1.2억원 이상), 최대주주 및 그 친족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액 ○ (배당 범위) 현금배당(중간·결산배당), 자사주매입(소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①상장법인, ②취득 후 1개월 내 소각 등 ○ (여타 차감항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 (과세방식 선택) 최초 선택시 3년간 의무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합병 또는 경영권인수 목적 지분인수가 있는 경우 과세방식 변경 허용(예 : 투자포함 → 투자제외 방식) □ (적용시기) 201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 완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13항)

가. 개정취지

-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신고 기한 연장 특례 ○ (연장기한) 1개월 ○ (이자율) 1일 1만분의 3(연 10.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율 인하 ○ (좌 동) ○ 국세환급금 이자율(연 2.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5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 허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input type="checkbox"/> 직전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 <input type="checkbox"/>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input type="checkbox"/>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를 성실히 이행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신청 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신규사업장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반기납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6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등

(법인세법 제76조제7항)

가. 개정취지

- 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 완화 등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이자배당소득 등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 <input type="radio"/> (부과사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div style="text-align: center;"><추 가></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가산세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 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단,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17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제6호, 제121조제1항제5항제7항)

가. 개정취지

-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p> <p><input type="radio"/> 공급가액×2%</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화</p> <p><input type="checkbox"/> 전자계산서 미발급등 가산세</p> <p><input type="radio"/> 공급가액 × 2%</p> <p><input type="radio"/> 다만,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 × 1%</p> <p><input type="checkbox"/> 지연(미)전송 가산세</p> <p><input type="radio"/> 공급가액×가산세율*</p> <p style="margin-left: 20px;">* 지연전송 0.5%(단, 2016.12.31. 이전 공급분 0.1%)</p> <p style="margin-left: 20px;">* 미전송 1%(단, 2016.12.31. 이전 공급분 0.3%)</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발급의무) 2015.7.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 (가 산 세) 2016.1.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18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제4호)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조직변경에 따른 세부담의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p> <p><input type="radio"/>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p>	<p><input type="radio"/> (좌 동)</p>

<p>○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등 <신 설></p>	<p>○ (좌 동)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p>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9 합병시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판정기준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가. 개정취지

- 사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제도운용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합병 후 구분경리 의무가 면제되는 동일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기준</p> <p>○ 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추 가></p>	<p>-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동일사업 간의 합병으로 인정</p> <p>*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 금융공사가 각각 영위하던 사업</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II. 조세특례제한법 주요개정내용

01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우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비상장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촉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input type="radio"/>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세액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신규 상장법인 세제지원 확대 <input type="radio"/> 적용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신규 상장법인* 중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 <p style="text-align: center;">* 2015.1.1. ~ 2015.12.31. 중 상장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세액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의 3% - 다만, 신규 상장법인은 4%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02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5.1.1. 시행)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요건 간소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요건 ○ 규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등 46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상시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준 이내 ○ 졸업기준(기준초과시 중소기업 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종업원 수 : 1천명 이상 - 자기자본 : 1천억원 이상 - 매출액 : 1천억원 이상 - 자산총액 : 5천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요건 간소화 ○ 규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준* 이내(상시종업원수, 자본금 기준 폐지) * 업종별로 400/600/800/1,000/1,500억원 그룹으로 세분화 ○ 졸업기준(기준초과시 중소기업 졸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삭 제>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 : 5천억원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게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3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가. 개정취지

- 관계기업도 비관계기업과 동일하게 졸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기업 간 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 <input type="radio"/> 다음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중소기업 외의 기업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 <input type="radio"/> 독립성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 채무보증제한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 출자(최대출자자)한 피출자기업 - 관계기업*과의 매출액 등 합산액이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지배(외부감사대상기업)·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졸업기준 적용 ** 매출액 1천억원, 자산총액 5천억원, 상시 사용 종업원수 1천명,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input type="radio"/> 창업 후 2개 과세연도 내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졸업 유예기간 적용대상 확대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관계기업은 졸업 유예기간 적용 <input type="checkbox"/>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input type="radio"/>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0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input type="radio"/> 적용대상 - 제조업 등(42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추 가> <input type="radio"/> 세액감면율 -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산출세액의 5~30% 감면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 2014.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 <input type="radio"/>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영화관 운영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택임대관리업 추가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 201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5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요건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등)

가. 개정취지

- 「중견기업법」에서 중견기업 요건이 추가된 점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기업 요건 <input type="radio"/> 중소기업이 아닐 것 <input type="radio"/>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input type="radio"/>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li style="margin-left: 20px;">* R&D 세액공제의 경우 5천억원 <input type="radio"/>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아닐 것 <p style="text-align: right;"><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요건 추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height: 40px; margin: 10px 0;"></div>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6 대기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 당기분방식 공제율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4))

가. 개정취지

- 대기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대기기업 당기분 방식 공제율 <input type="radio"/> 3~4% (기본 3% + 추가 1%*) * (R&D비용/매출액) × 1/2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인하 <input type="radio"/> 2~3% (기본 2% + 추가 1%*) * (R&D비용/매출액) × 1/2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게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7 신성장동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가. 개정취지

- 문화콘텐츠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신성장동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술 <input type="radio"/> 에코LED, 그린카 등 31개 분야 63개 기술	<input type="checkbox"/> 문화콘텐츠 분야 기술 추가 <input type="radio"/> (좌 동)

<추 가>	<input type="radio"/> 영상콘텐츠(영화·애니메이션·방송) 및 게임콘텐츠의 기획·제작·서비스 관련 기술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세액공제율 : 중소기업 30% 일반기업 20%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 2015.12.31	<input type="radio"/>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4.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

08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AMOLED)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8)

가. 개정취지

-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input type="radio"/> (대상기술) - 대화면 AMOLED* 화소제작용 레이저 전사(LITI) 소재 제조 기술 *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 그 외 50개 대상기술 <input type="radio"/> 세액공제율 : 중소기업 30% 일반기업 20%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 2015.12.31	<input type="checkbox"/> AMOLED 분야 기술 조정 <input type="radio"/> (대상기술 확대) - 대화면 AMOLED 부품·소재·장비·패널 제조(모듈공정제외) 기술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4.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

9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특허권, 실용신안권,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 등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 중소기업 <추 가>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 201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특허권 등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10 중소기업의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3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자체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세액감면율 : 25%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 2015.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특허권 등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11 기술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 설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5항)

가. 개정취지

-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 중견기업 범위 <input type="checkbox"/>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 등 <input type="checkbox"/> “자체개발한 특허권등” 정의 <input type="checkbox"/> (특허권·실용신안권)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내국인이 최초로 설정등록한 특허권·실용신안권 <input type="checkbox"/> (기술비법)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특허권 등을 이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12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 공제제도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제2항)

가. 개정취지

- 중견기업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input type="radio"/> 적용대상 : 공정 개선·자동화·정보화 시설, 첨단기술설비, 지식관리시스템 등 <input type="radio"/> 공제율 : 일반기업 3%, 중소기업 7%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 2014.12.31.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구간 신설, 적용기한 연장 <input type="radio"/> 공제율 : 대 기 업 3% 중견기업 3% → 5% 중소기업 7%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 201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13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 공제제도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p> <p>○ 적용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예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예방시설 · 「도시가스사업법」 상 가스안전관리시설 <추 가> - 광산 보안(안전)시설, 식품 위해요소 방지시설, 기술유출 방지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 가> <p>○ 세액공제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의 3% <p>* 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설비 투자시에는 7%</p> <p>○ 적용기한 : 2014.12.31.</p>	<p>○ 적용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예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상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시설 - (좌 동) - 소방시설 및 소방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경우에 한함 <p>○ 세액공제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기 업 3% <li style="padding-left: 20px;">중견기업 3% → 5% <li style="padding-left: 20px;">중소기업 3% → 7% <p>* 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설비 투자시에는 7% → 10%</p> <p>○ 적용기한 : 2017.12.31.</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14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제1호)

가. 개정취지

- 기업의 효과적인 토양오염방지시설 투자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input type="radio"/>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li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10px 0 10px 40px;"><추 가> <input type="radio"/> 세액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 3% - 중견기업 : 5% - 중소기업 : 10%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201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적용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오염방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 인 시설의 설치의 권장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한 함(법상 의무설치시설은 제외)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5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 정비
 ①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가. 개정취지

○ 대기업 지원 축소,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 지원

<2015년 이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단위 : %)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기본공제	0	0	1	2	3	3	
추가공제	일 반	3	4	4	5	4	5
	서비스	4	5	5	6	5	6
합 계	일 반	3	4	5	7	7	8
	서비스	4	5	6	8	8	9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 기업규모, 투자지역, 고용증가 정도에 따라 투자액의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 : 고용유지시* 1~4%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에도 적용하되, 고용 감소 인원 1명당 1,000만원 차감 - 추가공제* : 고용증가시 3% - 추가공제* : 고용증가시 3% * 한도 : 고용증가인원 X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생 2천만원, 청년장애인 60세 이상 1,500만원, 기타 1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조정 : 4 ~ 7% ⇒ 3 ~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 기본공제 폐지(1~2 → 0%) - 중견중소기업 : 기본공제율 1% 인하, 추가공제율 1% 인상 - 수도권 밖 투자시 추가공제율 1% 인상 - 서비스업은 추가공제율 1% 인상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기본공제	1%	2%	2%	3%	4%	4%
(고용감소시)	(배제)				(축소)	
추가공제	3%	3%	3%	3%	3%	3%
합 계	4%	5%	5%	6%	7%	7%

○ 적용기한 : 2014.12.31.

○ 적용기한 : 201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6 ② 추가공제율 한도 우대대상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한국형 직업학교) 졸업생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가. 개정취지

○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추가공제 한도</p> <p><input type="radio"/> 고용증가인원당 2,000만원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종학교 중 일반고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 교육을 수행하는 학교 졸업생 <추 가></p> <p><input type="radio"/> 고용증가인원당 1,500만원 -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p>	<p><input type="checkbox"/>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 우대대상 확대</p> <p><input type="radio"/> 고용증가인원당 2,000만원 - (좌 동) - (좌 동) -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졸업생</p> <p><input type="radio"/>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증가인원당 1,000만원 - 기타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17 서비스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가. 개정취지

- 서비스업 설비투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고정자산(시험연구용 자산 제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업 영위 기업의 설비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 (요건) 2년 연속 설비투자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서비스업* 영위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우대 대상 서비스업(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43개) 중 농업, 광업, 제조업 등을 제외한 37개 업종) ○ (대상자산) 기업이 2015.1.1. ~ 2015.12.31. 까지 취득한 설비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가속상각 특례대상 설비투자자산(「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과 동일 -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p><input type="checkbox"/>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결산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4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p><input type="checkbox"/>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손금산입 가능(신고조정)</p>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18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가. 개정취지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대상)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 (경력단절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 ~ 5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직 ○ (세제지원) 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 적용기한 : 201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19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가. 개정취지

- 근로자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요 <input type="radio"/> (적용대상) 모든 기업(대·중견·중소기업) <input type="radio"/> (적용요건)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임금 계산시 임원, 고액연봉자(1.2억원) 등 제외 -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input type="radio"/> (세액공제율) 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 5% <input type="radio"/> (세액공제액) [당해연도 평균임금 - 직전연도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 직전연도 근로자 수 × 세액공제율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2017.12.31. <input type="checkbox"/> 임금의 범위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20①1·2호에 한함)에 해당하는 금액 <input type="checkbox"/> 평균임금 계산방법 $\frac{\text{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임금의 합계}}{\text{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input type="checkbox"/> 평균임금 증가율 계산방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text-align: center;"> $\frac{\text{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text{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text{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div>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계산방법(일반사례)

$$\frac{\begin{matrix} \text{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 \text{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 \text{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end{matrix}}{3}$$

* 직전 2년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 그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0으로 보아 위 산식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0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1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 2013.6.30 현재 비정규직을 2014.12.31. 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 적용기한 : 2014.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지원 확대 ○ 2014.6.30 현재 비정규직을 2015.12.31. 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 적용기한 : 2015.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2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8항제12항)

가. 개정취지

- 지역 간 균형발전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대도시 소재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 양도차익 과세이연(5년거치 5개 사업년도 분할익금 산입) ○ (적용기한) 2014.12.31. <input type="checkbox"/>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 등의 양도차익 과세이연(5년거치 5개 사업년도 분할익금 산입) ○ (적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밀억제권→과밀억제권 외 지역 이전등 <추 가> ○ (사후관리) 아래 사유 발생 시 과세이연 금액 익금산입 및 이자상당가산액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요건 기간내에 본점 등을 이전하지 않은 경우 등 - 이전 후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50% 이상인 경우 ○ 적용기한 : 2014.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17.12.31. <input type="checkbox"/> 요건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이전 후 동일업종 영위 - (좌 동) - 이전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후 과밀억제권역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50% 이상인 경우 ○ 적용기한 : 201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적용요건) 2015.1.1. 이후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사후관리) 2015.2.3.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22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감면기산연도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4항)

가. 개정취지

- 지방이전 초기 결손기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세제 지원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감면기산 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적용기한 : 2015.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감면기산 연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2015.1.1.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

23 중소기업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기산연도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 지원 <input type="radio"/> 대상 : 중소기업 공장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input type="radio"/> 지원내용 - 소득세 및 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지방광역시, 수도권 인접지역 등으로 이전시 7년간 감면 <input type="radio"/> 감면기산 연도 -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 2014.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및 기산일 변경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감면기산 연도 변경 -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 201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2015.1.1. 전에 공장시설을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

24 법인의 지방이전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 재설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가. 개정취지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법인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input type="checkbox"/> 대상 : 지방이전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input type="checkbox"/> 지원내용 - 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지방광역시, 수도권 인접지역 등으로 이전시 7년간 감면 <input type="checkbox"/> 감면기산 연도 -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input type="checkbox"/> 감면제외업종 - 부동산업·소비성 서비스업·건설업 <input type="checkbox"/> 감면대상소득 : ①×Min(②,③) ① 과세표준 - 토지·건물 양도차익 등 ②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비율 ③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인원비율 <추 가> <input type="checkbox"/> 감면세액 추징 - 지방이전일 후에 수도권 근무인원이 50%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 2014.12.31.	<input type="checkbox"/> 기산일 변경 등 제도개선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감면기산 연도 변경 -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input type="checkbox"/> 감면제외업종 추가 - (좌 동) - 무점포판매업, 해운중개업 <input type="checkbox"/> 감면대상소득 : ①×Min(②,③)×④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좌 동)</div> ④ 위탁가공무역외 매출비율 <input type="checkbox"/> 감면세액 추징 완화 - 지방이전일로부터 3년 후에 수도권 근무인원이 50%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 201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다만, 감면제외업종 추가 및 감면소득산식 변경은 201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25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택임대 사업자 세액감면 <input type="radio"/> 소형임대주택 : 20% <input type="radio"/> 준공공임대주택 : 20%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 2016.12.31	<input type="checkbox"/> 준공공임대주택 감면율 확대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준공공임대주택 : 50% <input type="radio"/>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

26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추정세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4항)

가. 개정취지

- 추정세액 계산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감면받던 내국인이 5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하는 경우 추정세액 <input type="radio"/> 감면받은 세액의 60%와 이자상당 가산액 (1일, 0.03%) 추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

27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

가. 개정취지

- 기업의 문화·예술비 지출을 지원하여 문화접대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p> <p>※ 문화접대비는 일반접대비와 별도로 접대비 한도를 10% 추가하여 손금산입 허용</p> <p>○ (적용기한) 2014.12.31.</p> <p>○ (적용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공연·전시회, 박물관, 체육 활동 관람, 문화관광축제, 관광공연장, 문화재 관람입장권 구입비용 - 비디오물, 음반·음악영상물, 간행물 구입비용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p> <p>○ (적용기한) 2017.12.31.</p> <p>-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비용 및 초빙강연료 등</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28 건축물에 대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같은 법 제94조제4항)

가. 개정취지

- 처분·전용이 용이한 점을 감안하여 사후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감면세액의 추징(§ 146) ○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투자 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임대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절약시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input type="checkbox"/>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감면세액의 추징(§ 94) ○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건물·건축물* 사후관리기간 연장 ○ 2년(또는 3년) → 5년 *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박물관·미술관, 공연장 등 ②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사내 부속의료기관 ③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 창고시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Ⅲ. 지방세법 주요개정내용

01 둘 이상의 지자체에 법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고 합리화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항, 제5항~제7항)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시 제출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신 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둘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별 관할 지자체에 각각 제출 <li style="text-align: center;"><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시 제출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둘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장에 제출하면 각 사업장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서 미제출시 무신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2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합리화

(지방세법 제101조 제2항, 제103조의28 제2항)

종 전	개 정
<p>□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법인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지자체에 환급신청 <신 설> 	<p>□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법인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지자체에 환급신청 -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환급을 신청한 경우 환급신청한 것으로 보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른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제 1 장

「세무사랑2」에 의한 법인결산

[세무사랑2] 프로그램에서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하여 학습하기 위하여 회사코드 「0101」 (주)한국세무의 기본데이터를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설치한다.

- ① (주)한국세무의 기본데이터를 컴퓨터에 저장한다.(저장한 위치는 반드시 기억할 것) 만약 압축된 상태라면 반드시 압축을 해제한 후 저장한다.
- ② 저장된 데이터를 복사하여 [세무사랑2]의 데이터저장 장소를 확인하고 복사한 데이터를 붙여넣기한다. 만약에 F드라이버에 데이터를 저장한다면 다음 위치에 붙여넣기하면 된다.

내컴퓨터 - F드라이버 - NewGenDB - Rebirth

이때 기존데이터의 회사코드번호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중복인 경우 반드시 회사코드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중복코드를 그대로 진행하면 기존의 데이터는 삭제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③ [세무사랑2]의 로그인 화면에서 [회사코드재생성]버튼을 클릭하여 회사정보를 인식시킨 후 회사코드를 조회하면 「(주)한국세무」란 회사를 찾을 수 있다.



제1절 기중 전표입력시 유의사항

1. 계정과목 중 적요내용과 세법과의 관계

1) 개념정리

특정 계정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적요의 내용이 각종 신고서식 작성 및 세무조정사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특정 계정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랑2」에 등록되어 있는 적요의 코드번호를 이용하여 전표 등을 입력하여야 각종 세무신고서식 등이 정확하게 작성이 된다.

간혹 전표입력시 등록된 적요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적요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세무신고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은 각 계정의 적요내용과 세무신고서식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계정과목	적요 및 코드			세무서식에 미치는 영향
134 가지급금 257 가 수 금	구분	고정적요		인정이자계산서 인별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적수계산
	현금	1	대표이사 가지급	
	현금	4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대체	1	대표이사 가지급	
	대체	4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146 상 품 150 체 품 153 원 재 료	구분	고정적요		결산분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과 연결
	현금	6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자동반영분	
	현금	7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자동	
	현금	99	구리스크랩등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자동	
	대체	6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반영분	
	대체	7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신고서 반영	
	대체	8	타계정으로 대체액 손익계산서 반영분	
	대체	9	타계정에서 대체액 손익계산서 반영분	
	513 접 대 비 613 접 대 비 713 접 대 비 813 접 대 비	구분	고정적요	
현금		1	신용카드등 사용 일반접대비	
현금		3	신용카드등 사용 해외접대비	
현금		5	신용카드등 사용 경조사비	
현금		7	신용카드등 사용 문화, 예술접대비	
현금		10	거래처에 현물접대	
현금		11	증빙불비접대	
현금		12	개인적인 용도의 업무무관비용	
대체		1	신용카드등 사용 일반접대비	
대체		3	신용카드등 사용 해외접대비	
대체		5	신용카드등 사용 경조사비	
대체		7	신용카드등 사용 문화, 예술접대비	
대체		10	거래처에 현물접대	
대체		11	증빙불비접대	
대체		12	개인적인 용도의 업무무관비용	

2) 계정과목성격파악: 회계기준 vs 세법

각 계정과목은 그 계정별 성격이 존재한다. 이 성격은 일반적으로 회계기준이나 세법이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가지급금과 가수금만큼은 회계기준과 세법상의 개념에 큰 차이가 있다.

가지급금 (가수금)	회계기준	현금 등의 출금(입금)에 대한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사용하는 임시계정으로 결산시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여야 함
	법인세법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차입액)

이처럼 [세무사랑2]에 기본적으로 설정된 가지급금 및 가수금의 성격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를 세무회계 성격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계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적요번호로 구분하여 전표를 입력하여야 한다.

계정과목	적요 및 코드		세무서식에 미치는 영향
134 가지급금	구분	고정적요	인정이자계산시 인별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적수계산
257 가 수 금	현금	1 대표이사 가지급	
	현금	4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대체	1 대표이사 가지급	
	대체	4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그러나 세무회계의 성격인 가지급금 등을 사용하여도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가지급금」계정은 기업회계에 의한 계정으로 인식되며 결산재무제표에 임시계정과목이 반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무사랑2]에서 세무회계의 성격을 가진 가지급금계정을 일반계정과목 중에서 그 성격을 별도로 부여하여 세무회계의 성격을 가진 가지급금계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세무회계의 성격인 가지급금은 기업회계의 「대여금」계정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기업회계상의 「대여금」계정의 성격을 「가지급금」으로 부여하여 가지급금 관련 세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¹⁾

1) 세무회계의 성격인 가수금은 기업회계의 「차입금」계정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기업회계상의 「차입금」계정의 성격을 「가수금」으로 부여하여 가지급금 관련 세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코드/계정과목	성격	관계
0112 공 사 미 수 금	3.일 반	
0113 대 손 총 당 금	4.차 감	0112
0114 단 기 대 여 금	7.가 지 급 금	
0115 대 손 총 당 금	4.차 감	0114
0116 미 수 수 익	3.일 반	
0117 대 손 총 당 금	4.차 감	0116
0118 분 양 미 수 금	3.일 반	
0119 대 손 총 당 금	4.차 감	0118

계정코드(명)
성격
관계코드(명)
영문명
과목코드
사용여부
계정수정구분
표준재무제표

0114 단기대여금

7.가 지 급 금

Short-term Loans

0114 단기대여금

1 (1:사용 7.가 지 급 금)

계정과목명, 성격

29 다.기타

코드/계정과목	성격	관계
0258 예 수 보 증 금	2.일 반	
0259 선 수 금	2.일 반	
0260 단 기 차 입 금	5.가 수 금	
0261 미 지 급 세 금	2.일 반	
0262 선 지 급 비 용	2.일 반	
0263 선 수 수 익	2.일 반	
0264 유 동 성 장 기 부 채	1.차 입 금	
0265 미 지 급 배 당 금	2.일 반	

계정코드(명)
성격
관계코드(명)
영문명
과목코드
사용여부
계정수정구분
표준재무제표

0260 단기차입금

5.가 수 금

Short-term Borrow

0260 단기차입금

1 (1:사용 5.가 수 금)

계정과목명, 성격

237 다.기타

[3026] 가지금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1. 가지금금,가수금 입력 2. 차입금 입력 3. 인정이자계산 : (올)지 4. 인정이자조정 : (갹)지 적용이자율선택 :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가지금금,가수금 선택: 1. 가지금금

직책	성명	적요	년월일	차변	대변	잔액	입수	적수
1 대표이사	홍길동	1 2.대여	2012 1 5	100,000,000		100,000,000	274	27,400,000,000
2		2 3.회수	2012 10 5		50,000,000	50,000,000	88	4,400,000,000

회계데이터 불러오기 [가지금금류]

직책	성명	계정과목	적요번호	데이터불러오기
1 대표이사	홍길동	0114 단기대여금	1 4	1. 불러오기

일자별 통합해서 불러옴(F4)
같은일자, 같은 적요번호는 통합해서 불러옵니다.(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 전기분재무상태표의 134. 가지금금계정의 직책, 성명이 같아야만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회계전표 불러오기(Tab) 코드도움(F2) 삭제(F5) 직책,성명 불러오기(F3) 취소(Esc)

2. 영수증수취거래의 구분

1) 개념정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적성 또는 수취하여 이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

다.2)

이 경우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라 함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규정된 것(이하 ‘적격증빙서류’라 한다)을 의미하며 적격증빙서류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전표를 입력할 때 거래증빙서류가 적격증빙서류인지 여부와 적격증빙서류수취제외대상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영수증수취명세서」 및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법인세 및 소득세의 세무조정시 관련 가산세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적격증빙서류)

- ①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 ②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조특법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포함)
- ③ 신용카드매출전표³⁾(직불카드, 선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함)
- ④ 현금영수증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거래건당 금액(부가세 포함)⁴⁾이 3만원 미만인 경우
- ② 거래상대방이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세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한함)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 ③ 금융 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⑥ 비영리내국 외국법인(수익사업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⑦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⑧ 원천징수대상 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함)
- ⑨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⁵⁾

2) 다만,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 접대비의 비용을 법인의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있으며 당해 지출증빙서류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임(제도 46012-10511, 2001.4.10)

4)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5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

「참고」 적격증빙수취거래의 요건요약

법인의 거래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① 사업자와의 거래인가?
- ② 재화나 용역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가?
- ③ 재화나 용역의 소유권이전방법이 계약이나 법률에 의한 것인가?
- ④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할 예정인가?

2) [세무사랑2] 운영방법

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영수증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 46012-2392, 2000.12.16)

-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과 같다.
- ㉗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㉘ 부가가치세법상의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㉙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 의사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다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㉚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함 경우 제외)
 - ㉛ 공매 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㉜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제외)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㉝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㉞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출하는 경우
 - ㉟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㊱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㊲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㊳ 재화공급계약 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㊴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 ㊵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 ㉠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 ㉢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간이과세사에 한함)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㉗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 간이과세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㊶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의 경우로서 송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 인터넷, PC통신 및 TV 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1) 일반전표 입력 방법

①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일반전표입력」메뉴에 입력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일 번호	구분	계 정 과 목	거 래 처	적 요	차 변	대 변
28	0000	출금 0829 사무용품비		2. 문구대금 지급	100,000	(현금)
합 계					12,090,000	12,090,000

카드등사용여부: 1. 명세서 해당없음

계정과목	적요	차변(출금)	대변(입금)
0829 사무용품비(판)	2 문구대금 지급	100,000	
0101 현금			100,000
합 계		100,000	100,000

말련: 1. 신용카드등, 2. 현금영수증, 0. 부

②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일반전표입력」메뉴에 입력은 거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입력하여야 법인세 및 소득세액 계산시 가산세 등이 정확하게 반영된다.

구 분	비 고
1. 해당사항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업자와의 거래인 경우 · 재화나 용역이 아닌 것을 제공받은 경우 ex) 장려금 지급
2. 명세서제출대상거래	· 적격증빙수취대상으로서 수취하지 못한 경우
3. 명세서제출제외대상내역	· 적격증빙수취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한 거래인 경우
4. 증빙불비(원인입력)	· 적격증빙 및 비적격증빙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 [1. 해당사항없음]의 경우

ex) 직원소유의 차량을 매입한 경우-비사업자와의 거래에 해당

일	번호	구분	계정과목	거래처	적요	차변	대변
23	00001	출금	0208 차량운반구	00108 홍길동	1 차량 취득시 현금지급	5,000,000	(현금)
합 계						5,100,000	5,100,000

카드등사용여부 [부 1.명세서 해당없음]

계정과목		적요	차변(출금)	대변(입금)
0208	차량운반구	1 차량 취득시 현금지급	5,000,000	
0101	현금			5,000,000
합 계			5,000,000	5,000,000

NO : 1 (출금) 전표 일자 : 2013년 3월 29일

㉡ [2. 명세서제출대상거래]의 경우

이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로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으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전표를 입력할 때 미리 관련자료가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ex) 직원회식비를 1,000,000원 지출한 경우로서 간이영수증 수취한 경우

일	번호	구분	계정과목	거래처	적요	차변	대변
31	00001	출금	0811 복리후생비	00116 김밥천국	5 직원회식대 지급	1,000,000	(현금)
합 계						6,100,000	6,100,000

카드등사용여부 [부 2.명세서 제출대상거래]

계정과목		적요	차변(출금)	대변(입금)
0811	복리후생비(판)	5 직원회식대 지급	1,000,000	
0101	현금			1,000,000
합 계			1,000,000	1,000,000

NO : 1 (출금) 전표 일자 : 20년 3월 31일

전표입력시 [카드등사용여부]에서 [부]를 선택하고 [2.명세서제출대상거래]를 선택하면 관련 거래처를 등록하는 [영수증수취/사업용계좌등 등록-조회 및 등록]창이 나타나며 기존에 등록된 거래를 찾아서 입력한다.

만약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공급자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Tab)]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공급자코드가 부여됨과 동시에 등록된다.

영수증수취/사업용계좌등 등록 - 조회 및 등록

영수증수취 공급자등록사항

1. 거래일자 20-01-01

2. 공급자코드 00102 거래처코드도움[F3]

3. 상호 김밥천국

4. 사업자등록번호 114-02-59269

5. 주민등록번호 -----

6. 성명 김뽕뽕

7. 사업장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111111

8. 은행코드 00006 국민은행

9. 계좌번호 444444-44444444

사업용계좌거래금액

1. 사업용계좌 거래금액 (개인사업자인경우)

2. 사업용계좌미거래금액

3. 비고

거래일자를 입력하세요.

※공급자코드는 영수증거래처에 등록된 코드만 입력가능합니다.
 ※영수증거래처 등록시 상호는 필수값이며 코드는 자동부여됩니다.

확인[Tab] 화면삭제[F5] 취소[Esc]

㉔ [3. 명세서제출제외대상내역]의 경우

이는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이 법인세법에서 적격증빙수취의무의 예외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며 명세서제출제외대상내역을 구분하여 세무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일반전표 입력시 미리 정리하여야 한다.

ex) 차입금 이자 500,000원을 지급한 경우

입 번호	구분	계정과목	거래처	적요	차변	대변
31	00002 출금	0951 이자비용	98000 신한은행	1 차입금이자 지급	500,000	(현금)
합 계					6,600,000	6,600,000

카드등사용여부 | 부 3. 명세서 제출제외대상내역

NO : 2 (출금) 전표 일자 : 20년 3월 31일

계정과목	적요	차변(출금)	대변(입금)
0951 이자비용	1 차입금이자 지급	500,000	
0101 현금			500,000
합 계		500,000	500,000

전표인쇄 [F9]

명세서제출제외자료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15. 음·면지역소재 <input checked="" type="radio"/> 16. 금융·보험용역 <input type="radio"/> 17. 비거주자와의 거래 <input type="radio"/> 18. 농어민과의 거래 <input type="radio"/> 19. 국가들과의 거래 <input type="radio"/> 20.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input type="radio"/> 21.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input type="radio"/> 22. 사업의 양도 <input type="radio"/> 23. 전기통신·방송용역 <input type="radio"/> 24. 국외에서의 공급 <input type="radio"/> 25. 공매·경매·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26. 부동산구입 <input type="radio"/> 27. 주택임대용역 <input type="radio"/> 28. 택시운송용역 <input type="radio"/> 29.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가입자와의 거래 <input type="radio"/> 30. 항공기항행용역 <input type="radio"/> 31. 간주임대료 <input type="radio"/> 32. 연체이자지급분 <input type="radio"/> 33. 송금명세서제출분 [ENTER:입력화면] <input type="radio"/> 34. 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 <input type="radio"/> 35. 유료도로 통행료
---	--

구분입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명세서 제출제외 대상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등록하여야 하며 특히 [33. 송금명세서 제출분]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송금한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등을 기록한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추가적인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ex) 부동산 중개수수료 1,500,000원을 송금하여 지출한 경우

일	번호	구분	계정과목	거래처	적요	차변	대변
	31	00003	출금 0831 수수료비용	00117 혜성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수수료	1,500,000	(원금)
합 계						8,100,000	8,100,000

카드등사용여부 : 부, 3.명세서 제출제외대상내역

NO : 3 (출금) 전 표				일자 : 20 년 3 월 31 일	
계정과목	적요	차변(출금)	대변(입금)		
0831 수수료비용(관)	부동산중개수수료	1,500,000			
0101 현금			1,500,000		
합 계		1,500,000	1,500,000		

명세서제출제외자료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15. 음·면지역소재 <input type="radio"/> 16. 금융·보험용역 <input type="radio"/> 17. 비거주자와의 거래 <input type="radio"/> 18. 농어민과의 거래 <input type="radio"/> 19. 국가들과의 거래 <input type="radio"/> 20.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input type="radio"/> 21.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input type="radio"/> 22. 사업의 양도 <input type="radio"/> 23. 전기통신·방송용역 <input type="radio"/> 24. 국외에서의 공급 <input type="radio"/> 25. 공매·경매·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26. 부동산구입 <input type="radio"/> 27. 주택임대용역 <input type="radio"/> 28. 택시운송용역 <input type="radio"/> 29.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가입자와의 거래 <input type="radio"/> 30. 항공기항행용역 <input type="radio"/> 31. 간주임대료 <input type="radio"/> 32. 연체이자지급분 <input checked="" type="radio"/> 33. 송금명세서제출분 [ENTER:입력화면] <input type="radio"/> 34. 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 <input type="radio"/> 35. 유료도로 통행료
--	---

구분입력:

영수증수취/사업용계좌등 등록 - 조회 및 등록

영수증수취 공급자등록사항

1. 공 급 자 코드 거래처코드도움[F3]

2. 상 호 혜성공인중개사

3. 사 업 자 등록번호 215-09-48249

4. 주 민 등 록 번 호 -----

5. 성 명 홍길성

6. 사 업 장 주 소 서울 강남 삼성 1

7. 은 행 코 드 00002 산업은행

8. 계 좌 번 호 444444444444

사업용계좌거래금액

1. 사업용계좌 거래금액 (개인사업자인경우)

2. 사업용계좌미거래금액 1,500,000

3. 비 고

공급자코드를 입력하세요.

※공급자코드는 영수증거래처에 등록된 코드만 입력가능합니다.
 ※영수증거래처 등록시 상호는 필수값이며 코드는 자동부여됩니다.

확인[Tab] 화면삭제[F5] 취소[Esc]

㉔ [4. 증빙불비(원인입력)]의 경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이나 비적격증빙자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원인을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실무상 증빙불비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력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 사무실 문구 구입시 100,000원을 지출한 경우

일	번호	구분	계정과목	거래처	적요	차변	대변
28	00001	출금	0829 사무용품비	2 문구대금 지급		100,000	(원금)
합 계							12,090,000

카드등사용여부 부 4. 증빙불비(원인입력)

NO : 1

계정과목 적요

0829 사무용품비(판) 2 문구대금 지급 100,000

0101 현금 100,000

년 1 월 28 일

정액제라인채

증빙불비 원인

증빙불비 원인을 입력합니다.

확인[Tab] 취소[Esc]

(2) 영수증수취명세 및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작성

일반전표입력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관리-결산및재무제표]메뉴에서 [영수증수취명세서] 및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한다.

[1072] 영수증수취명세서

☞ 종료 ☞ 도움 ☞ 코드 ☞ 제출일자 ☞ 불러오기 ☞ 삭제 ☞ 저장 ☞ 명세서없음 ☞ 인쇄

거래내역 | 미사용내역등

5.번호		6.거래일자	7.상호	8.성명	9.사업장	10.사업자등록번호	11.거래금액	12.구분	계정코드	계정과목
1	20-01-31	김법천국	김폴폴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6-02-41152	1,000,000		0811		복리후생비
2	20-02-28	신한은행			113-81-73512	500,000	16	0951		이자비용
3	20-03-31	혜성공인중개사	홍길성	서울 강남 삼성 1111	215-09-48249	1,500,000	33	0831		수수료비용
4										

일반전표에 입력된 내용을 「F4 불러오기」메뉴를 이용하여 자동작성한다.

[1072] 영수증수취명세서

☞ 종료 ☞ 도움 ☞ 코드 ☞ 제출일자 ☞ 불러오기 ☞ 삭제 ☞ 저장 ☞ 명세서없음 ☞ 인쇄

거래내역 | **미사용내역등**

1.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등 미사용 내역

9.구분	3만원 초과 거래분		11.명세서제출제외대상	12.명세서제출대상(㉔-㉕)
	10.총	계		
13.건 수	3		2	1
14.금 액	3,000,000		2,000,000	1,000,000

2. 3만원 초과 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

구 분	건 수	금 액	구 분	건 수	금 액
15.읍·면지역소재			26.부동산구입		
16.금융·보험용역	1	500,000	27.주택임대용역		
17.비거주자와의 거래			28.택시운송용역		
18.농어민과의 거래			29.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		
19.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조합과의 거래			30.항공기항행용역		
20.비영리법인과의 거래			31.간주임대료		
21.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32.연체이자지급분		
22.사업의 양도			33.송금명세서제출분	1	1,500,000
23.전기통신·방송용역			34.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		
24.국외에서의 공급			35.유료도로 통행료		
25.구매·경매·수용			36.합 계	2	2,000,000

「12. 명세서제출대상」란의 금액은 법인세법상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금액을 의미한다.

[1073] 경비등의송금명세서

☞ 종료 ☞ 도움 ☞ 코드 ☞ 불러오기 ☞ 삭제 ☞ 전체삭제 ☞ 저장 ☞ 인쇄 ☞ 조회 ☞ 정렬 ☞ 은행코드별도 입력 ☞ 역설자물불러오기

☞ 거래,송금내역 및 공급자

번호	6.거래일자	7.법인명(상호)	8.성명	9.사업(주민)번호	10.거래내역	11.거래금액	계정과목	12.송금일자	은행코드	은행명	계좌번호
1	20-03-31	혜성공인중개사	홍길성	215-09-48249	부동산중개	1,500,000	수수료비	2014-03-31	006	국민은행	110-200-200-200
2											

일반전표에 입력된 내용을 「F4 불러오기」메뉴를 이용하여 자동 작성한다.

[세무사랑2]의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는 [법인조정-세액계산 및 신고서-가산세액계산서]메뉴에서 작성한다.

【3075】가산세액계산서

☞종료 ☞도움 ☞코드 ☞조정등록 ☞삭제 ☞전체삭제 ☞납부일 ☞인쇄 ☞저장 ☞블러오기

신고납부가산세		미제출가산세		토지등양도소득가산세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코드	가산세액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1,000,000	2/100	8	20,000
지급	미(누락)제출		2/100	9	
	불분명		2/100	10	
	상증법 82조 1 6		2/1,000	61	
명세서	불분명금액		2/1,000	62	
	미(누락)제출금액		2/10,000	67	
	불분명금액				
소 계					
주식등변동	미제출				
상항명세서	누락제출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소 계					
	미(누락)제출		5/1,000	69	
	액면(출자)금액				

[F12 블러오기]기능을 통하여 영수증수취명세서상 명세서제출대상금액을 가산세액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반영한다.

3. 선납세금관련 사항

1) 개념정리

법인의 자산 중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자산 즉 은행예금이나 적금 유가증권 등이 있는 경우로서 이자수익이 발생하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회사는 원천징수세액을 ‘선납세금’으로 회계처리하게 된다.

이처럼 선납세금계정으로 처리된 금액은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 중 원천징수세액으로서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되거나 환급되므로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이라 하면 법인 및 개인 구분없이 법인세 및 소득세와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법인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주민세가 원천징수되도록 최근에 개정되었다.

따라서 정확한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소득지급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선납세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때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처등록 할 때 관련 금융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 등록함으로서 전자신고시 필수 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입력하여야하는 번잡함을 피할 수 있다.

2) 전표입력시 유의사항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보통 대체분개로 이루어진다.

입	번호	구분	계정 과 목	거 래 처	적 요	차 변	대 변
31	00001	대변	0901 이자수익	98000 신한은행	1 보통예금이자 원본대체		500,000
31	00001	차변	0136 선납세금	98000 신한은행	1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70,000	
31	00001	차변	0103 보통예금	98000 신한은행	이자수익원본대체	430,000	
31			합 계			500,000	500,000

카드등사용여부

계정과목		적요	차변(출금)	대변(입금)
0901 이자수익	1	보통예금이자 원본대체		500,000
0136 선납세금	1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70,000	
0103 보통예금		이자수익원본대체	430,000	
합 계			500,000	500,000

전표
원재라인

전표
입출
인쇄 [F9]

이러한 분개내용을 [세무사랑2]에 입력시 대체분개 그대로 입력하여야 하며 계정 과목 3개가 하나의 전표로 인식되도록 전표번호가 일치되어야 한다.
간혹 다음과 같이 분개하여 하나의 거래를 별개의 전표로 인식되는 방식으로 입력 하는 경우가 있다.

입	번호	구분	계정 과 목	거 래 처	적 요	차 변	대 변
31	00002	입금	0901 이자수익	98000 신한은행	이자소득 원본대체	(현금)	500,000
31	00003	출금	0103 보통예금	98000 신한은행	이자소득 원본대체	430,000	(현금)
31	00004	출금	0136 선납세금	98000 신한은행	4 이자등 원천징수세액 현	70,000	(현금)
31			합 계			1,500,000	1,500,000

[전표입력시 입금 출금전표로 입력하는 경우(사례1)]

입	번호	구분	계정 과 목	거 래 처	적 요	차 변	대 변
31	00002	대변	0901 이자수익	98000 신한은행	이자소득 원본대체		500,000
31	00003	차변	0103 보통예금	98000 신한은행	이자소득 원본대체	430,000	
31	00004	차변	0136 선납세금	98000 신한은행	4 이자등 원천징수세액 현	70,000	
31			합 계			1,000,000	1,000,000

[대체분개시 전표번호가 상이한 경우(사례2)]

[사례1,2]처럼 입력한 경우 [법인조정]메뉴 중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실행할 경우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의 기납부 세액 중 원천납부세액에 반영되지 아니하여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 [세무사랑2] 운영방법

[세무사랑2]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작성은 [법인조정-세액계산및신고서-원천납부세액명세서]에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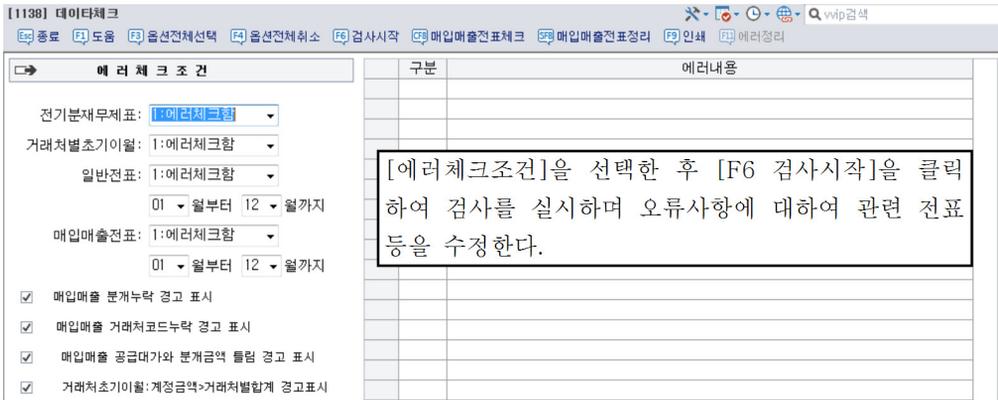
1. 적요 (이자발생사유)		2. 원 천 징 수 의 무 자 사업자(주민)번호 상호(성명)		3. 원천 징수일		4. 이자금액	5. 세율(%)	6. 법인세
1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113-81-73512	신한은행	6	20	500,000	14	70,000
2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113-81-73512	신한은행	12	20	1,000,000	14	140,000
3								

※ [계정별원장]상의 선납세금계정 중 중간예납세액을 제외한 잔액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와 기본적으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세과세표준 및세액조정계산서]상 [기납부세액]란 [128 원천납부세액]과 연결된다.

제2절 기말결산과정

1. 오류확인을 위한 데이터체크

결산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중의 거래가 적절히 입력되었는지를 총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세무사랑2]의 [회계관리-데이터관리-데이터체크]메뉴를 실행하여 일반전표입력 및 매입매출전표입력시 차대변의 금액차이가 발생된 내용이 있거나 전표번호 등에 오류가 발생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오류가 확인되면 적절한 수정작업을 한 후 결산작업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2. 현금예금조정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장정리를 한다면 회계적 사건이 발생함과 동시에 회계처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에는 현금 및 예금계정의 잔액이 장부상잔액과 실제 잔액이 거의 일치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에서의 자체적인 기정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사 등을 통하여 기장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적 사건의 발생시점과 회계처리의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시간적 차이로 인하여 현금 및 예금의 장부상 잔액과 실제 잔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게 된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정확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다.

또한 예금계정의 경우에는 은행의 거래내역 및 잔액과 장부상 입출금 거래내역 및

잔액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현금 또는 예금계정의 차이를 수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실제의 현금과 예금이 장부에 비해 부족하면 가지급금계정으로 지출처리하고 과도하면 가수금계정으로 입금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무사랑2]에서는 이런 현금예금의 차이 조정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계관리 - 결산 및 재무제표 - 현금예금조정

- (1) **현금일괄잔액검토** : 현금잔액을 자동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서 검토기간 및 조정금액의 범위 등을 설정하여 매일 현금잔액이 조정금액범위내의 금액을 유지되도록 「가지급금 및 가수금」계정을 통하여 자동으로 조정하여주는 기능으로서 전표추가메뉴를 통하여 수정된 내용을 일반전표로 생성시켜야 정상적으로 수정이 된다.

- (2) **현금잔액검토** : 현금잔액을 월별로 수동 작업을 통하여 수정하고 그 수정된 내용을 월별로 전표추가메뉴를 통하여 전표를 생성한다.

- (3) **당좌예금잔액검토 및 보통예금잔액검토** : 당좌예금 및 보통예금통장과 대조하여 차이가 발생된 금액을 개별적으로 수정하고 그 수정된 내용을 월별로 전표추가메뉴를 통하여 전표를 생성한다.

그러나 당좌예금잔액 및 보통예금잔액은 일반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면 모든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일반전표입력메뉴에서 직접 조정하여야 한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거래가 대체거래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메뉴는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3. 결산자료의 수집과 정리

1) 개념정리

결산이란 기업의 경영활동에 따라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회계기간을 정하고 회계기간 말에 각종의 장부를 정리, 마감하여 회계기간 말의 재무상태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결산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수익 비용의 기간계산과 기중의 회계처리가 현금주의 위주로 처리된 부분을 발생주의로 전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사랑2]에서의 결산절차는 결산항목을 크게 수동결산항목과 자동결산항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수동 및 자동결산항목의 구분기준은 결산분개를 직접 일반전표메뉴에 입력하는 경우를 「수동결산」이라 하며 [세무사랑2]의 결산자료입력메뉴에서 분개를 생성하는 경우를 「자동결산」이라 한다.

따라서 [세무사랑2]의 결산순서는 수동결산항목에 대한 결산부터 먼저 한 후 자동결산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 항목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수 동 결 산 항 목	자 동 결 산 항 목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대체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감가상각비 계상
가지급금 및 가수금의 정리	대손충당금의 설정
소모품계정의 정리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현금과부족의 정리	법인세 등 추산 등
선수수익 및 선급비용의 차감	
미수수익 및 미지급비용의 계상	
부가가치세의 정리 등	

2) [세무사랑2]의 운영방법

먼저 수동결산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전표입력메뉴에서 결산분개를 직접 입력한 후 자동결산항목에 대하여 [세무사랑2]의 [회계관리-결산및재무제표-결산자료입력]메뉴에 필요한 결산요소를 입력한 후 [전표추가(F4전표추가)]버튼을 통하여 결산분개를 일반전표에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한다.

기간	코드	과목	결산분개금액	결산전금액	결산반영금액	결산후금액
20년 04월 ~ 20년 12월		1. 매출액		10,000,000,000		10,000,000,000
	0401	상품매출		10,000,000,000		10,000,000,000
		2. 매출원가		8,577,765,200		8,577,765,200
	0455	제품매출원가				8,577,765,200
		1) 원재료비		8,515,200,000		8,515,200,000
	0501	원재료비		8,515,200,000		8,515,200,000
	0153	① 기초 원재료 재고액		15,200,000		15,200,000
	0153	② 당기 원재료 매입액		8,500,000,000		8,500,000,000
	0153	③ 기말 원재료 재고액				
		3) 노무비		50,000,000		50,000,000
		1). 급여 외		50,000,000		50,000,000

「결산자료입력」메뉴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F4 원가설정]: 원가명세서를 결정하는 기능으로서 관련된 원가와 계정과목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이다. 이는 일반전표입력 및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에서 입력된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매출원가 및 경비선택을 하는 것으로서 [자동설정(F3)]을 통하여 자동설정할 수 있다.

사용여부	매출원가코드 및 계정과목	원가경비	화면
여	0455 제품매출원가	1 0500번대	제조
여	0452 도급공사매출원가	2 0600번대	도급
부	0457 보관매출원가	3 0650번대	보관
부	0453 분양공사매출원가	4 0700번대	분양
부	0458 운송매출원가	5 0750번대	운송

[참고사항]
 1. 편집(tab)을 선택하면 사용여부를 1.여 또는 0.부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용여부를 1.여로 입력 되어야만 매출원가코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tab)을 클릭하신 후에 변경하세요)
 3. 사용여부가 1.여인 매출원가코드가 중복 입력되어 있는 경우 본 화면에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확인(Enter) 편집(Tab) 자동설정(F3) 취소(ESC)

- ② [F7 감가상각]: [재무회계-고정자산/감가상각]메뉴에서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자동으로 결산에 반영시키는 기능이다.

코드	계정과목명	퇴직급여추계액	설정전 잔액			추가설정액(결산반영) (퇴직급여추계액-설정전잔액)	유형
			기초금액	당기증가	당기감소		
0508	퇴직급여	7,000,000	5,000,000			5,000,000	제조
0806	퇴직급여	15,000,000	10,000,000			10,000,000	판관

「참고」 「결산자료입력」 메뉴에 결산자료를 입력할 때 주의 할 점은 자동결산항목의 경우 「결산전금액」과 「결산반영금액」란의 금액이 동시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즉, 「결산전금액」란에 반영된 금액은 이미 수동으로 결산분개를 하였다는 의미이므로 「결산반영금액」란에 다시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이중으로 결산분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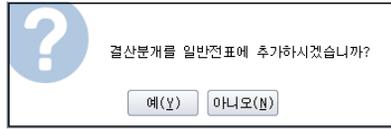
기 간	2014	년	01	월	~	2014	년	12	월
± 코드	과 목								
	1). 직원급여 외								
0802	직원급여								
	2). 퇴직급여(전입액)								
0806	퇴직급여(전입액)								
	3). 퇴직연금충당금전입액								
0818	감가상각비								
0202	건물								
	7). 기타비용								
0811	복리후생비								
0812	여비교통비								
매출액: [10,000,000,000] 당기순이익: [1,291,279,800] 소득평률: 12.91%									

전표추가기능을 통하여 결산분개를 일반전표에 반영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이중으로 감가상각비가 계상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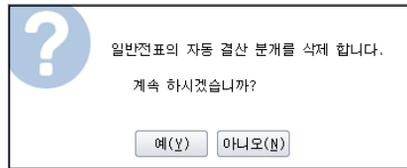
일	번호	구분	계	과	목	거	래	처	적	요	차	변	대	변
31	00007	결대	0150	제품										8,620,265,200
31	00008	결차	0818	감가상각비							12,500,000			
31	00008	결대	0203	감가상각누계액									12,500,000	
31	00010	차변	0818	감가상각비							12,500,000			
31	00010	대변	0203	감가상각누계액									12,500,000	
합												계	34,438,980,800	34,438,980,800

⑤ [전표추가]: 결산자료의 입력이 완료되면 [전표추가]버튼을 클릭하여 관련 자료를 [일반전표입력]메뉴에 전표를 자동으로 생성시키는 기능으로서 [전

표추가]기능을 실행하여야 결산자료가 정확히 반영된다.



- ⑥ [Ctrl+F5 결산분개삭제]: 본 메뉴에서 결산자료를 [전표추가]기능을 통하여 결산을 완료한 후 결산입력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본 메뉴에서 일반전표입력메뉴에 반영된 결산분개를 삭제하는 기능이다.



4. 재무제표의 확정

법인의 결산이 완료된 이후에는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에 반영되는 순서에 따라 확정하게 된다. 이 순서를 달리할 경우 재무상태표상의 잉여금과 이익잉여금상의 잉여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오류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① 제조원가명세서 → ② 손익계산서 →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④ 재무상태표

1) 제조원가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를 실행함에 있어 결산자료 입력시 정리하였던 원가설정버튼을 통하여 매출원가 및 원가경비를 선택하여 작성하며 당기제품제조원가를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란에 반영시키는 과정으로 이는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2)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재무상태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손익계산서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른 작업은 하지 않아도 손익계산서를

조회하기만 하면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되어 이익잉여금 처분에 관한 결산을 준비할 수 있다.

즉, 당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익계산서를 선택하여 확인하여야만 한다.

또한 기말주식수를 입력하면 주당순이익이 자동으로 산출되어 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에 관한 자동결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 ①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결산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이루어진다.
- ② 결산/재무제표 메뉴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실행하고 당기와 전기의 처분확정일을 입력한 후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을 해당 란에 입력시킨다.
- ③ F4 칸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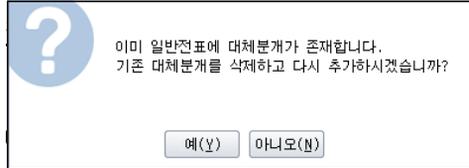
이는 이익잉여금의 이입액 또는 처분내역에 대한 자료를 입력할 때 기본적으로 설정된 자료 이외의 자료를 추가로 입력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한 줄을 삽입하고자하는 마지막줄에 커서를 이동시키면 활성화된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업화면의 상단에 있는 [칸추가]메뉴는 표를 편집하는 도중에 한 줄을 추가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전표추가]와 혼동하지 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과목	계정과목명	제 3(당기) 20년12월31일	제 2(전기) 20년12월31일
		제 3(당기) 금액	제 2(전기) 금액
	우선주		
5.	사업확장장적립금 0356		
6.	감채적립금 0357		
7.	배당평균적립금 0358		
8.			
9.			
10.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298,979,800	7,700,000

④ 전표추가

이는 손익계정을 마감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완성하기 위하여 화면 상단의 [전표추가]를 실행하여 손익계정마감과 관련된 전표를 일반전표에 자동생성시킨다.

또한 [전표추가] 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수정하여 [전표추가]기능을 다시 실행하면 기존 대체분개를 삭제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반영한다.



[참고]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의 회계처리방법

당기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배당, 이익준비금, 기업합리화적립금 등)에 대한 안을 회사가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주주로부터 승인을 받아 확정되므로 당기말 현재 미확정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기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주주총회일(처분확정일)에 일반전표입력메뉴에 수동으로 직접 반영하여야 한다.

4) 재무상태표

자산·부채·자본이 적절히 계상되었는지 여부와 결산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를 조회하고 대차차액이 발생하는 오류가 존재하는가를 확인하여 본다.

5. 표준재무제표

표준재무제표는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서식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와는 별도로 법인세신고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이다. 표준재무제표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통일된 계정과목으로 처리함으로써 기업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 각종 통계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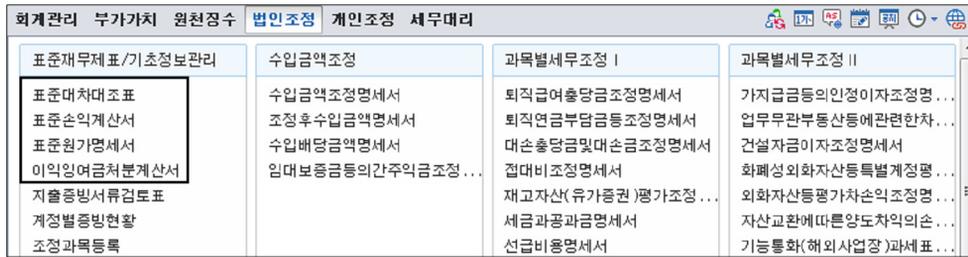
(1) 재무회계의 표준용재무제표 조회

법인세 신고서식으로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무회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재무제표별 표준용을 실행하면 된다. 따라서 별도로 표준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2) 법인세조정의 표준재무제표

위 (1) [회계관리]의 표준재무제표를 조회함으로서 법인조정시 필요한 표준재무제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법인세조정 프로그램에 의한 표준재무제표는 [편집]키를 누르고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다.



표준용을 저장한 후 다시 결산 수정으로 인해 재무제표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에서 「F12 불러오기」를 실행하여 변동된 데이터를 반영해 주어야 한다.

「참고」 표준원가명세서의 「II. 노무비의 2. 일용급여」로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계정과목적요등록」의 계정과목 구분에 「7.노무비(일용)」으로 설정해 주어야 한다.

차변잔액	차변합계	계 정 과 목	코드	대변합계	대변잔액
82,800,610	94,675,000	I. 유동자산	01	11,874,390	
71,800,610	83,675,000	(1) 당좌자산	02	11,874,390	
10,180,610	21,675,000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03	11,494,390	
		2. 단기예금	04		
4,000,000	4,000,000	3. 유가증권	05		
4,000,000	4,000,000	가. 단기매매증권	06		
		나. 유동성매도가능증권	07		
		다. 유동성만기보유증권	08		
37,620,000	38,000,000	4. 매출채권	09	380,000	
5,000,000	5,000,000	가. 외상매출금	10		
		(대손충당금)	11	50,000	50,000
33,000,000	33,000,000	나. 받을어음	12		
		(대손충당금)	13	330,000	330,000
		다. 기타매출채권	14		

제 2 장

재무제표에 의한 법인세조정

제1절 법인세무조정의 기본적인 개념

1. 법인의 구분과 납세의무 범위

법인세란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이 인정되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법인의 구분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이하 '본점 등' 이라 한다)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이라 하며 본점 등이 국내에 없는 법인을 외국법인이라 한다.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목적 유무에 따른 구분으로서 영리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 을 가진 법인, 그리고 국세기본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⁶⁾를 말한다.

6)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당연법인으로 보는 단체

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㉕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며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국가 · 지방자치단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도 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법인의 과세소득

법인의 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토지 등 양도차익, 청산소득이 있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법인의 과세소득을 파악하고 있다.

(2) 토지 등 양도차익

토지 등의 양도차익은 그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토지 등 양도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일반법인세를 부담한 후 다시 토지 등 양도차익으로 과세되는 이중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양도소득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3) 청산소득⁷⁾

청산소득이란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한편 다음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

- ① 상법상 조직변경
- ②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법인이 상법상 회사로 변경

②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 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㉕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 ㉖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7)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법인소득에 대한 최종적인 과세로서 법인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누락된 소득과 자산가치의 증가분이 실현됨에 따른 소득이 청산소득에 포착되게 된다.

③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

구 분		각사업연도소득	토지 등 양도차익	청산소득
내 국 법 인	영리 법인	국내·외 모든소득(포괄주의)	과 세	과 세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열거주의)	과 세	납세의무없음 ⁸⁾
외 국 법 인	영리 법인	국내원천소득(열거주의)	과 세	납세의무없음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열거주의)	과 세	납세의무없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없음		

3) 사업연도

(1) 원칙

사업연도는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시간적 단위로서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규칙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의미하며 법인이 정관 등에 의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시에는 매년 1.1~12.31까지를 사업연도로 한다.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신설법인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설립등기일로 종료일은 정관상의 사업연도 종료일로 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

8) 비영리법인의 청산시 잔존하는 순자산에 대하여는 법률 등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하거나 설립목적등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게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4) 법인의 납세지

법인세의 납세지는 내국법인은 본점 등 소재지로 하고,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한편,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즉 당해 법인의 본점 등 소재지로 한다.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의의

기업회계란 불특정다수인이 기업에 관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의 변동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에 측정 보고하는 회계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세무회계란 정부의 재정자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세법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신고서식에 의하여 보고하거나 세무계획의 수립 등 세무관리를 다루는 회계를 의미한다.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원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공통된 목적의 회계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누구냐에 따라 양회계가 상이한 방향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차이원인으로는 손익의 귀속시기에 의한 차이, 과세소득의 개념에 기인하는 차이, 경제적 계산에 의한 차이, 법률의 강제성에 의한 차이 및 조세정책적인 입법에 의한 차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양회계의 관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상호간에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양회계가 서로 간접 또는 의존하는 등 상호간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법인세법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순손실)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다.

3. 세무조정

1) 의의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른 각사업연도소득으로 조정하는 절차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부채·자본의 금액이 법인세법상의 자산·부채·자본의 평가금액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2) 세무조정 방법

(1) 손익계산서에 의한 세무조정

기 업 회 계	세 무 조 정	세 무 회 계
수 익 (-)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 익 금 총 액 (-)
비 용 (=)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 금 총 액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2) 재무상태표에 의한 세무조정⁹⁾

기업회계	세무조정	세무회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자 산</div> <p>(=)</p>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손금산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자 산</div> <p>(=)</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부 채</div> <p>(+)</p>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손금산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부 채</div> <p>(+)</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자 본</div>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손금산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자 본</div>

(2) 세무조정사항의 개념

- ① 익금산입 : 기업회계에서 수익(자산·자본)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세무회계상 익금(자산·자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 ②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에서 수익(자산·자본)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세무회계상 익금(자산·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한다.
- ③ 손금산입 : 기업회계에서 비용(부채)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세무회계상 손금(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 ④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에서 비용(부채)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세무회계상 손금(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한다.

3)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세무조정은 절차상 크게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구분된다.

결산조정이라 함은 결산시 반드시 장부 즉,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세무회계에서 인정하는 조정을 말하며 이는 당해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따르는 항목들이다.

신고조정이라 함은 결산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조정을 말한다. 즉,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여도 법인의 과

9) 재무상태표 항목 중 자산부채와 관련된 모든 세무조정은 유보로 소득처분하며 자본과 관련된 모든 세무조정은 기타(잉여금)로 소득처분한다.

4. 소득처분

1) 소득처분의 의의

(1) 개념과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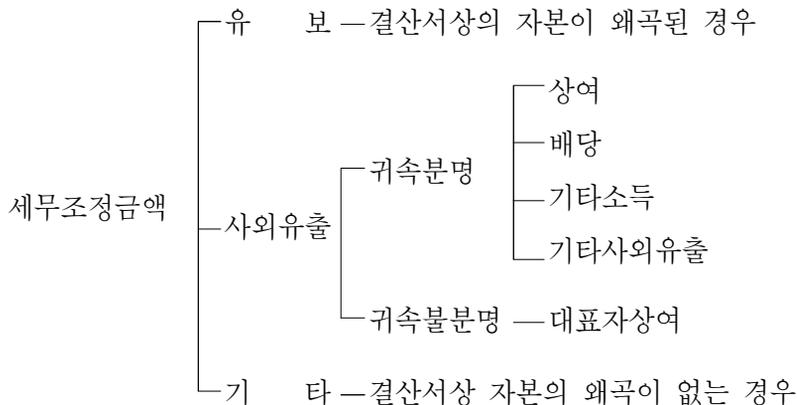
본래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은 상법상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사내유보 또는 사외유출의 형태로 그 귀속이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도 그 귀속이 결정되어야 한다.

즉, 결산서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신고서상의 소득금액 차이인 세무조정금액에 대하여 소득귀속을 밝혀주는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한다.

소득처분을 통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귀속이 결정되며 그 귀속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울 수가 있는 것이다.

또, 소득처분은 세무상 자기자본의 계산을 명확히 하게 한다.

이러한 소득처분의 유형은 세무조정금액의 사외유출과 유보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대상과 시기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의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 각사업연도의 소득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세무조정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이 과

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정기신고 또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득처분이 발생한다.

2) 소득처분의 내용

(1) 사내유보

유보(△유보)란 세무조정금액의 효과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 이 금액만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증가(또는 감소)될 뿐만 아니라 결산서상 자본에 비해 세무회계상의 자본이 증가(또는 감소)된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인 것이다.

따라서 유보(△유보)로 처분되는 금액은 결국 재무상태표상의 자산·부채의 왜곡을 수정하는 의미가 있으며 차기 이후에 재무상태표상의 왜곡된 자산·부채의 왜곡이 시정되는 시점에서 반드시 반대의 세무조정에 의하여 유보잔액이 상쇄된다.

(2) 사외유출

사외유출이란 세무조정된 금액이 기업 외부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으로 그 귀속이 분명한 경우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유발시키는 소득처분이다.

①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한다.

소 득 처 분	소득의 귀속자
배 당	출자자(임원·사용인인 주주 제외)
상 여	임원 또는 사용인
기타사외유출	법인·개인사업자
기 타 소 득	그 외의 자

②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다. 이와 같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 ㉠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로서 결정과세표준과 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순이익과의 차액(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추계의 경우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 현금매출누락액 또는 고정자산처분액의 누락액(단, 회수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유보로 처분)
- ㉢ 가지급금 인정이자,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비실명이자

③ 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은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이지만 이미 귀속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납세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 법인세비용,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으로 익금산입된 금액
- ㉢ 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 ㉣ 접대비 한도초과액
- ㉤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및 비실명채권 등의 이자 중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
- ㉦ 귀속자가 불분명하거나 추계결정 경정으로 인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음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
- ㉧ 자본거래 관련 부당행위 부인금액으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되는 금액
- ㉨ 천재 등으로 인한 추계의 경우로서 결정과세표준과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순이익과의 차액
-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익금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과 정상가격·정상원가 분담액 등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되지 않는 소득

(3) 기타 또는 잉여금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기업에 남아있는 경우로서 이미 회계상 자기자본에 반영되어 세무상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처분하는 것으로서 예외적인 처분이다.

3) 소득처분 금액의 사후관리

소득처분 중 「유보」처분은 차기 이후 과세기간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서식에서 그 잔액을 계속 관리한다.

「기타」 및 「기타사외유출」처분은 별도의 사후관리가 없다.

그러나 「상여·배당·기타」처분은 다음과 같이 소득의 귀속자에게 추가적인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소득처분	귀속자의 소득구분	소득의 지급시기	소득의 귀속시기
상 여	근로소득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일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배 당	배당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일(소득금액
기 타	기타소득	받은 날)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인정상여와 인정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자료(상여·배당·기타)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하여야 한다.

[3056] 소득자료명세서 wvip검색

☞종료 ☞도움 ☞삭제 ☞전체삭제 ☞원장조회 ☞인쇄 ☞저장 ☞급여자료 불러오기

①소득구분	②소득 귀속연도	③배당·상여 및 기타소득금액	연말정산 여부	④원천징수할 소득세	⑤원천징수일	⑥신고 여부	소 득 자		⑧비고
							⑦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1. 인정상여 2. 인정배당 3. 기타소득								

법인조정 - 소득및과표계산 - 소득자료명세서

【조정항목별 소득처분 사례】

조정항목	내 용	익금가산		손금가산	
		조정구분	처 분	조정구분	처 분
수입금액	·인도한 제품 등의 매출액가산	익금	유보	-	-
	·동 매출원가	-	-	손금	유보
	·전기매출가산분 당기결산상 매출 계상	-	-	익불	유보
	·동 매출원가	손불	유보	-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가산	익금	유보	-	-
	·전기수입금액가산분 당기결산 수입계상	-	-	익불	유보
접 대 비	·1만원초과 적격증빙미수취분	손불	기사		
	·증빙불비접대비	손불	상여	-	-
	·한도초과액	손불	기사		
기 밀 비	·귀속자가 따로 있는 정액기밀비(귀속자)	손불	상여	-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손불	기사	-	-
	·당기미지급기부금	손불	유보	-	-
	·전기미지급기부금당기지급액 (당기한도액계산시 포함)	-	-	손금	유 보
	·당기가지급계상분(한도액계산시 포함)	-	-	손금	유 보
	·전기 가지급계상분 당기비용처리	손불	유보	-	-
외 화 평 가 차 손 익	·차익계상	-	-	익불	유 보
	·차손 계상	손불	유보	-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익금	배당	-	-
	·사용인(임원 포함)	익금	상여	-	-
	·법인 또는 사업영위 개인	익금	기사	-	-
	·전 각호 이외의 개인	익금	기타소득	-	-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한 소득세 대납액	·익금산입액중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야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95. 1. 1 이후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익금	기사	-	-
건설자금이자	·건설중인 자산분	손불	유보	-	-
	·건설완료 자산중 비상각자산분	손불	유보		
	·전기부인유보분중 당기건설이 완료되어 회사자산계상	-	-	익불	유 보

조정항목	내 용	익금가산		손금가산	
		조정구분	처 분	조정구분	처 분
비업무용 부동산등 지급이자	·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불	기사	-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대표자) ·원천세 해당금액	손불 손불	상여 기사	-	-
수령자불분명채 권·증권의 이자할인액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대표자) ·원천세 해당금액	손불 손불	상여 기사	-	-
각종준비금	·범위초과액	손불	유보	-	-
	·과소환입	익금	유보	-	-
	·과다환입	-	-	익불	유보
	·전기범위초과액중 환입액	-	-	익불	유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	-	-	손금	유보
·세무조정에 의한 환입 준비금	익금	유보	-	-	
퇴직급여 충 당 금	·범위초과액	손불	유보	-	-
	·전기부인액중 당기지급	-	-	손금	유보
	·전기부인액중 당기환입액	-	-	익불	유보
단체퇴직 보 험 료	·범위초과액	손불	유 보	-	-
	·전기부인액중 당기환입액	-	-	익불	유보
대손충당금	·범위초과액	손불	유보	-	-
	·전기범위초과액중 당기환입액	-	-	익불	유보
재고자산	·당기평가감	익금	유보	-	-
	·전기평가감중 당기사용분 해당액	-	-	손금	유보
	·당기평가증	-	-	손금	유보
	·전기평가증중 당기사용분 해당액	손불	유보	-	-
감가상각비	·당기부인액	손불	유보	-	-
	·기왕부인액중 당기용인액	-	-	손금	유보
기 타	·법인세등	손불	기사	-	-
	·벌과금, 과료	손불	기사	-	-
	·임원퇴직금 범위초과액	손불	상여	-	-
	·법인세 환급금 및 이자	-	-	익불	익불
	·잉여금증감에 따른 익금 및 손금산입	익금	기타	손금	기타

5. 법인세 계산구조

1)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순손실)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소득처분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총익금-총손금

2) 과세표준계산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10년이내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¹⁰⁾
- 비과세소득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긴소득 등
- 소득공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할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 세율	2억원이하 10% 200억원이하 20% 200억초과 22%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최저한세검토
+ 가산세	
+ 공제감면분추가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 자진납부세액	

10) 2009년 1월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5년간 이월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2015.03.13 개정)

(앞쪽)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⑩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소득조정액	⑫ 익금산입	02	
		⑬ 손금산입	03	
	⑭ 차가감소득금액	04		
	⑮ 기부금한도초과액	05		
	⑯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54		
	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06		
② 과세표준계산	⑱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06=10)		
	⑲ 이월결손금	07		
	⑳ 비과세소득	08		
	㉑ 소득공제	09		
	㉒ 과세표준	10		
	㉓ 선박표준이익	55		
③ 산출세액계산	㉔ 과세표준(12+19)	56		
	㉕ 세율	11		
	㉖ 산출세액	12		
	㉗ 지점유보소득	13		
	㉘ 세율	14		
	㉙ 산출세액	15		
④ 납부할세액계산	㉚ 산출세액(12 = 10)			
	㉛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17		
	㉜ 차감세액	18		
	㉝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19		
	㉞ 가산세액	20		
	㉟ 가감계(12-18+20)	21		
	기납부세액	㊱ 중간예납세액	22	
		㊲ 수시부과세액	23	
		㊳ 원천납부세액	24	
		㊴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25	
㊵ 소계		26		
㊶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㊷ 합계(21+26)		28		
⑤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계산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29		
	㉡ 차감납부할세액	30		
⑥ 미환류소득법인세	양도차익	㉢ 등기자산	31	
		㉣ 미등기자산	32	
		㉤ 비과세소득	33	
		㉥ 과세표준	34	
		㉦ 세율	35	
		㉧ 산출세액	36	
		㉨ 감면세액	37	
		㉩ 차감세액	38	
		㉪ 공제세액	39	
		㉫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58	
		㉬ 가산세액	40	
		㉭ 가감계	41	
		㉮ 수시부과세액	42	
	㉯ ()세액	43		
	㉰ 계	44		
	㉱ 차감납부할세액	45		
⑦ 세액	㉲ 미환류소득	59		
	㉳ 세율	60		
	㉴ 산출세액	61		
	㉵ 가산세액	62		
	㉶ 기납부세액	63		
	㉷ 납부할세액	64		
⑧ 분납할세액계산	㉸ 차감납부할세액계	46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57		
	㉺ 분납세액계산범위액	47		
	분납할세액	㉻ 현금납부	48	
		㉼ 물납	49	
	차감납부세액	㉽ 계	50	
		㉾ 현금납부	51	
	납부세액	㉿ 물납	52	
		㊰ 계	53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증질지 80g/m²]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2013.02.23 개정)

(앞쪽)

사업 연도	· · · ~ · ·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①과목	②금액	③소득처분		④과목	⑤금액	⑥소득처분	
		처분	코드			처분	코드
합계				합계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 각 조정명세서에 의한 조정계산결과 익금 및 손금 조정사항과 기타 익금 및 손금조정사항을 적어 집계하고 필요에 따라 기타 조정사항의 명세 또는 계산 근거를 첨부합니다. 다만, 기부금 한도초과액 조정분은 본 표에서 제외하고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과의 차액인 법인세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①, ④과목란은 간단 명료하게 회사계산 계정과목 및 익금, 손금산입 유형을 요약 하여 적습니다.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기업 소득금액 배분액'으로 ①란에 적고,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지분가액 한도내 결손금)'과 '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배분한도 초과결손금)'으로 구분하여 ④란에 적습니다.
- ③, ⑥처분란은 익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 상여, 유보,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 기타로 구분하여 적고, 손금의 경우 유보,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가. ③, ⑥코드란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경우 상여 100, 배당 200, 기타 소득 300, 유보 400, 기타 사외유출 500, 기타 600으로 적으며,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경우 유보(△유보) 100, 기타 200으로 적습니다.
 - 나.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③, ⑥처분란에 '기타'로 적습니다.
- ②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합계와 ⑤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합계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㉓, ㉔란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로 환산함에 따른 세무조정내용을 제자산, 제부채 등의 항목으로 우선 작성한 후 기타 세무조정내용을 적습니다.

※ 소득금액합계표에는 기부금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내용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내역을 기록 정리하는 서식이다.

제2절 재무제표에 의한 법인세조정

1. 재무제표 내용 중 즉시 세무조정 할 항목

1) 개념정리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시 가장 먼저 결산 재무제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절차가 필요없는 다음 항목들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

① 법인세등 비용(법인소득할 주민세 포함) 및 소득세등 비용

ex) 표준손익계산서에서 「F3 조정등록」메뉴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법인세등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된다.

② 잡손실 계정 등에 포함되어 있는 벌금,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③ 자산의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재고자산, 유가증권,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등) 세법에서는 자산의 평가차익이나 평가차손은 원칙적으로 익금 또는 손금항

목이나 거의 대부분은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규정되어 결국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 평가차익이나 평가차손에 대한 규정은 기업회계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평가차손익은 반드시 세무조정을 통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④ 기업회계기준상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는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항목 중 자기주식처분익 등의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손익거래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은 반드시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 ⑤ 기업회계기준상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경우에는 자본항목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포함되어 있어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으나 세법상 재무상태표상의 자산항목의 과대 또는 과소계상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 ⑥ 손익계산서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전기오류수정손익계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파악하여 세무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행하였던 오류가 당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전기오류수정손익」이라고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1호는 이를 원칙적으로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하되,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예외적으로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1) 당기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기손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세법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귀속시기의 조작을 제한없이 허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성격에 따라 세법상의 그 귀속시기를 판단한다.

구 분	세법상의 귀속시기	당기의 세무조정
전기오류수정이익 (영업외수익)	당기의 익금인 경우	세무조정없음
	전기 이전의 익금인 경우	익금불산입 유보(기타)
전기오류수정손실 (영업외비용)	당기의 손금인 경우	세무조정없음
	전기 이전의 손금인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기타)

(2)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

전기오류 수정손익을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도 그 금액은 순자산의 증감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으로는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단 이것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 소득처분유형은 「기타」이다. 그 금액이 이미 결산서상 자본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 분	1차 세무조정	2차 세무조정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가산)	익금산입 기 타	당기의 익금인 경우	세무조정없음
		전기 이전의 익금인 경우	익금불산입 유보(기타)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	손금산입 기 타	당기의 손금인 경우	세무조정없음
		전기 이전의 손금인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기타)

2) [세무사랑2] 운영방법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한국세무의 세무조정을 하고 관련 소득처분을 하시오.

- 회사는 9월 20일 자기주식 5,000주를 50,000,000원에 구입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자기주식(자본조정) 50,000,000 (대) 현 금 50,000,000

- 11월 30일 자기주식 4,000주를 45,000,000원에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현 금 45,000,000 (대) 자기주식 40,00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5,000,000
 (자본잉여금)

- 1월 31일 회사는 전기의 감가상각비계상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소계상분을 발견하여 다

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3,000,000 (대) 건물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이익잉여금)

(해답 및 계산과정)

세 무 조 정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익 금 산 입	자기주식처분이익	5,000,000원	기 타
손 금 산 입	전기오류수정손실	3,000,000원	기 타

1) 법인세법상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에 해당하나 기업회계에서는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무상태표의 자본의 증가항목으로 기록되어 결국 법인세법상의 자본은 변동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하여 기타로 소득처분함.

[소득금액합계표 및 조정명세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자기주식	5,000,000	기타

소득명세	7	자본잉여금 중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함
------	---	----------------------------------

구 분	차 변	대 변
장부상 분개	현금 45,000,000	자기주식 40,000,000
		처분이익(자/잉) 5,000,000
TAX상 분개	현금 45,000,000	자기주식 40,000,000
		처분이익(익금) 5,000,000
조정분개	처분이익(자/잉) 5,000,000	처분이익(익금) 5,000,000
세무조정	자본의 감소→이익의 증가	익금산입 5,000,000(기타)

2) 일단 법인의 잉여금이 감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하여 세무상 잉여금과 일치시키는 세무조정을 한다. 이후 감소의 원인이 감가상각비 과소계상분이므로 이는 당기 감가상각비에 포함하여 당기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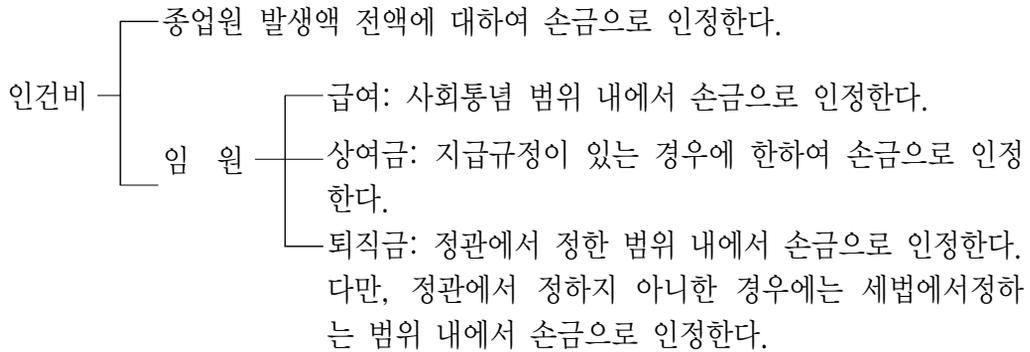
[소득금액합계표 및 조정명세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전기오류수정손실	3,000,000	기타

소득명세 3 이익여금사항인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손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함.

구 분	차 변	대 변
장부상 분개	전기오류수정손실 3,000,000 (이/잉)	건물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TAX상 분개	감가상각비 3,000,000	건물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조정분개	감가상각비 3,000,000	전기오류수정손실 3,000,000 (이/잉)
세무조정	손금산입 3,000,000(기타) 추가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필요.	자본의 증가→이익의 감소

2. 인건비



1) 일반급여

사용인 및 임원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①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
- ②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비상근임원의 보수
- ③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2) 상여금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제외하고 사용인의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며 임원¹¹⁾의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

11) 임원이라 함은 다음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㉔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㉕ 합명·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㉖ 감사
- ㉗ 기타 위 ㉔ 내지 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㉔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 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임원 포함)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창업법인 등이 그 종업원 등에게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주가차액보상금액
- ㉖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은 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3) 퇴직급여

(1) 일반적인 퇴직급여

사용인의 퇴직급여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실지로 지급한 것에 한하여 손금으로 용인한다. 현실적인 퇴직¹²⁾이 아님에도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

12)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가.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나.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동 규정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근로연수를 기산하여 중간정산 이후 퇴직급여(연월차수당·근속수당·호봉 및 상여 등은 제외)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기통 26-44...4). → 연월차수당 등은 최초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지급하여도 됨. 라. 2015.12.31까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가. 임원이 연임된 경우 나.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라.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 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 채용한 경우 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에는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한 사유¹³⁾에 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지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동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2) 임원퇴직급여

임원퇴직금은 정관에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규정상의 금액에 의하고,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근속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고 1월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일부 임원에 대하여만 중간정산 가능(서이 46012-11540, 2003.8.25.) 마.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바. 법인의 임원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 등 다음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받는 경우 ①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사.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아. 근로자가 사규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연퇴직을 한 후 다음날 해당 사용자의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서이-797, 2005.5.9.).

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 $\times \frac{1}{10} \times$ 근속연수

(3) 연봉제에 의한 퇴직급여

회사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 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을 것
- ②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4) 복리후생비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비용 이외의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① 직장체육비 ② 직장연예비 ③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④ 직장회식비
- ⑤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 ⑥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 ⑦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⑧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위 각 호와 유사한 비용

5) [세무사랑2] 운영방법

(주)한국세무의 결산서에 반영된 인건비에 대하여 관련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하시오.

1. 재무제표에 반영된 인건비 중 임원에 대한 상여금이 50,000,000원 포함되어 있으나 임원상여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2. 임원 중 김철수씨가 퇴사함에 따라 퇴직금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회사는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으며 김철수씨에게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은 100,000,000원(상여금은 지급한 적이 없다)이며 근속연수는 5년 9개월이다.

(해답 및 계산과정)

세 무 조 정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	50,000,000원	상여
손금불산입	임원퇴직금	42,500,000원	상여

- ① 법인세법상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회사의 상여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한도로 인정하며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지급된 상여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구 분	차 변	대 변
장부상 분개	상여금(비용) 50,000,000	현금 50,000,000
TAX상 분개	부당비용 50,000,000	현금 50,000,000
조정분개	부당비용 50,000,000	상여금(비용) 50,000,000
세무조정	비용의 발생과 비용의 감소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이므로 세무조정은 생략한다. 다만 발생한 비용이 세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당비용이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만 발생함. 손금불산입 상여 50,000,000(상여)	

- ② 법인세법상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회사의 지급규정을 한도로 하여 손금인정하고 있으나 회사의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한도액을 기준으로 손금인정하고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

한다.

$$\text{한도액} = 100,000,000 \times 1/10 \times 5\text{년}9\text{개월} = 57,500,000\text{원}$$

$$\text{한도초과액} = 100,000,000 - 57,500,000 = 42,500,000\text{원}$$

구 분	차 변		대 변	
장부상 분개	퇴직금(비용)	100,000,000	현금	100,000,000
TAX상 분개	퇴직금(비용)	57,500,000	현금	100,000,000
	부당비용	42,500,000		
조정분개	부당비용	42,500,000	퇴직금(비용)	42,500,000
세무조정	비용의 발생과 비용의 감소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이므로 세무 조정은 생략한다. 다만 발생된 비용이 세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당비용이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만 발생함. 손금불산입 퇴직금 42,500,000(상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조정명세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임원상여금한도초과		50,000,000	상여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		42,500,000	상여	
소득명세	4	임원에 대한 상여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함		
소득명세	4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함		

3. 이자소득 등의 귀속시기

1) 수입이자의 귀속연도

(1) 원칙: 현금주의

법인의 수입이자와 이자비용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준용하여 실제로 받은 날 또는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특례: 발생주의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다만, 정기예금이자와 같이 원천징수되는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입이자의 경우에는 현금주의에 따라 수입시기가 결정된다.

(3) 결론

일반법인의 경우 현행 이자소득의 거의 대부분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어 (2)특례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는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과의 차이로 인하여 항상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2) [세무사랑2] 운영방법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주)한국세무의 이자수익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 1년 만기 정기예금의 만기는 익년 3월 31일이며 만기시 이자수익도 함께 지급되며 당해 연도 12월 31일 법인결산시 회사는 이자수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산서에 반영하였다.

(차) 미수수익 3,459,000 / (대)이자수익 3,459,000

(해답 및 계산과정)

세 무 조 정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익금불산입	미수수익	3,459,000원	유보

법인세법상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현금주의로서 익년 3월 31일 회수하는 시점에

서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므로 당해연도에 반영된 이자수익은 익금불산입하고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의 과대계상에 해당되어 유보로 소득처분함.

구 분	차 변	대 변
장부상 분개	미수수익 3,459,000	이자수익 3,459,000
TAX상 분개	분개없음	분개없음
조정분개	이자수익 3,459,000	미수수익 3,459,000
세무조정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이 감소로 순이익이 감소하였음. 익금불산입 미수수익 3,459,000(유보)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조정명세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미수수익	3,459,000	유보발생
소득명세	1	이자수익 중 당기 미수수이자 계상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제 3 장

[세무사랑2]에 의한 세무조정명세서

작성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수입금액조정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인식된 수입금액인 매출액과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수입금액은 모든 세무조정명세서를 작성하는 기초자료가 되므로 수입금액조정을 가장 먼저 수행하여야 한다.

수입금액조정은 법인조정 메뉴에서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수입배당금조정명세서」, 「임대보증금간주익금조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¹⁴⁾

(1) 개념정리

「수입금액조정명세서」는 기업회계상의 수입금액(결산서상에 반영된 수입금액)과 세법상의 수입금액을 비교 검토한 후 세무조정을 통하여 기업회계상의 수입금액을 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일치시키는 과정을 나타내는 서식이다.

법인세법상의 판매손익의 귀속기기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② 상품 등의 사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14)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 ① 부가가치세 신고상황과 비교하여 차액의 원이 타당한지 확인
- ② 직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를 검토하여 익금불산입 유보 처분된 수입금액 등을 조정해 반영하였는지 확인
- ③ 특별소비세, 주세 해당물품의 경우 특별소비세 등 징수상황과 비교하여 확인
- ④ 재무상대표일 전 후에 이루어진 매출의 기간귀속의 적정여부 확인
- ⑤ 본 지점간 내부미실연이익을 적정하게 조정하였는지 확인

날.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 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 ③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④ 자산의 위탁매매: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 ⑤ 장기할부조건자산의 판매: 판매 또는 양도한 날로 한다¹⁵⁾.
 - ⑥ 매출할인: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 ⑦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건설 등”이라 한다)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다음의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¹⁶⁾
- ㉠ 익금산입액 = 도급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수입계상액

$$\text{※ 작업진행률}^{17)} = \frac{\text{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text{총공사예정비}}$$

15)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수용하고 있다.

1) 결산조정하는 경우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상품 등 외의 자산은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68③). 이와 같이 회수기일도래기준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결산서상에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결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을 통해서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신고조정하는 경우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인 법인은 결산서 반영여부에 관계없이 회수기일도래기준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16) 다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7)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집행기준 40-69-5)

- ① 작업진행률의 계산에 있어서 "총공사비"란 해당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 ② 자재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 ㉠ 손금산입액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 ⑧ 건설 등의 경우에 대한 특례
- ㉠ 중소기업의 단기건설 특례
-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단기건설에 대하여는 완성기준 또는 진행기준에 의한 손익인식이 가능하다.
-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경우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 ①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②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법인세법 제51조의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매출의 경우

누적액에는 자기가 부담하지 아니한 자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시행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관련 보험료, 설계비 및 기술지원비와 시공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의 원가는 총공사비에 포함한다.
- ④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 ⑤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계약시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율 약정을 하고 분양대금 입금예정과 공사대금 지급예정을 비교하여 산출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총공사예정비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참고」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 부가가치세 신고상황과 비교하여 차액의 원인이 타당한지 확인
- 직전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를 검토하여 익금불산입 유보처분된 수입금액 등을 조정에 반영하였는지 확인
- 개별소비세, 주세 해당물품: 개별소비세 등 징수상황과 비교 검토
- 재무상태표일 전후에 이루어진 매출의 기간귀속의 적정여부 확인
- 본지점간 내부 미실현이익을 적정하게 조정하였는지 확인

(2) [세무사랑2] 운영방법

다음 자료에 의해 (주)한국세무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와 관련된 세무조정내용에 대한 소득금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1. 결산서상 매출액

- 상품매출: 703,260,000
- 제품매출: 1,249,506,000
- 공사수입: 1,287,600,000

2. 공사수입금액의 현장별 계약내용 및 공사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 사 명	사당고가건설	동작빌딩신축
공 사 기 간	2014.7.1~2016.6.30	2014.10.1~2015.5.1
도 급 금 액	3,000,000,000	487,600,000
총 공사 예정액	2,500,000,000	465,842,751
당해연도 총공사누적액	744,000,000	465,842,751
전기말까지 수입계상액	60,000,000	0
결산서상 당기수입계상액	800,000,000	487,600,000

3. 당사는 중소기업으로서 단기공사에 대하여는 완성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해답 및 계산과정)

세 무 조 정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익금산입	공사수입금	32,800,000원	유보

공사수입금액 중 단기공사인 동작빌딩신축공사의 수익일 완성도기준으로 인식하고자 하므로 비록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였으나 법인세법상의 귀속시기와 일치하므로 별도의 조정사항은 없다. 그러나 사당고가건설공사는 장기공사로서 기업회계기준을 배제하고 수입금액을 반드시 법인세법규정에 의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 ① 결산서상 당기수입계상액 = 800,000,000
- ② 작업진행률 = 744,000,000/2,500,000,000 = 29.76%
- ③ 법인세법상의 당기귀속수입금액 = 도급금액 × 작업진행률 - 전기말까지 수입계상액 = 3,000,000,000 × 29.76% - 60,000,000 = 832,800,000
- ④ 과소계상액 = ③ - ① = 32,800,000
- ⑤ 익금산입 공사수입금 32,800,000 (유보)

순서대로 진행

① 결산서상 수입금액

② 조정

③ 조정후 수입금액 (①+②-⑤)

④ 가 산

⑤ 차 감

비고

1. 수입금액 조정계산

①항 목	계정과목	②계정과목	③결산서상 수입금액	④가 산	⑤차 감	⑥조정후 수입금액 (③+④-⑤)	비고
1	1. 매출 2. 영업외수익						
	[F4 매출조회]기능이용						
	계						

2. 수입금액조정명세

가.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나.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

다. 기타 수입금액

계

하단의 [2.수입금액조정명세]란의 금액을 상단의 [수입금액조정계산]의 가산/차감에 그대로 기입한 후 합계등록을 통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한다.

[3014]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수입금액조정계산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 | 기타수입금액조정

1. 수입금액 조정계산

①항 목	계정과목		③결산서상 수입금액	조 정		⑥조정후 수입금액 (③+④-⑤)	비 고
	②계정과목			④가 산	⑤차 감		
1	매 출	상품매출	703,260,000			703,260,000	
2	매 출	제품매출	1,249,506,000			1,249,506,000	
3	매 출	공사수입금	1,287,600,000			1,287,600,000	
4		1.매 출 2.영업외수익					
계			3,240,366,000			3,240,366,000	

2. 수입금액조정명세

가.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나.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

다. 기타 수입금액

계

[3014]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수입금액조정계산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 | 기타수입금액조정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①공사업	②도급자	③도급금액	작업진행률계산			⑧누적임금 산입액 (⑩x⑧)	⑨전기말누적 수입계상액	⑩당기회사 수입계상액	(16)조정액 (⑧-⑨-⑩)	
			④해당사업연도말 총공사비도급액 (작업시간등)	⑤총공사 예정비 (작업시간등)	⑥진행률 (④/⑤)					
1	사당고가	도로공사	3,000,000,000	744,000,000	2,500,000,000	29.76	892,800,000	60,000,000	800,000,000	32,800,000
2										

[3014]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수입금액조정계산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 | 기타수입금액조정

1. 수입금액 조정계산

①항 목	계정과목		③결산서상 수입금액	조 정		⑥조정후 수입금액 (③+④-⑤)	비 고
	②계정과목			④가 산	⑤차 감		
1	매 출	상품매출	703,260,000			703,260,000	
2	매 출	제품매출	1,249,506,000			1,249,506,000	
3	매 출	공사수입금	1,287,600,000			1,320,400,000	
4		1.매 출 2.영업외수익		32,800,000			
계			3,240,366,000	32,800,000		3,273,166,000	

2. 수입금액조정명세

가.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나.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

다. 기타 수입금액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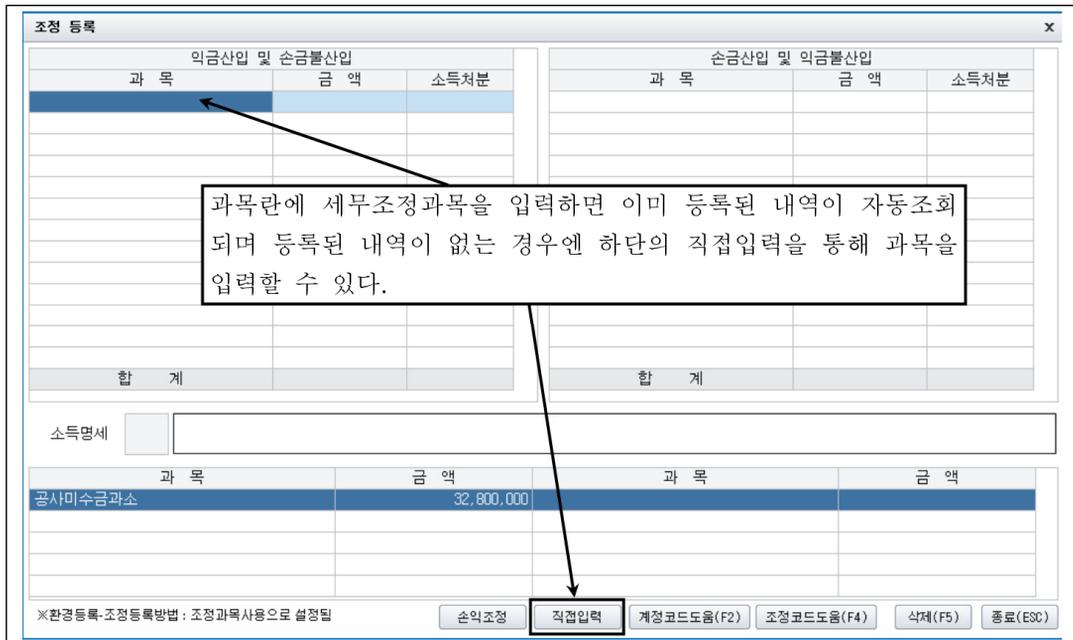
32,800,000

32,800,000

하단의 조정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 [조정등록]키는 각종 세무조정명세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즉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입력할 수 있는 기능키이다. 즉 과목별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세무조정도 수행하여야 하며 세무조정은 [세무사랑2]에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반드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조정등록」을 통하여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조정등록]시 소득금액조정내역을 작성함에 있어 「과목란」에 과목명을 입력하면 이미 등록된 과목과 소득명세 내역이 자동조회되며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그러나 등록된 내용이 없거나 가장 적당한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입력]메뉴를 통하여 세무조정할 수 있다.

※ 실무적으로 소득처분이 「유보」로 되는 경우에는 「과목」을 가능하면 세무조정이 발생된 자산·부채계정으로 하는 것이 유보잔액을 관리하기가 편리하다.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공사미수금과소	32,800,000	유보발생			
합 계	32,800,000		합 계		

소득명세 1 공사진행율차이에 의한 공사수입금액 누락인식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공사미수금과소	32,800,000		

※환경등록-조정등록방법 : 조정과목사용으로 설정됨

손익조정 직접입력 계정코드도움(F2) 조정코드도움(F4) 삭제(F5) 종료(ESC)

2)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1) 개념정리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는 각사업연도 소득 또는 과세표준의 계산이나 세액계산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으나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대한 부표의 성격으로 작성되는 서식이다.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는 업종별 수입금액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을 상호 비교하는 서식으로 실무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서식이다.

앞서 작성한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의 「조정 후 수입금액」을 회사의 업태 및 종목에 따라 구분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이원인을 분석하는 서식이다.

이는 법인세법의 손익귀속시기 및 범위와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및 범위의 차이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오류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다음은 법인세법상 조정 후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차이원인이다.

- 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의제(자가공급, 사업상증여, 개인적공급, 잔존재고재화)

간분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경정을 포함한다)을 기입하되 사업연도기간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기간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입하고 그 차액은 차액내역란 또는 별지에 명시한다.

「참고」 3월말법인의 경우 조정 후 수입금액과 비교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20*5년 1기 예정신고 과세표준	20*5년 2기 예정신고 과세표준
20*5년 2기 확정신고 과세표준	20*6년 1기 예정신고 과세표준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사랑2」로 작성하여 신고하였다면 관련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나 수정신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반영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정확한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2) [세무사랑2] 운영방법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한국세무의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를 작성하시오.

1. 업태·종목별 기준울코드는 다음과 같다.

업 태	종 목	기준울코드
건 설	일반건축	451101
제 조	섬 유	171109
도소매	건축자재	514210

2. 부가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반과세표준:	2,856,266,000
영세율과표:	152,000,000
면세과표:	232,100,000

[3015]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wvip검색

Ⓜ종료 F1도움 F2코드 F3조정등록 F4전기서식 F5삭제 F6전체삭제 F7잔액조회 F8수입조회 F9인쇄 F10저장 F11불러오기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서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검토

1.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①업 태	②종 목	순번	③기준(단순) 경비율번호	수입금액			⑦수 출 (영세율대상)
				수입금액계정조회	내 수 판 매		
					④계(⑤+⑥+⑦)	⑤국내생산품	
건설	건축	01	451101	1,320,400,000	1,320,400,000		
제조	섬유	02	171109	1,249,506,000	1,249,506,000		
도소매	건축자재	03	514210	703,260,000	703,260,000		
		04					
		05					
		06					
		07					
		08					
		09					
		10					
(111)기 타		11					
(112)합 계		99		3,273,166,000	3,273,166,000		

[3015]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wvip검색

Ⓜ종료 F1도움 F2코드 F3조정등록 F4전기서식 F5삭제 F6전체삭제 F7잔액조회 F8수입조회 F9인쇄 F10저장 F11불러오기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서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검토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보기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③과세(일반)	③과세(영세율)	⑩면세수입금액	⑩합계(③+⑩)	⑪조정후수입금액	⑪차액(⑩-⑪)
2,856,266,000	152,000,000	232,100,000	3,240,366,000	3,273,166,000	-32,800,000

(2)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부가세과표에 포함되어 있으면 +금액, 포함되지 않았으면 -금액 처리)

⑫구 분	코드	(16)금 액	비 고	⑫구 분	코드	(16)금 액	비 고
자가공급(면세전용등)	21			거래(공급)시기차이감액	30		
사업상증여(접대제공)	22			주세·개별소비세	31		
개인적공급(개인적사용)	23			매출누락	32		
간주임대료	24				33		
자산 고정자산매각액	25				34		
매각 그밖의자산매각액(부산물)	26				35		
폐업시 잔존재고재화	27				36		
작업진행률 차이	28	-32,800,000			37		
거래(공급)시기차이가산	29			(17)차 액 계	50	-32,800,000	
				(13)차액과(17)차액계의차이금액			

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

(1) 개념정리

부동산임대업을 주업¹⁹⁾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당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text{간주임대료} = \left(\frac{\text{당해사업연도의 보증금 등의 적수}}{\text{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right) \times \frac{1}{365} \times \text{정기예금이자율} \\ - \left(\frac{\text{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익이자과 할인료} \cdot \text{배당금} \cdot \text{신주인수권처분의 및 유가증권처분의의 합계액}}{\text{배당금} \cdot \text{신주인수권처분의 및 유가증권처분의의 합계액}} \right)$$

- ①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적수란 매일의 잔액을 일정기간 단위로 합산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적수계산시 매월말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적수계산시 기산일은 보증금 등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며, 임대사업개시 전에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로 한다.
- ②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란 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을 포함, 재평가차액 및 토지취득가액을 제외)으로 하고 그 적수는 임대면적비율²⁰⁾로 계산한다.
- ③ 유가증권처분익이란 유가증권의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이 부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 ④ 정기예금이자율이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산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19) '주업'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연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20) 임대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㉓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함)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

$$\text{지하도의 건설비적수 총계} \times \frac{\text{임대면적의 적수}}{\text{임대가능면적의 적수}}$$

㉔ ㉓이외의 임대부동산

$$\text{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적수 총계} \times \frac{\text{임대면적의 적수}}{\text{임대가능면적의 적수}}$$

(2) [세무사랑2] 운영방법

(주)한국세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임대보증금 등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필요한 세무조정 및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1. 임대보증금의 내역

구	분	금	액	임대면적
전	기	이	월	
	5월30일	보증금	감소	
	7월 1일	보증금	증가	
기	말	잔	액	
			1,000,000,000	100,000m ²

- 2. 건설비상당액은 600,000,000원이며 건물의 총 연면적은 100,000m²이다.
- 3.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은 8,900,000원이며 이 중 임대보증금 운용수익은 6,000,000원이다.
- 4.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2.5%로 가정한다.

(해답 및 계산과정)

세 무 조 정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익금산입		간주익금	1,257,534원		기타사외유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한국세무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begin{aligned}
 \text{① 임대보증금등의 적수} &= 800,000,000 \times 149\text{일} + 500,000,000 \times 32\text{일} + \\
 &\quad 1,000,000,000 \times 184 = 319,200,000,000 \\
 \text{② 건설비상당액 적수} &= 600,000,000 \times 365 = 219,000,000,000 \\
 \text{③ 건물연면적 적수} &= 100,000\text{m}^2 \times 365 = 36,500,000 \\
 \text{④ 건물임대면적 적수} &= 100,000\text{m}^2 \times 149\text{일} + 70,000\text{m}^2 \times 32\text{일} + 100,000\text{m}^2 \\
 &\quad \times 184 = 35,540,000 \\
 \text{⑤ 간주익금} &= [\text{①} - \text{②} \times \text{④} \div \text{③}] \times 1/365 \times 2.5\% - 6,000,000 \\
 &= 1,257,534
 \end{aligned}$$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조정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

1.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조정

①임대보증금등 적 수	②건설비상당액 적 수	③보증금잔액 {(①-②)/365}	④이자율 (%)	⑤(③X④) 익금상당액	⑥보증금운용 수	⑦(⑤-⑥) 익금산입금액
			3.4			

2. 임대보증금등의 적수계산

⑩일 자	⑨적 요	⑪임대보증금누계			⑩일 수	⑩적 수 (⑩X⑪)
		입금액	반환액	잔액누계		
1						

임대보증금에 대한 변동내역은 [F12불러오기]기능을 이용하여 일반전표에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면 된다.

3.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

가. 건설비의 안분계산	⑮건설비 총액적수 (20의 합계)	⑯임대면적 적수 (24의 합계)	⑰건물면적 적수 (28의 합계)	(16)건설비상당액적수 (⑮X⑱)/⑳
--------------	-----------------------	----------------------	----------------------	-------------------------

4. 임대보증금등의 운용수입금액 명세서

(29)과 목	(30)계 정 금 액	(31)보증금운용수입금액	(32)기타수입금액	(33)비 고
1				

임대보증금등의 운용수입금액명세서에는 재무제표에 반영된 이자수익을 직접 입력한다.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조정명세서 [3017]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조정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

1.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조정

①임대보증금등 적 수	②건설비상당액 적 수	③보증금잔액 {(①-②)/365}	④이자율 (%)	⑤(③X④) 익금상당액	⑥보증금운용 수	⑦(⑤-⑥) 익금산입금액
319,200,000,000	213,240,000,000	290,301,369	2.5	7,257,534	6,000,000	1,257,534

2. 임대보증금등의 적수계산

⑩일 자	⑨적 요	⑪임대보증금누계			⑩일 수	⑩적 수 (⑩X⑪)
		입금액	반환액	잔액누계		
1 01 01	전기이월	800,000,000		800,000,000	149	119,200,000,000
2 05 30	사무실보증금 현금 반환		300,000,000	500,000,000	32	16,000,000,000
3 07 01	사무실보증금 현금 수령	500,000,000		1,000,000,000	184	184,000,000,000
	계	1,300,000,000	300,000,000	1,000,000,000	365	319,200,000,000

3.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

가. 건설비의 안분계산	⑮건설비 총액적수 (20의 합계)	⑯임대면적 적수 (24의 합계)	⑰건물면적 적수 (28의 합계)	(16)건설비상당액적수 (⑮X⑱)/⑳
	219,000,000,000	35,540,000	36,500,000	213,240,000,000

4. 임대보증금등의 운용수입금액 명세서

(29)과 목	(30)계 정 금 액	(31)보증금운용수입금액	(32)기타수입금액	(33)비 고
1 이자수익	8,900,000	6,000,000	2,900,000	
2				
계	8,900,000	6,000,000	2,900,000	

※ 「2.임대보증금등의 적수계산」은 「F12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재무회계에 반영된 임대보증금계정의 변동내역을 반영한다.

※ 「3.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은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에서 별도로 계산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 「4. 임대보증금등의 운용수입금액 명세서」는 「(29)과목」에 손익계산서상의 계정과목을 입력하고 그와 관련된 계정금액 등을 입력한다.

[3017] 임대보증금등의간주익금조정명세서

종료 도움 코드 조정등록 전기서식 삭제 전체삭제 원장조회 수입조회 인쇄 저장 불러오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조정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

3.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

가. 건설비의 안분계산	㉔건설비 총액적수 ((20)의 합계)	㉔임대면적 적수 ((24)의 합계)	㉔건물연면적 적수 ((28)의 합계)	(16)건설비상당액적수 ((㉔x㉔)/㉔)
	219,000,000,000	35,540,000	36,500,000	213,240,000,000

나. 임대면적적등적수계산 : (17)건설비 총액적수

㉔일 자	건설비 총액	(18)건설비총액 누계	(19)일 수	(20)적 수 ((18)x(19))
1 01 01	600,000,000	600,000,000	365	219,000,000,000
2				
계			365	219,000,000,000

나. 임대면적적등적수계산 : (21)건물임대면적 적수(공유면적 포함)

㉔일 자	입실면적	퇴실면적	(22)임대면적 누계	(23)일 수	(24)적 수 ((22)x(23))
1 01 01	100,000.00		100,000	149	14,900,000
2 05 30		30,000.00	70,000	32	2,240,000
3 07 01	30,000.00		100,000	184	18,400,000
계			365	365	35,540,000

나. 임대면적적등적수계산 : (25)건물연면적 적수(지하층 포함)

㉔일 자	건물연면적 총계	(26)건물연면적 누계	(27)일 수	(28)적 수 ((26)x(27))
1 01 01	100,000	100,000	365	36,500,000
2				
계			365	36,500,000

조정 등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임대보증금간주익금	1,257,534	기타사외유출			
합 계	1,257,534		합 계		

소득명세 6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함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임대보증금간주익금	1,257,534		

※환경등록-조정등록방법: 조정과목사용으로 설정됨

2.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작성

1) 개념정리

법인의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진행되는 세무조정 및 세액의 납부 등의 절차가 달라진다.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의 구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며 중소기업법인은 일반법인에 비하여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 등에 있어 상당한 혜택²¹⁾이 주어진다.

따라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서식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법인조정-신고부속서류-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판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²²⁾으로 할 것(업종기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업종을 주된 사업²³⁾으로

21)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의 지원내용요약

- ①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본한도가 일반법인보다 크다.
- ②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하다.
- ③ 세액의 분납시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로 일반기업의 30일보다 길다.
- ④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조특법상의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⑤ 최저한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은 10%이며 일반기업은 15%이다.

22) 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의 판정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내국법인은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것임.[서면2팀-2513, 2006.12.08]

② **중소기업 적용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이 주된 사업이 되는 경우**

3개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만 그 중 하나의 업종만이 중소기업 적용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의 업종이 법인의 주된 사업이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서면2팀-1649, 2004.8.9]

23) 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의 판정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내국법인은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것임.[서면2팀-2513, 2006.12.08]

② **중소기업 적용대상업종이 아닌 업종이 주된 사업이 되는 경우**

3개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만 그 중 하나의 업종만이 중소기업 적용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의 업종이 법인의 주된 사업이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서면2팀-1649, 2004.8.9]

하여야 한다. 또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의제제조업** 포함한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²⁴⁾,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²⁵⁾, 물류산업²⁶⁾, 수탁생산업²⁷⁾,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²⁸⁾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24) ① 중소기업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함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서면1탐-1481, 2005.12.01)
- ②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임.(서이 46012-12116, 2003.12.15)
- 25) 엔지니어링 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엔지니어링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를 말한다.
- 26)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을 말한다. 그러나 지입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사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27)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조특법 제2조 제3항)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의제제조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 ②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 ③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또한 타인의 상표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매업에 해당한다.(서이-301, 2004.2.27, 재조세-805, 2004.12.1)

구 분	내 용
국내제조업자	국내 위탁제조의 경우: 제조업
	국외 위탁제조의 경우: 도매업
외국사업자가 국내 위탁제조의 경우	제조업
주문자상표부탁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자의 재위탁의 경우	국내 사업자에게 재위탁: 수탁생산업자(제조업)
	국외 사업자에게 재위탁: 도매업
제조설비가 없이 단순조립을 하는 경우	서비스업으로 구분

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8) 도시가스사업이란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은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을 말한다.

※ 각 규정별 의제제조업의 정의		
구 분	의제제조업 규정	결 론
부가가치세법	<p>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부기통 1-2-6)</p> <p>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p> <p>②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p> <p>③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p> <p>④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p>	위탁생산 장소와 상관없이 무조건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세법	<p>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p> <p>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p> <p>②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p> <p>③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p>	
한국표준산업분류	<p>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p> <p>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p> <p>②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p> <p>③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p> <p>④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p>	국내 위탁생산: 제조업 국외 위탁생산: 도매업
조세특례제한법	<p>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p> <p>②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p> <p>③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p>	

※ 의제제조업의 업종분류는 그 규정마다 다르므로 그 적용 및 판단에 주의하여야 한다.

[참고] 소득세법상 업종별 그룹 구분 판정기준(소령208조5항)

업종별 그룹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단한다.

구분	업종구분
①그룹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② 및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②그룹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③그룹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부동산관련 서비스업(부동산중개업), 동산임대업

1) 「①그룹」의 부동산매매업 범위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분류코드 4112)(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소령 122 ①)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적용범위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적용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및 개발 공급업	구입한 주거용 건물 재판매하는 경우만 적용
		비주거용 건물 및 개발 공급업	모두 적용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모두 적용

2) 「②그룹」의 건설업의 범위

			적용범위
건설업	종합 건설업	건물건설업	비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건물건설업
		토목건설업	모두 적용
	전문직별 공사업	모두 적용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및 개발 공급업	구입한 주거용 건물 재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주거용 건물 및 개발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및 개발 공급업	모두 적용제외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3) 「③그룹」의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 분석

				2013년	2014년
부동산 및 임대업	부동산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임대업	적용	적용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제외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부동산관리업	제외 (①그룹으로 판단됨)	적용
			부동산중개 및 감정평가업	제외 (①그룹으로 판단됨)	적용
	임대업 (부동산제외)			제외 (①그룹으로 판단됨)	적용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되기 위하여는 해당 기업의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중소기업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이 때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²⁹⁾으로 본다.(규모기준)

29)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업종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하나의 업종을 적용하지만, 매출액은 회사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제조업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제조업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 독립성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독립성기준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최대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³⁰⁾을 준용한다.

3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규정에 의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그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과 어느 한 쪽 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기업

④ 졸업기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업종기준 및 규모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참고] 개정 전 규모기준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2011.12.28. 개정)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A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1호와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⑤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내에 해당할 것

당해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며,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졸업기준에 해당되거나 또는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또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최초 중소기업 규모초과의 경우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최소중소기업 규모초과	규모초과와 상관없이 유예기간으로 중소기업 인정			규모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확인

2) 최초 유예기간 적용이후 판단기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중소기업규모초과 일반기업적용	중소기업규모이하 중소기업적용	중소기업규모초과 일반기업적용	중소기업규모이하 중소기업적용

2) [세무사랑2] 운영방법

(1) 회사등록-기본사항

11. 사업장전화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12. 팩스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13. 법인구분	내국법인	14. 법인종류별구분	중소기업
15. 중소기업여부	여	16. 설립연월일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17. 개업연월일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18. 폐업연월일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① 「13. 법인구분」: 내국법인/외국법인/외투법인으로 구분하며 이는 법인의 과

세대상소득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② 「14. 법인종류별구분」: 크게 중소기업과 일반기업,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및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으로 법인종류를 선택한다. 보통은 중소기업 또는 일반법인이 대부분이다.
- ③ 「15. 중소기업여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여」를 선택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여기서 중소기업으로 선택 입력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무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회사등록사항 중 [15. 중소기업여부]이므로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인조정-기초정보관리-회사등록-기본사항
회계관리-기초정보관리-회사등록-기본사항

(2)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기준검토표」는 「업종등 검토」, 「자본금·매출액·종업원수등 검토」, 「독립성등 검토」 및 「중견기업」순으로 작성한다.

가. 「사업요건 및 규모요건」 작성

사업 요건 및 규모 요건		독립성 요건 및 유예기간		소기업	중견기업	
요건		검토 내용			적합 여부	
사업 요건	작성방법 1에 해당하는 사업	업태별/구분	기준경비율코드	사업수입금액		
		그 밖의 사업				
		계				
규모 요건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 등은」 '매출액'으로 봄)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매출액				
		-당회사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		억원			
중기업					적정여부	

- ① 「(101)사업요건」: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의 순서대로 (01~02)해당사업란에 기준경비율코드와 해당 사업수입금액을

사업 요건 및 규모 요건	독립성 요건 및 유예기간	소기업	중견기업					
요건		검토 내용					적합 여부	
(107)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101)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부적합	
(108)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닐 것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부적합	
(109)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법 제5조제1항) : 1천5백만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②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3) :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 3천억원 미만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단위:억원)					적합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억	억	억	억	억		
		중견기업					적정여부	부적합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작성하는 서식으로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사례

다음의 자료에 의해 (주)한국세무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작성하시오.

구분	내용	
업종	제조, 도소매, 건설	
매출액	상품 매출	703,260,000
	제품 매출	1,249,506,000
	공사 수입	1,287,600,000
상시 근로자수	월평균 505명	
자본금	760,000,000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유지		

사업 요건 및 규모 요건		독립성 요건 및 유예기간	소기업	중견기업		
요건			검토 내용		적합 여부	
(101) 사업 요건	작성방법 1에 해당하는 사업	업태별/구분	기준경비율코드	사업수입금액	적합	
		건설	451101	1,320,400,000		
		제조	171109	1,249,506,000		
		그 밖의 사업		703,260,000		
		계		3,273,166,000		
(102) 규모 요건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 등은' '매출액'으로 봄)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매출액			적합	
		-당회사	32.0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				
			1,000억원 이하			
		나.자산총액	1.4억원			
			중기업	적정여부	적합	

사업 요건 및 규모 요건		독립성 요건 및 유예기간	소기업	중견기업	
요건			검토 내용		적합 여부
(103) 독립 성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이상 직접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의①기준)이내일 것			적합
(104) 유예 기간	①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102)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사유발생 연도		년	적합
			중기업	적정여부	적합

사업 요건 및 규모 요건		독립성 요건 및 유예기간		소기업		중견기업			
요건				검토 내용				적합 여부	
(105)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 업종(101)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요건(103)을 충족하는지 여부				적합	
(106)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가. 매출액		32.0 억원		부적합	
①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연평균인원)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당회사		505 명			
각 호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요건을 충족할 것				각 호의 해당 업종 기준		50 명 미만			
				소기업		적정여부		부적합	

사업 요건 및 규모 요건		독립성 요건 및 유예기간		소기업		중견기업					
요건				검토 내용				적합 여부			
(107)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101)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부적합			
(108)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부적합			
(109)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적합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법 제5조제1항) :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단위:억원)							
②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3): 5천억원 미만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 3천억원 미만				억		억				억	
				중견기업		적정여부		부적합			

3.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 관련 사항

1) 개념정리

감가상각은 유형/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으로서 감가상각의 주목적은 원가의 배분과정이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원가, 잔존가액,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은 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등을 폭넓게 허용을 하고 있으나 감가상각비는 기업의 과세소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법정하고 있으며 매년 일정한도 내의 금액만을 손금으로 인정한다.

이에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당기 감가상각비 계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고정자산의 내역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임의상각제도)

2) 감가상각대상 자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법인이 소유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토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다음과 같다.

(1)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 ① 건물(건물부속설비 포함) 및 구축물
- ②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③ 선박 및 항공기
- ④ 기계 및 장치
- ⑤ 동물 및 식물
- ⑥ ①내지 ⑤와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무형고정자산의 범위

- ①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② 댐사용권, 개발비³¹⁾
- ③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④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⑤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³²⁾ ⑥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대상자산여부를 판단한다.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하는 자산	감가상각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자산
① 장기할부매입자산	①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금융리스자산	② 건설중인 자산
③ 유희설비	③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
	④ 조경용 수목
	⑤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3) 감가상각의 계산요소

(1) 취득가액

가. 일반적인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그 취득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31) ‘개발비’라 함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 32) ‘사용수익기부자산’이라 함은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구 분	취 득 가 액
㉕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㉖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 포함)·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㉗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①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8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 및 분할법인등의 장부가액 ② 그 밖의 경우 : 해당 자산의 시가
㉘ 위 외의 기타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나. 취득가액의 특례

취득가액에는 자본적지출 및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분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이며, 수익적 지출은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당기 비용으로서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자본적 지출	수익적지출
㉕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㉕ 건물 또는 벽의 도장
㉖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	㉖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㉗ 빌딩의 피난시설 등 설치	㉗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㉘ 자동차의 타이어 대체
㉙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유사한 성질의 것	㉙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및 유리의 삽입
	㉚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위와 유사한 것

(2) 내용연수

가) 의의

내용연수란 자산의 사용가능한 연수로서 반드시 내용연수 기간 내에 감가상각을 완료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세법상 내용연수는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한 상각률을 정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즉, 기업회계기준상의 내용연수에는 추정을 허용하나 법인세법은 다음과 같이 내용연수와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정하고 있어 법인의 선택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

구 분	대 상 자 산	내용연수(상한/하한)
<별표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시험연구용자산	5년, 3년
<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무형고정자산	5년, 10년, 20년, 50년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5년(4년/6년)
	선박 및 항공기	12년(9년/15년)
	건물과 구축물	20년(15년/25년) 40년(30년/50년)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위 <별표3>과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	5년(4년/6년) 8년(6년/10년) 10년(8년/12년) 12년(9년/15년) 20년(15년/25년)

- ① 기준내용연수: <별표5>와 <별표6>에서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정한 내용연수
- ② 내용연수범위: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³³⁾
- ③ 신고내용연수: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한 연수, 무신고시에는 기준내용연수적용.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내용연

3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 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 ①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하여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하여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한다.

$$\text{내용연수} \cdot \text{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times \frac{12}{\text{사업연도월수}}$$

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의 조정」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2014.1.1 이후 취득하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따라서 아래의 11개 업종에 속하는 법인은 2014.1.1.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업종별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를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선택신고하자 하는 때에는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업 종 (중분류)	2013.12.31. 이전 취득자산	2013.12.31. 이후 취득자산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2660)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하고,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26295)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410)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칩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5년 (4년-6년)	6년(5년-7년)
41. 종합건설업	5년(4년-6년)	8년(6년-10년)
68. 부동산업	5년(4년-6년)	8년(6년-10년)
85. 교육서비스업	5년(4년-6년)	4년(3년-5년)
95. 수리업	5년(4년-6년)	8년(6년-10년)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다만,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1910) 중 연탄, 갈탄·토탄의 응집 유·무연탄 및 기타 유·무연탄 제조는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8년(6년-10년)	14년 (11년-17년)
61. 통신업	8년(6년-10년)	6년(5년-7년)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1511)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10년 (8년-12년)	4년(3년-5년)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년 (8년-12년)	12년 (9년-15년)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0년 (15년-25년)	16년 (12년-20년)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은 제외) 중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업(2041)	5년(4년-6년)	4년(3년-5년)

다) 내용연수의 신고

법인이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선택한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 ① 신설법인과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 그 영업개시일
- ② 위 이외의 법인이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취득일 또는 개시한 날

라) 중고자산 등의 수정내용연수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하였거나 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수정내용연수의 범위: (기준내용연수 × 50% ~ 기준내용연수)

마) 중소기업 설비자산의 내용연수 특례적용

기준내용연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3년 9월1일부터 2014년 3월 31일 및 2014년 10월1일부터 2015년 3월 31일 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50%를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중소기업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 차량 및 운반구. 다만,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

우로 한정한다.

③ 공구, 기구 및 비품

④ 기계 및 장치

바)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서비스업³⁴⁾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비투자자산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특례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클 것
- 직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그 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클 것

① 설비자산의 범위

설비자산이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34) 서비스업이란 다음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그 밖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포장 및 충전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사회복지 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물류산업, 항공운송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물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 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음식점업(2016년부터 적용)

- 차량 및 운반구. 다만,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공구, 기구 및 비품
- 기계 및 장치

② 특례상각범위액

특례상각범위액이란 다음의 신고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상각방법을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기준내용연수×60% ~ 기준내용연수×140% 내에서 선택신고한 내용연수

③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는 최저한세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④ 준용규정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감가상각의 의제
- 즉시상각의 의제
-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3) 잔존가액

고정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자산을 처분할 때 회수할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거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이지만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처분시 처분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법인세법은 확일적으로 「0」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잔존가액이 없으면 이론상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또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5%와 1,000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한다.

4) 감가상각방법

(1)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고정자산의 상각액은 법인이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 상각방법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신 고 시	무 신 고 시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기타)	정액법	정액법
건축물이외의 유형고정자산	정률법, 정액법	정률법
광업권(채취권 포함)	생산량비례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개발비	20년이내 선택한 기간내에서 월수에 비례 상각	5년간 균등상각법
사용수익기부자산	사용수익기간에 따른 정액법	

※ 감가상각방법을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경우는 변경전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2)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상각방법의 신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상각방법(무신고자는 무신고상각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 그 영업을 개시한 날
- ㉡ ㉠ 이외의 법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때: 그 취득한 날

5)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1) 상각방법별 상각범위액 계산방법

상 각 방 법	상 각 범 위 액
정 액 법	(취득가액-잔존가액)×상각률
정 률 법	(취득가액-세무상감가상각누계액)×상각률
생산량비례법	(취득가액-잔존가액) × $\frac{\text{당해 사업연도중 채굴량}}{\text{총채굴예정량}}$

(2) 감가상각계산범위액의 특례

사업연도의 의제 또는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사업연도가 일시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와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한다.

$$1\text{년 기준 상각범위액} \times \frac{\text{당해 사업연도의 월수}}{12}$$

6)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7) 세무조정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간접비로 계상한 금액뿐만 아니라 다음 금액을 포함한다. ①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을 당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된 상각비 ③ 상각방법의 변경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된 상각비
- 상 각 범 위 액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
(+)상각부인액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분한다.
= (-)시인부족액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서 시인부족액은 소멸한다. 다만, 전기에 이월된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시인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동 상각부인액을 손금산입(유보)한다.(추인)

8) 실무적용시 유의사항

(1) 「세무사랑2」에 의한 감가상각비와 기업회계의 차이

비유동자산인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세무사랑2]는 기본적으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운영이 되므로 기업회계기준과는 조금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내용연수의 적용, 감가상각방법의 선택, 잔존가액 등이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실제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하여 [세무사랑2]에 입력하는 기본자료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에 반영할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직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직접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적용하고 있어 감가상각비는 대부분 기업회계에 의한 상각비와 일치한다. 따라서 [세무사랑2]의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서 계산된 상각비를 「일반전표입력」메뉴나 「결산자료입력」메뉴에 입력하여야만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2)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전기 이월된 고정자산 및 당기에 취득한 고정자산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는 별 문제없다.

그러나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고정자산 관련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므로 다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계상시 당기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누락되거나 당기 감가상각비가 이미 반영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세무사랑2]의 [회계관리]메뉴에서 [고정자산및감가상각-고정자산등록]메뉴에 고정자산의 내역을 관리하고 당기상각비가 「0」(zero)이 되게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참고] 회기 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고정자산등록 관리방법

- ① 「회계관리 → 기초정보등록 → 환경등록」에서 「11 고정자산 간편자동등록 사용」에서 「1.사용」을 입력하여 설정한다.

전체		회계	환경	법인	물류
1	부가세 소수점 관리	자리 수 끝 전 처리			
수	단	가	금		
0	0	1.검사	2.롤링		
2	분개유형 설정				
매	출	0401 상품매출			
매	출	채 권	0108 외상매출금		
매	입	채 무	0146 상품		
매	입	채 무	0251 외상매입금		
신용카드매출채권	0120 미수금				
신용카드매입채무	0253 미지급금				
3	추가계정 설정	구분 유형 계정 과목 추가			
매	출	매	출		
매	출	매	출		
매	입	매	입		
매	입	매	입		
4	부가세 포함 여부	카드, 현과의 공급가액에 부가세 포함			
		건설 공급가액에 부가세 포함			
		과세 공급가액에 부가세 포함			
5	봉사로 사용 여부	유형: 물공(54)의 물공제 사유			
6	유형: 영세몰매출(12.16) 구분	단가 표시			
7	단가 표시	성실신고사업자			
8	성실신고사업자	표준(법인세)용 재무제표			
9	표준(법인세)용 재무제표	건물의 유형고정자산 상각방법			
10	건물의 유형고정자산 상각방법	11 고정자산 간편자동등록 사용			
11	고정자산 간편자동등록 사용	현장코드 엔터키 자동복사			
12	현장코드 엔터키 자동복사	부서사원코드 엔터키 자동복사			
13	부서사원코드 엔터키 자동복사	프로젝트코드 엔터키 자동복사			
14	프로젝트코드 엔터키 자동복사	세금계산서 인쇄시 복수거래 정렬 방법			
15	세금계산서 인쇄시 복수거래 정렬 방법	면세류 입력 설정			
16	면세류 입력 설정	의제류 자동 설정			
		의제매입공제율			
		재활용매입공제율			
		구리 스크랩들			
		1.포함			
		1.포함			
		0.미포함			
		0.사용안함			
		2			
		1.사용			
		0.부			
		1.일반법인			
		1.경률법			
		1.사용			
		0.사용안함			
		0.사용안함			
		0.사용안함			
		1.입력순			
		1.의제매입			
		6 / 106			
		6 / 106			
		5 / 106			

- ②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고정자산 취득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 ③ 정보 입력시 분개에서 고정자산계정과목을 선택하고 취득금액을 입력하면 「기초코드등록」팝업창이 활성화되며 「고정자산 간편등록」메뉴에 감가상각과 관련된 기초정보를 직접 입력한다.

- ④ 「회계관리 → 고정자산및감가상각 → 고정자산등록」메뉴에서 「F4 일괄 계산」기능을 한번 실행한 후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계정과목을 입력하면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간편등록한 감가상각대상자산 내역 및 감가상각 비계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계정과목	적요	거래처	차변(출금)	대변(입금)
차변	0100 부가세대금	자동차	00110 동서남북자	4,520,000	
차변	0208 차량운반구	자동차	00110 동서남북자	45,200,000	
합 계				49,720,000	0

기분등록사항	추가등록사항
1. 기초가액 / 실질 기초가액	
2. 전기말상각누계액(-) / 실질 전기말상각누계액	
3. 전기말장부가액 / 실질 전기말장부가액	
4. 당기중 취득 및 당기증가(+)	45,200,000
5. 당기감소(일부양도·매각·폐기)(-) / 전기말상각누계액(당기감소분)(+)	
6. 전기말자본적지출액누계(+)(경역법만)	
7. 당기자본적지출액(즉시상각분)(+)	
8. 전기말부인누계액(+)(정률만 상각대상에 가산)	
9. 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10. 상각대상금액	45,200,000
11. 내용연수/상각률(월수) / 실제내용연수/차감연수(실상상각률)	5 / () (8) 기준내용연수도표
12. 상각비위액(한도액)(10X상각률)	13,590,133
13. 회사계상액(12)-(7)	13,590,133
14. 경비구분	6.800번대/판관비
15. 당기말감가상각누계액	13,590,133
16. 당기말장부가액	31,609,867
17. 당기의제상각비	
18. 전체양도일자	
19. 전체폐기일자	
20. 업종	

(3) 기업회계기준상의 감가상각비가 세법상의 상각비와 다른 경우

[세무사랑2]의 [회계관리-고정자산및감가상각-고정자산등록]메뉴에서 계산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기준에 따라 계산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감가상각비와는 상각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부에 반영된 감가상각비와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장부에 반영된 상각비와 다른 경우 고정자산등록메뉴의 「13.회사계상액」 옆의 「사용자수정」을 사용하여 장부에 반영된 상각비로 수정입력하여야 한다.

(4)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임의상각제도이므로 법인의 선택에 따라 손금계상여부가 달라진다. 그러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받거나 감면받는 경우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보다 작은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까지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제상각액에 대한 정확한 세무조정과 유보잔액 관리가 필요하다.

(4) 중간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경우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본 결산시 입력된 자료를 통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회계관리-고정자산및감가상각-고정자산등록]에서 「F4 일괄계산」이라는 기능을 통하여 반드시 새로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5) 상각부인액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의 상각범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상각부인액」이라 하며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특히 상각방법으로 정율법을 선택한 경우 상각부인액은 차기이후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대상금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별 감가상각 자산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상의 상각부인액에 대한 내역을 확인한 후 당기 상각비를 계산할 때 고정자산등록 사항에 개별자산별로 상각부인액의 누적액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정확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개별자산별 상각부인액의 누적관리내용이 현재는 자동으로 관리되지 않아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6)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의 오류

- ① 감가상각시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기준으로 $\pm 25\%$ 가감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적용가능하다. 이 경우 선택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준내용연수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보통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서 25%를 감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줄일 수 있다.
- ② 내용연수를 선택함에 있어 업종은 대분류 및 중분류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중분류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대분류상 제조업의 내용연수가 각 기준내용연수별로 존재하므로 반드시 중분류의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③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 경과된 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자산(중고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으므로 중고자산 취득시에 수정내용연수 적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 ④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신고는 [법인조정-감가상각조정-감가상각방법(연수, 변경등)신고서]에서 작성한다.

출력업선 :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내용연수변경신고서

1. 신고(청)인 인적사항				
신고(청)인	① 법 인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_--_--
	③ 본 점 소 재 지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생 년 월 일	----_--_--
	⑥ 사 업 개 시 일	----_--_--	⑦ 변 경 방 법 적 용 사 업 연 도	----_--_--
⑩ 자산 및 업종	⑨ 내용연수범위	⑪ 신고내용연수	⑫ 변경내용연수	⑬ 변경사유
3. 감가상각방법 신고(청) 및 변경				
자산명	당초 신고상각방법	변경상각방법	변경사유	
㉔ 유형고정자산(건축물제외)				
㉕ 광업권				
㉖ 광업용고정자산(건축물제외)				

신고일 : ----_--_--

9) 즉시상각의 의제

다음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시부인계산 없이 바로 손금으로 인정한다.

(1) 자본적지출을 수선비로 계상한 다음의 금액

- ㉑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㉒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 ㉓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2)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의 소액자산

- ㉑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 ㉒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3) 단기사용자산으로서 다음의 자산가액

- ㉑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 ㉒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구, 가정용 및 비품, 시

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㉔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 ㉕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4) 생산시설의 폐기손실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0) 양도자산에 대한 시·부인액의 처리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따라서 시인부족액은 세무조정없이 자동소멸된다.

이 경우에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begin{array}{l} \text{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 \\ \text{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 \end{array} \times \frac{\text{양도자산의 취득시 장부가액}}{\text{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취득가액)}}$$

11) [세무사랑2]의 기능설명

법인조정-감가상각조정-고정자산등록	
기본등록사항	추가등록사항
1. 기초가액 / 성실 기초가액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2. 전기말상각누계액(-) / 성실 전기말상각누계액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3. 전기말장부가액 / 성실 전기말장부가액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4. 당기중 취득 및 당기증가(+)	<input type="text"/>
5. 당기감소(일부양도·매각·폐기)(-) 전기말상각누계액(당기감소분)(+)	<input type="text"/>
6. 전기말자본적지출액누계(+)(정액법만)	<input type="text"/>
7. 당기자본적지출액(즉시상각분)(+)	<input type="text"/>
8. 전기말부인누계액(+)(정률만 상각대상에 가산)	<input type="text"/>
9. 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input type="text"/>
10. 상각대상금액	<input type="text"/>
11. 내용연수/상각률(월수) 성실경과내용연수/차감연수(성실상각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기준내용연수도용표
12. 상각범위액(한도액)(10X상각율)	<input type="text"/>
13. 회사계상액(12)-(7)	<input type="text"/> 사용자수정
14. 경비구분	<input type="text"/>
15. 당기말감가상각누계액	<input type="text"/>
16. 당기말장부가액	<input type="text"/>
17. 당기의제상각비	<input type="text"/>
18. 전체양도일자	<input type="text"/>
19. 전체폐기일자	<input type="text"/>
20. 업종	<input type="text"/>

① [당기 중 취득 및 당기증가(+)]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당기에 신규로 취득하였거나 기존의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을 자산가액에 포함시킨 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을 입력한다. 자본적지출액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한 경우에는 아래의 [7.당기자본적지출액(즉시상각분)(+)]란에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 [7.당기자본적지출액(즉시상각분)(+)]

본란에는 당기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한 금액을 입력한다. 입력된 자본적 지출액은 당기의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장부가액 증가와 당기 감가상각비로 인식되어 당기상각범위액이 수정되며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작성시 세법상의 회사계상 상각비가 증가하게 된다.

③ [8.전기말부인누계액(+)](정률만 상각대상에 가산)

본란에는 전기말 감가상각부인액을 개별자산별로 관리하는 란으로서 전기말 상각부인액을 개별자산별로 입력하며 전산프로그램은 본 금액을 고려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게 된다.

④ [9.전기말의제누계액(-)]

본란은 법인세 등을 감면 또는 면제받은 경우 위 법인세법상의 상각범위액보다 작게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그 차액을 입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기에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16.당기의제상각액]란에 직접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차기이후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자동으로 누적관리되며 정확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게 된다.

⑤ [13.회사계상액]

본란에는 감가상각대상자산내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동 금액과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그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사용자수정]기능을 이용하여 금액을 결산재무제표의 금액으로 수정입력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계상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도 [7.당기자본적지출액(즉시상각분)(+)], [전기말부인누계액] 및 [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의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13.회사계상액」이 기업회계에 의한 당기상각비와 달라지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⑥ [14.경비구분]

[경비구분]란을 사용하여 원가구분을 하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자료입력 및 일반전표에 입력할 경우 자동으로 분개를 반영할 수 있어 편리하다.

13. 회사계상액(12)-(7)		16,912,500	사용자수정
14. 경비구분	1. 500번대(제조)	1,500번대/제조	
15. 당기말감가상각누계액	2. 600번대(도판)		
16. 당기말장부가액	3. 650번대(모판)	29,412,500	
17. 당기의제상각비	4. 700번대(분양)	20,587,500	
	5. 750번대(문송)		
	6. 800번대(판관비)		

12) [세무사랑2] 운영방법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한국세무의 결산서상 반영된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고 이를 바탕으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세무조정을 하시오.

1)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취 득 일	취 득 가 액	전기감가 상각누계액	당기 감가상각비	
건	물	사무실	2007.01.02	900,000,000	0	19,500,000
비	품	에어컨	2009.06.10	58,000,000	34,000,000	11,000,000
		복사기	2015.05.03	2,800,000	0	841,866
건설	장비	포크레인	2010.01.06	206,000,000	193,000,000	10,373,000

- 2) 기준내용연수는 건물은 40년 기타자산은 5년이며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은 신고하지 않았다.
- 3)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잔액 중 건설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 23,500,000원이 있다.
- 4) 1월 31일 회사는 전기의 감가상각비계상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소계상분을 발견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3,000,000 (대) 건물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이익잉여금)

- 5) 당기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았다.

(해답 및 계산과정)

세 무 조 정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손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3,000,000원	기타
손금산입	전기상각부인액손금추인	6,088,500원	유보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부인액(에어컨)	176,000원	유보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세법상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상각방법은 건물의 경우 정액법을 기타자산의 경우 정률법을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한다.

1. 건물의 경우

- ① 회사계상상각비 = 19,500,000 + 3,000,000 = 22,500,000
- ② 상각범위액 = 900,000,000 × 1/40 = 22,500,000
- ③ 시인부족액 = ① - ② = 0

2. 비품의 경우(에어컨)

① 회사계상상각비 = 11,000,000

② 상각범위액 = (58,000,000 - 34,000,000) × 0.451 = 10,824,000

③ 상각부인액 = ① - ② = 176,000

3. 비품의 경우(복사기)

① 회사계상상각비 = 841,866

② 상각범위액 = 2,800,000 × 0.451 × 8/12 = 841,866

③ 상각부인액 = ① - ② = 0

4. 건설장비의 경우

① 회사계상상각비 = 10,373,000

② 상각범위액 = [206,000,000 - (183,000,000 - 23,500,000 + 10,000,000)]
× 0.451=16,461,500

③ 시인부족액 = ① - ② = 6,088,500

④ 손금산입 = Min(당기시인부족액, 전기상각부인액)
= Min(6,088,500 , 23,500,000) = 6,088,500

⑤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6,088,500 (유보)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시 [고정자산등록]메뉴는 [회계관리]에서 입력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조정을 위하여 별도의 고정자산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3033] 고정자산등록

종료 코드 사용한코드 성실납세적용 여부 일괄계산 삭제 불러오기 회사계상수정 역설업로드 인쇄 조회

자산계정과목 : 0202 건물

자산코드/명	취득년월일	상각방법
000001 사무실건물	2007-01-02	정액법

기본등록사항	추가등록사항
1. 기초가액 / 성실 기초가액	900,000,000 /
2. 전기말상각누계액(-) / 성실 전기말상각누계액	/
3. 전기말장부가액 / 성실 전기말장부가액	900,000,000 /
4. 당기중 취득 및 당기증가(+)	
5. 당기감소(일부양도·매각·폐기)(-) / 전기말상각누계액(당기감소분)(+)	
6. 전기말자본적지출액누계(+)(정액법만)	
7. 당기자본적지출액(즉시상각분)(+)	
8. 전기말부인누계액(+)(정률만 상각대상에 가산)	
9. 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10. 상각대상금액	900,000,000
11. 내용연수/상각률(월수) / 성실경과내용연수/차감연수(성실상각률)	40 / 0.025 (12) 기준내용연수도용표
12. 상각범위액(한도액)(10X상각률)	22,500,000
13. 회사계상액(12)-(7)	22,500,000 사용자수정
14. 경비구분	6.800번대/판관비
15. 전기말감가상각누계액	22,500,000
16. 전기말장부가액	877,500,000
17. 당기의제상각비	

※ 「13. 회사계상액」: 재무제표에 반영된 당기 감가상각비와 전기오류수정순실로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금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3033] 고정자산등록

종료 코드 사용한코드 성실납세적용 여부 일괄계산 삭제 불러오기 회사계상수정 역설업로드 인쇄 조회

자산계정과목 : 0212 비품

자산코드/명	취득년월일	상각방법
000001 에어컨	2009-06-10	정률법

기본등록사항	추가등록사항
1. 기초가액 / 성실 기초가액	58,000,000 /
2. 전기말상각누계액(-) / 성실 전기말상각누계액	34,000,000 /
3. 전기말장부가액 / 성실 전기말장부가액	24,000,000 /
4. 당기중 취득 및 당기증가(+)	
5. 당기감소(일부양도·매각·폐기)(-) / 전기말상각누계액(당기감소분)(+)	
6. 전기말자본적지출액누계(+)(정액법만)	
7. 당기자본적지출액(즉시상각분)(+)	
8. 전기말부인누계액(+)(정률만 상각대상에 가산)	
9. 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10. 상각대상금액	24,000,000
11. 내용연수/상각률(월수) / 성실경과내용연수/차감연수(성실상각률)	5 / 0.451 (12) 기준내용연수도용표
12. 상각범위액(한도액)(10X상각률)	10,824,000
13. 회사계상액(12)-(7)	11,000,000 사용자수정
14. 경비구분	6.800번대/판관비
15. 전기말감가상각누계액	45,000,000
16. 전기말장부가액	13,000,000
17. 당기의제상각비	

※ [고정자산등록]메뉴의 [7. 당기자본지출액(즉시상각분)]란에 금액을 입력하면 현재 자동으로 계산되는 [13. 회사계상액]이 [7. 당기자본지출액(즉시상각분)]란의 금액만큼 변동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에서도 오류는 수정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

유형자산(정액법)			유형자산(점액법)			무형자산		
계정	자산코드/명	취득년월일	입력내용	금액	총계			
0202	000001 사무실건물	2007-01-02	합계표 자산구분 (4)내용연수(기준, 신고)					
			상각 계산 의 기초 가액	900,000,000	900,000,000			
			회사계산 의 기초 가액	22,500,000	22,500,000			
			자본적 지출액	22,500,000	22,500,000			
			(14)취득가액(7)+(10)+(13)	900,000,000	900,000,000			
			(15)일반상각률, 특별상각률	0.025				
			상각범위 액계산	22,500,000	22,500,000			
			회계상 당기상출 상각액	22,500,000	22,500,000			
			(19) 당기상각시인범위액	22,500,000	22,500,000			
			(20)회계상상각액(9)+(12)	22,500,000	22,500,000			
			(21)차감액(20)-(19)					
			(22)최저한세 적용에따른특별상각부인액					
			조정액					
			(23) 상각부인액(21)+(22)					
			(24) 기왕부인액중당기손금추인액					
			부인액					
			누계					
			(25) 전기말부인누계액					
			(26) 당기말부인누계액(25)+(23)-[24]					
			당기말					
			(27) 당기의제상각액 Δ(21)-[26]					

[F3 조정등록]: 세무조정사항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로 연결시켜준다.
 [F12 불러오기]: 고정자산등록사항에 등록된 자료를 불러온다.

왼쪽의 자산내역별로 고정자산등록에서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불러오게 된다.

따라서 고정자산등록사항에서 정확하게 자본적지출액, 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전기말상각부인누계액을 입력관리하였다면 자동으로 반영될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본 서식에서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또 전기말상각부인누계액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와 전기감가상각조정명세서를 통하여 각 자산별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세법상의 당기 상각범위액이 계산된다.

건설장비			에어컨			복사기		
입력내용	금액		입력내용	금액		입력내용	금액	
합계표 자산구분 (4)내용연수		5	합계표 자산구분 (4)내용연수		5	합계표 자산구분 (4)내용연수		5
상각 계산 의 기초 가액	206,000,000		상각 계산 의 기초 가액	58,000,000		상각 계산 의 기초 가액	2,800,000	
(5)기말현재액	206,000,000		(5)기말현재액	58,000,000		(5)기말현재액	2,800,000	
(6)감가상각누계액	203,373,000		(6)감가상각누계액	45,000,000		(6)감가상각누계액	841,866	
(7)미상각잔액(5)-(6)	2,627,000		(7)미상각잔액(5)-(6)	13,000,000		(7)미상각잔액(5)-(6)	1,958,134	
(8)회사계산상각비	10,373,000		(8)회사계산상각비	11,000,000		(8)회사계산상각비	841,866	
(9)자본적지출액			(9)자본적지출액			(9)자본적지출액		
(10)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23,500,000		(10)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10)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11)전기말부인누계액	36,500,000		(11)전기말부인누계액	24,000,000		(11)전기말부인누계액	2,800,000	
(12)가감계(7)+(8)-(10)+(11)	23,500,000		(12)가감계(7)+(8)-(10)+(11)	24,000,000		(12)가감계(7)+(8)-(10)+(11)	2,800,000	
(13)일반상각률, 특별상각률	0.451		(13)일반상각률, 특별상각률	0.451		(13)일반상각률, 특별상각률	0.451	
상각범위 액계산	16,461,500		상각범위 액계산	10,824,000		상각범위 액계산	841,866	
회계상 당기상출 상각액	206,000,000		회계상 당기상출 상각액	58,000,000		회계상 당기상출 상각액	2,800,000	
(14)일반상각액	16,461,500		(14)일반상각액	10,824,000		(14)일반상각액	841,866	
(15)특별상각액			(15)특별상각액			(15)특별상각액		
(16)계(14)+(15)	16,461,500		(16)계(14)+(15)	10,824,000		(16)계(14)+(15)	841,866	
(17)전기말현재취득가액	206,000,000		(17)전기말현재취득가액	58,000,000		(17)전기말현재취득가액	2,800,000	
(18)당기회계상산출가액			(18)당기회계상산출가액			(18)당기회계상산출가액		
(19)당기자본적지출액			(19)당기자본적지출액			(19)당기자본적지출액		
(20)계(17)+(18)+(19)	206,000,000		(20)계(17)+(18)+(19)	58,000,000		(20)계(17)+(18)+(19)	2,800,000	
(21) 잔존가액	10,300,000		(21) 잔존가액	2,900,000		(21) 잔존가액	140,000	
(22) 당기상각시인범위액	16,461,500		(22) 당기상각시인범위액	10,824,000		(22) 당기상각시인범위액	841,866	
(23)회계상상각액(8)+(9)	10,373,000		(23)회계상상각액(8)+(9)	11,000,000		(23)회계상상각액(8)+(9)	841,866	
(24)차감액(23)-(22)	-6,088,500		(24)차감액(23)-(22)	176,000		(24)차감액(23)-(22)		
(25)최저한세 적용에따른특별상각부인액			(25)최저한세 적용에따른특별상각부인액			(25)최저한세 적용에따른특별상각부인액		
(26) 상각부인액(24)+(25)	6,088,500		(26) 상각부인액(24)+(25)	176,000		(26) 상각부인액(24)+(25)		
(27) 기왕부인액중당기손금추인액	17,411,500		(27) 기왕부인액중당기손금추인액	176,000		(27) 기왕부인액중당기손금추인액		
(28) 전기말부인누계액(11)+(26)-(17)			(28) 전기말부인누계액(11)+(26)-(17)			(28) 전기말부인누계액(11)+(26)-(17)		
(29) 당기의제상각액 Δ(24)-[27]			(29) 당기의제상각액 Δ(24)-[27]			(29) 당기의제상각액 Δ(24)-[27]		
(30) 의제상각누계액(10)+(29)			(30) 의제상각누계액(10)+(29)			(30) 의제상각누계액(10)+(29)		

※ 미상각분 감가상각조정명세서에는 회계상상각비와 세법상의 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앞에서 작성한 고정자산등록상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유형고정자산(정률법, 정액법) 무형고정자산(정액법)별로 세법상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틀바의 자산종류를 선택한 후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고정자산등록]에 등록된 감가상각계산데이터를 이용하게 된다.

1. 자산구분			2. 합계액	유형 고정 자산			6. 무형고정자산
	코드			3. 건축물	4. 기계장치	5. 기타자산	
재무	101. 기말현재액	01	1,166,800,000	900,000,000		266,800,000	
상태표	102. 감가상각누계액	02	244,964,866	5,750,000		239,214,866	
상가액	103. 미상각잔액	03	921,835,134	894,250,000		27,585,134	
	104. 상각범위액	04	50,627,366	22,500,000		28,127,366	
	105. 회사손금계상액	05	27,964,866	5,750,000		22,214,866	
조정 금액	106. 상각부인액 (105-104)	06	176,000			176,000	
	107. 시인부족액 (104-105)	07	22,838,500	16,750,000		6,088,500	
	108. 기항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	08	6,088,500			6,088,500	
	109. 신고조정손금계상액	09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가지금입정이자(대표이사)	5,899,995	상여	외화예금	500,000	유보발생
가지금입정이자(관계회사)	810,956	기타사외유출	외화장기차입금	5,000,000	유보발생
업무무관자산지급이자	8,169,489	기타사외유출	전기오류수정손실	3,000,000	기타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원천세제)	2,250,000	상여	전기건설용장비감가상각비한도초과	6,088,500	유보감소
건설자금이자	700,000	유보발생			
예여권감가상각부인액	176,000	유보발생			
합 계	18,006,440		합 계	14,588,500	

과목	금액	과목	금액
비용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176,000	건설용장비 전기감가상각비	6,088,500

※환경등록-조정등록방법: 조정과목사용으로 설정됨

손익조정 직결입력 계정코드도움(F2) 조정코드도움(F4) 삭제(F5) 종료(ESC)

4. 과목별세무조정-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1) 개념정리

퇴직급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내적립제도인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가 설정된 자는 제외)에게 장래에 지급할 퇴직금의 상당액(=퇴직급여추계액)을 각 사업연도에 배분하여 적립하는 제도이다.

기업회계기준은 퇴직급여추계액의 100%까지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할 수 있으나 현행 법인세법은 이를 일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용인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손금산입한도액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이다.

손금한도액=MIN[①, ②]	
① 총급여액 기준(일반 한도) =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총급여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 제외) × 5%	
② 퇴직급여추계액 기준(누적 한도) = [Max(㉠ 퇴직급여추계액, ㉡보험수리적 가액 등) × 5% [㉢]] - 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 + 퇴직금전환금	

주) 다음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설정율은 다음과 같다.(2011년 개정)

기 간	설 정 율
2015.1.1~2015.12.31	5%
2016.1.1~2016.12.31	0%

이와 같이 누적한도가 매 사업연도마다 감소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추계액에 매 사업연도별 설정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법령 60③)

㉠ 총급여액³⁵⁾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35)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총급여액”은 중간정산 기준일 이후 새로이 기산하는 근로연수가 사업연도

급여의 총액과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의미하며 인정상여나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과 비과세소득 및 손금불산입된 인건비는 제외한다. 또한 2006.2.9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는 1년미만 근속자라 하더라도 퇴직 급여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의 총급여를 포함한다.

- ㉠ 퇴직급여추계액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 및 중도퇴사자를 제외함)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말한다.
- ㉡ 보험수리적 가액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1항 1호의 보험수리적 기준금액³⁶⁾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 ㉢ 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 = B/S상 전기말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기중 충당금 환입액 - 당기지급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충당금³⁷⁾ - 전기부인누계액(유보)
- ㉣ 퇴직전환금: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종료일 현재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입사일로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한 자의 총급여액을 포함하며 이 때 중간정산기준일 익일부터 발생한 총급여액으로 하는 것이다.

- 36)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3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법인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부담금을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불입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소멸된다. 따라서 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으로 지출한 퇴직연금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장래 근무기간에 대하여 설정되어 과거 근무기간에 대하여 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되기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 누계액 기준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회사계상액	
(-) 한도액	
(+)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유보)
(-)	한도미달액 세무조정 없음(∵ 결산조정항목이므로)

(3) 총당금의 상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당해 퇴직자의 퇴직급여충당금지분에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1년 미만 근무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총당금과 상계하거나 당기에 손비로 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 ①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비용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 xxx (유보)
- ② 비현실적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총당금과 상계한 경우
 익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 xxx (유보)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xxx(유보)
- ③ 퇴직금을 지급하고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유보잔액)과 상계한 경우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과다상계 xxx(유보)

2) [세무사랑2] 운영방법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주)한국세무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

1. (주)한국세무의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변	대	변
당기퇴직급여지급	70,000,000	전 기 이 월	100,000,000
차 기 이 월	170,000,000	당 기 설 정	140,000,000
계	240,000,000	계	240,000,000

※ 당기 퇴직급여지급액 중 5,000,000원은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되었다.

2. 당기말 재무제표상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자료와 그 임직원이 일시퇴직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합 계	1년이상근무자	1년미만근무자	중도퇴사자
총급여액 (상여포함)	550,000,000	400,000,000	100,000,000	50,000,000
퇴직급여추계액	170,000,000	120,000,000	50,000,000	0

단 1년 이상 근속자 급여 중 임원상여금이 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임원상여금은 회사내부의 지급규정이 없다.

3. 당기 퇴직금지급분은 정상적인 직원의 퇴직으로 발생한 것이다.
4.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은 1년 미만의 근무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5. 전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이 55,000,000원이 있다.

(해답 및 계산과정)

세 무 조 정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	50,000,000원	상여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131,500,000원	유보
손금산입	전기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20,000,000원	유보

※ 퇴직연금운용자산과 상계처리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1. 임원에 대한 상여금의 경우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결의 등에 의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지급규정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처분하게 된다.
2. 퇴직급여충당금은 세법상의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 함.

① 회사계상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 140,000,000

② 세법상의 한도액 = $\text{Min}(\text{㉠}, \text{㉡}) = 8,500,000$

㉠ 총급여액기준 = $(500,000,000 - 50,000,000) \times 5/100 = 22,500,000$

㉡ 추계액기준 = $170,000,000 \times 5\% - (100,000,000 - (70,000,000 - 5,000,000) - 55,000,000) = 8,500,000$

※ 총급여액 계산시 중도퇴사자의 총급여액과 손금불산입된 임원상여금도 제외한다. 또한 세무상 충당금 잔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전년도 부인누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추인하고 세무상 충당금 잔액을 0으로 보고 한도액을 계산한다.

- ③ 손금추인: 세무상 충당금 잔액의 절대값과 전년도말 부인누계액 중 적은 금액인 20,000,000원을 손금산입하고 유보감소로 소득처분한다.

④ 한도초과액 = ① - ② = 131,500,000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3019] > 정기 > wvip검색

F1 종료 F2 조정등록 F3 삭제 F4 전체삭제 F7 원장조회 F8 잔액조회 F9 인쇄 F10 설정률 F11 저장 F12 불러오기

1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계정과목명	17. 총급여액		18.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		19.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0503. 급여(제)		250,000,000				250,000,000
0602. 직원급여(관)		100,000,000		50,000,000		50,000,000
0801. 임원급여(관)		200,000,000		50,000,000		150,000,000
합계		550,000,000		100,000,000		450,000,000

2 퇴직금추계액명세서

20. 기말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권원의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	
인원	금액
	170,000,000
21. (근로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추계액	
22. 세법상 추계액 MAX(20, 21)	
	170,000,000

3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른 한도액	1.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19)의 계)	2. 설정률	3. 한도액 (① * ②)	비 고	
	450,000,000	5 / 100	22,500,000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도액	4. 장부상 총당금 기초잔액	5. 확정기여형퇴직연금자의 설정전기계상된퇴직급여충당금	6. 기중 총당금 환입액	7. 기중 총당금 부인누계액	8. 기중 퇴직금 지급액
	100,000,000			55,000,000	65,000,000
한도초과액 산	9. 차감액 (④ - ⑤ - ⑥ - ⑦ - ⑧)	10. 추계액 대비 설정액 ((22) * 5 / 100)	11. 퇴직금 전환금	12. 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을 제외하는금액 (MAX(③-⑩, 0))	13. 누적한도액 (⑧ - ③ + ⑪ + ⑫)
	-20,000,000	8,500,000			8,500,000
한도초과액 계	14. 한도액 (③과 ⑫ 중 적은 금액)	15. 회사 계산액	16. 한도초과액 ((15) - (14))		
	8,500,000	140,000,000	131,500,000		

- ※ [2. 총급여액]은 「F12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재무제표에 반영된 급여자료를 일괄 반영한 후 퇴직급여충당금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급여액을 「18.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란에 입력한다.
- ※ [8. 기중퇴직금지급액]란에는 당기 퇴직금지급액 중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입력한다.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을 납부하고 그 잔액이 남아 있다면 [11. 퇴직금전환금]란에 그 잔액을 입력하며 동 금액은 퇴직금 추계액기준한도액계산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 퇴직금 추계액기준 한도액계산시 세법상의 전기말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당기 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을 계산하는 과정으로서 동 잔액(9. 차감액)이 음수(△)인 경우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함.
- ※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과 손금추인액은 [조정등록]키를 통하여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한다.

5. 과목별세무조정-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1) 개념정리

(1) 퇴직보험

퇴직연금제도의 전면시행으로 인하여 2011년 1월1일 이후부터는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신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의 보험료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퇴직보험·신탁의 보험료·부금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하며 또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퇴직보험 보험료 또는 퇴직신탁 부금의 적립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령 부칙 제22577호 19조)

(2) 퇴직연금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44의2②, 법칙 23)

-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③ 은행법에 따른 은행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퇴직연금 등의 손금한도액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³⁸⁾의 손금산입

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기관에 납부한 보험료 등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보험료 등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보험료 등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규정을 적용하되,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보험료 등 중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보험료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법령 44의2③).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손금한도액은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퇴직연금운용자산 기말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는 바,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손금한도액 $= \text{MIN} [\text{①}, \text{②}] - \text{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text{㉒}}$	
①추계액기준=	$\left(\begin{array}{l} \text{당기말 현재} \\ \text{퇴직급여추계액}^{\text{㉑}} \end{array} - \begin{array}{l} \text{당기말 현재 세무상} \\ \text{퇴직급여충당금잔액} \end{array} \right) \begin{array}{l} \text{상당하는 연금에} \\ \text{대한 부담금} \end{array}$
②예치금기준=	당기말 현재 퇴직연금운용자산 잔액

㉑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이란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 제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금액을 말함.
- ② 보험수리적 가액 등³⁹⁾

3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말한다.

39) 보험수리적 가액 등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1항 1호의 보험수리적 기준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②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직전 사업연도종료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연금 등의 해약이나 임
일까지 불입한 부담 - 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금의 누계액 퇴직급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으로 전환된 금액

3) 퇴직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의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추후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연금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는 의무가 존재한다.

세법에서는 법인이 납부하는 부담금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 분	결산조정하는 경우	신고조정하는 경우
보담금 100 납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 ⁴⁰⁾ 100 현 금 100	퇴직연금운용자산 100 현 금 100
	퇴직연금급여(I/S) 100 퇴직연금충당금부채 100	(회계처리: 없음) 세무조정: 손금산입 100 유보
퇴직금 150 지급시 (퇴직연금 80 포함)	퇴직연금충당금부채 80 퇴직급여충당금부채 70 퇴직연금운용자산 80 현 금 70	퇴직급여충당금부채 150 퇴직연금운용자산 80 현 금 70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80 유보 익금산입 퇴직연금충당금 80 유보

법인이 퇴직연금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다음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 ① 퇴직연금부담금 수령 및 해약에 대한 세무조정 :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수령한 퇴직연금 및 일시금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채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

40)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금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 ② 퇴직급여충당금한도에 대한 세무조정
- ③ 퇴직연금부담금 납입에 대한 세무조정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의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전부 근로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인이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이 납부하는 부담금은 전액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에서도 제외한다.

구 분	회 계 처 리	세 무 조 정
연금부담금 납부시	퇴직급여 1,000 현 금 1,000	전액 손금인정되므로 세무조정 없음
퇴직시	회계처리 없음	세무조정 없음

[참고]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제도 46012-10347, 2001.03.26)

[질의]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1. 세무조정 방법
2. 위 세무조정을 다음과 같이 한 경우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⑦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하는지

$$\text{단체퇴직보험금} \times \times \times \text{익금(유보)} / \text{퇴직급여충당금} \times \times \times \text{손금(유보)}$$
3. 단체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상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란의 ③부인누계액은 당기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과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합계한 금액에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하는지 여부

[회신]

1.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후 사업연도에 단체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가산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 32호 서식]상 ⑦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같은조 규정의 단체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별지 제33호 서식]상 ③부인누계액은 당해사업연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50호 서식(을)]상 퇴직급여충당금의 ②기초잔액과 당해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위 손금가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는 것입니다.

(보충설명)

-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법인46012-498, 1997.02.17)
 - ※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가산하여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킨후 당해사업연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
 - => 즉, 신고조정으로 기 손금산입된 단체보험료를 수령시 익금산입(유보)하고, 과소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가산(유보)
- 이 경우 퇴직금 지급시 단체퇴직보험금부터 차감할 것을 결산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⑦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할 한도액을 줄이는 것이며
- 단체퇴직보험료등 조정명세서의 ③부인누계액은 당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에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가산하고, 그 금액에 기중에 손금에 가산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함으로써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과 회계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일치시킴.

4) [세무사랑2] 운영방법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퇴직연금부담금등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 ① 당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 170,000,000
- ② 기말 퇴직급여충당금: 170,000,000
- ③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로 부인된 금액: 166,500,000
- ④ 기말 퇴직연금예치금 잔액

기초 퇴직연금예치금	당기퇴직금지급분	기말 퇴직연금예치금
15,000,000	5,000,000	110,000,000
※ 기초 퇴직연금예치금은 전기에 손금산입 퇴직연금예치금 15,000,000 유보로 정상적으로 세무조정하였다.		

- ⑤ 회사는 예치금을 납입 및 수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납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00 / 현금 100,000,000
 수령시: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

(해답 및 계산과정)

세 무 조 정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익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지급)	5,000,000원	유보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연금과상계)	5,000,000원	유보
손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납입)	100,000,000원	유보

퇴직연금부담금의 경우 결산조정, 신고조정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결산조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신고조정으로 세무조정하고 유보로 처분함.

1. 손금한도액 = $\text{Min}[\text{①}, \text{②}] = 100,000,000$
 - ① 추계액기준 = $170,000,000 - (170,000,000 - 153,000,000) - 10,000,000$
 $= 143,000,000$
 - ② 예치금기준 = $110,000,000 - (15,000,000 - 5,000,000) = 100,000,000$
2. 회사계상액 = 0
3. 손금한도미달액 = $1 - 2 = 100,000,000$

퇴직연금부담금등조정명세서 [3020] > 정기 <<

종료 | 도움말 | 코드 | **조정등록** | 전월사제 | 원장조회 | 잔액조회 | 인쇄 | 저장 | 불러오기

2.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의 계산

1. 나.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등의 계산

19. 기초 퇴직연금예치금 등	20.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	21. 당기 퇴직연금예치금 등의 납입액	22. 퇴직연금예치금 등 계 (19 - 20 + 21)
15,000,000	5,000,000	100,000,000	110,000,000

2. 가.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 계산

13. 퇴직연금예치금 등 계 (22)	14. 기초퇴직연금총당금등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	15. 퇴직연금총당금등 손금부인 누계액	16. 기중퇴직연금등 수령 및 해약액	17.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등 (14 - 15 - 16)	18.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 (13 - 17)
110,000,000	15,000,000		5,000,000	10,000,000	100,000,000

1.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조정

1. 퇴직급여누계액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총당금				6. 퇴직부담금 등 손금산입 누적한도액 (① - ⑤)
	2. 장부상 기말잔액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자의 설정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총당금	4. 당기말 부인 누계액	5. 차감액 (② - ③ - ④)	
170,000,000	170,000,000		166,500,000	3,500,000	166,500,000
7.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 (17)	8. 손금산입액 한도액 (⑥ - ⑦)	9. 손금산입 대상 부담금 등 (18)	10. 손금산입범위액 (⑩과 ⑩중 적은 금액)	11. 회사 손금 계상액	12. 조정금액 (⑩ - ⑪)
10,000,000	156,5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 ※ [4. 당기말부인누계액]은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총당금 부인누계액을 의미하므로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먼저 퇴직급여총당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 [11. 회사손금계상액]은 결산조정사항으로서 당기 손익에 반영한 금액을 입력한다.
- ※ [12. 조정금액]은 신고조정사항으로서 (-)금액인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유보로 (+)금액인 경우에는 손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 ※ [20.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은 기초 퇴직연금예치금이 손금산입된 후 다시 회수되는 부분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또한 [수령 및 해약액]은 퇴직급여총당금조정명세서상 [8. 기중퇴직금지급액]의 감소로 처리한다.

퇴직연금예치금 수령시 회계처리에 따라 세무조정이 달라진다.

1. 퇴직급여 5,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익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 유보
2. 퇴직급여총당금 5,0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 유보
손금산입 퇴직급여총당금 5,000,000 유보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	유보감소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	유보감소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00	유보발생
합 계	5,000,000		합 계	105,000,000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손금산입 범위 미달액	100,000,000

※환경등록-조정등록방법 : 조정과목사용으로 설정됨

소득명세 1 당기 퇴직연금부담금 납입분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함

소득명세 2 퇴직연금운용자산과 상계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함

소득명세 2 당기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 퇴직연금예치금에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수동으로 직접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6. 과목별세무조정-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1) 개념정리

대손충당금은 채권의 대손으로 발생할 비용 또는 손실을 추정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말하며, 대손금이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법인이 외상매출금·받을 어음·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⁴¹⁾의 범위

- ① 외상매출금: 상품 및 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영업수익의 미수액
- ②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 ③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 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

(2)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채권범위

- ①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 ②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액에 대한 구상채권
- ③ 할인어음 배서양도한 어음
- ④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4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의 범위에 다음의 채권도 포함한다.

- ① 대손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손금에서 부인된 채권
- ②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미수금
- ③ 담보가 설정된 매출채권

(3) 손금산입 한도액

$$\text{손금산입한도액} = \frac{\text{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설정대상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text{대손율}} \times \text{대손율}$$

$$\text{대손율} = \text{Max}[\text{① 1\% (금융기관등은 2\%) ② 대손실적율}]$$

$$\frac{\text{설정대상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text{B/S상 장부가액합계액} \pm \text{채권관련 유보잔액}} = \text{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가액}$$

$$\text{대손실적률} = \frac{\text{당해 사업연도 대손금(요건충족분)⁴²⁾$$

(4)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대손충당금설정액 : B/S상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총액법에 의하므로)

(-) 한 도 액

(+) 한 도 초 과 액 : 손금불산입(유보) → 다음연도: 손금산입(유보)

(-) 한 도 미 달 액 : 세무조정 없음(결산조정사항이므로)

(5) 대손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결산조정이 원칙이나 신고조정도 가능하다.

- ①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②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③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④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42)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금은 대손충당금 상계액을 기초로 계산하되, 대손부인된 금액을 차감하고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된 대손금을 가산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결산조정이 원칙이며 신고조정은 불가능하다.

- ①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②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여기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⁴³⁾(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③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0만원 이하의 채권
-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6) 대손충당금의 상계와 환입

- ① 상 계: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은 실제 대손이 발생한 경우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 ② 환 입: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때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한 후의 잔액으로 한다.(총액법) 반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 잔액을 환입하지 않고 대손추산액에 미달하는 부분만을 추가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보충법⁴⁴⁾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43) 수표나 어음의 지급기일이란 수표나 어음의 만기일이후 2영업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44) 대손충당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보충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단순한 기표상의 차이로 보아 대손충당

(7) 대손금의 회수(상각채권추심이익)

기업회계는 전기에 대손처리한 매출채권이 당기에 회수된 경우에는 전기의 회계처리내용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현금 등 xxx (대) 대손충당금 xxx

① 전기에 손금산입한 매출채권의 경우⁴⁵⁾

법인세법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을 포함) 중 그 후 다시 회수된 때에는 그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익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고 동 대손충당금의 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되 장부상에 손금계상된 바가 없으므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유보)으로 처분한 다음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한도시부인계산을 한다.

② 전기에 손금부인된 매출채권의 경우⁴⁶⁾

법인세법에 따라 대손처리하였으나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회수된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 당기 세무조정은 당기의 대손충당금 증가금액은 손금산입(유보)하고 또한 동 금액을 대손충당금의 당기 계상액으로 보아 대손충당금에 대한 시부인

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다시 총액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45) 관련 해석사례는 다음과 같다.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같은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그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세무상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하는 경우 동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 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634, 2001.4.14)

46) 관련 해석사례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매출채권을 익금에 산입(유보)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후에 그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채권액이 회수되어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당해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익금불산입(△유보)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제34호 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④당기 계상액에 포함하여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11797, 2003.10.17)

계산을 한다.

2) [세무사랑2] 운영방법

다음 자료에 의하여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하시오.

1. 대손충당금 계정은 다음과 같다.

		기초 잔액	3,000,000
기말잔액	13,000,000	당기설정액	10,000,000

2. 설정대상채권은 다음과 같다.

외상매출금 300,000,000 받을어음 220,000,000

공사미수금 156,000,000 선 급 금 40,000,000

3. 부도어음 1,500,000원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12월 31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액은 무시한다.)

(차) 대손금 1,500,000 (대) 부도어음 1,500,000

4.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이 500,000원이 있다.

(해답 및 계산과정)

세 무 조 정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부도어음	1,000원	유보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5,839,990원	유보
손금 산입	전기대손충당금부인액	500,000원	유보

1. 당기 대손금으로 처리한 부도어음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결산조정으로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한다. 동 부도어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대손금으로서 손금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어음 수표의 각 매수당 1,000원은 비망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회사에는 전액 대손처리하였으므로 1,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리한다.

2. 설정대상채권 = 300,000,000 + 220,000,000 + 156,000,000 + 40,000,000 + 1,000 = 716,001,000

3. 한도액 = 716,001,000 × 1% = 7,160,010
4. 회사계상액 = 13,000,000
5. 한도초과액 = 4 - 3 = 5,839,990
6. 전기대손충당금 유보금액은 당기 대손충당금의 과다환입에 해당되어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한다.
이는 세법상으로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총액법을 기업회계에서는 보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The screenshot shows a tax reporting form with several tables. Red boxes highlight the following items:

- Table 1 (대손금조정):** Item 32, '부인액' (Disallowed amount), with a value of 1,000.
- Table 2 (채권잔액):** Item 18, '기말현재대손금부인누계액' (Cumulative disallowed amount for current period), with a value of 1,000.
- Table 3 (대손충당금조정):** Item 3, '한도액' (Limit amount), with a value of 7,160,010; Item 4, '당기계상액' (Current period increase), with a value of 10,000,000; Item 5, '보충액' (Supplement), with a value of 3,000,000; Item 6, '계' (Total), with a value of 13,000,000; Item 7, '한도초과액' (Excess over limit), with a value of 5,839,990.

Arrows indicate the flow of information: from the '부인액' in Table 1 to the '누계액' in Table 2, and from the '한도액', '당기계상액', and '보충액' in Table 3 to the '계' (Total) in Table 3.

- ※ 대손금에 대한 조정으로서 부도어음의 경우 어음 각 매수당 비망기록금액 (1,000원)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동 금액을 대손부인하고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며 동 대손부인채 권은 [18.기말현재 대손금 부인 누계액]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당기 대손충 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된다.
- ※ [12.충당금보충액]은 당기에 기업회계상 보충법으로 대손충당금 설정시 설 정전의 장부상 대손충당금 잔액을 의미하며 이는 회사계상액 중 [5.보충액] 에 자동반영되며 [6.계]의 금액은 재무상태표상의 대손충당금 기말잔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 ※ [10.충당금부인누계액]과 [13.환입할금액]은 서로 부호가 반대일 뿐 금액을 동일하며 전기충당금부인누계액에 대하여 환입 관련하여 자동으로 세무조정 이 발생하게 된다.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부도어음과수표	1,000	유보발생	전기대손충당금한도초과	500,000	유보감소
대손충당금한도초과	5,839,990	유보발생			
합 계	5,840,990		합 계	500,000	

소득명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대손금 부인액	1,000	대손충당금 과다환입액	500,000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5,839,990		

※환경등록-조정등록방법 : 조정과목사용으로 설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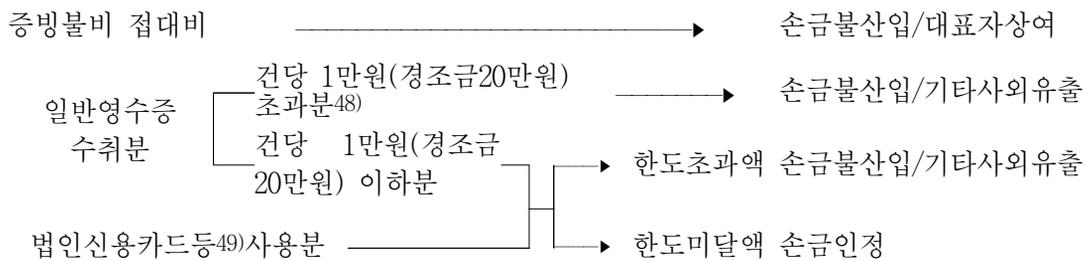
7. 과목별세무조정-접대비등 조정명세서

1) 개념정리

(1) 접대비의 개념

접대비란 접대비·교제비·사례금⁴⁷⁾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접대비의 과다지출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하여 접대비의 지출을 규제하고 있다.

[접대비에 대한 규제요약]



47) 사례금을 지급받는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사례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사례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사례금처럼 원천징수한 접대비의 경우 법인신용카드 등 사용분으로 인정된다.

48) 다음에 해당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건당 1만원 초과 영수증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① 적격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접대비. 여기서 국외지역이란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을 말한다.
- ②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사업상 증여)
- ③ 거래처와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의 포기액

49) 법인신용카드 등 사용분에는 법인신용카드, 법인세법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의미하며 종전에는 당해 법인의 접대비를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도 이를 당해 법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분”으로 인정하였으나, 2001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는 이를 당해 법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① 접대비로 보는 경우

- ㉠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그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손금으로 본다는 뜻)로 본다.
- ㉡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이 필요하며 지출하는 경비는 접대비로 본다.
- ㉢ 법인이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을 그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본다.
- ㉣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단 특수관계 여부에 불문하고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한다.

②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경우⁵⁰⁾

- ㉠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 법인이 광고 선전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0,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50)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하는 법인은 적격증빙서류와 접대목적 등을 기재한 서류를 보관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그 사용자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2008년 지출분까지만 적용하며 2009년 이후 지출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록 보관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① 신용카드 등 뒷면이나 당해 신용카드 등을 첩부하는 용지의 여백에 접대자, 접대상대방 및 접대목적을 기재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제출불필요)
- ② 신용카드등을 전산테이프, 디스켓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법인등과 같이 신용카드등 뒷면 등에 지출내역을 기록·보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한다.
- ㉕ 접대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시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2) 접대비의 평가와 손금귀속시기

법인이 현물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제공한 현물의 시가로 평가하며 동 현물 접대비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중 사업상증여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도 함께 판단하여야 한다.

접대비는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때에 손금으로 한다(발생주의 원칙). 따라서 미지급접대비도 당해연도 접대비로 보고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도 이를 접대비로 본다.

3) 신용카드 등 수취의무 면제 접대비

접대비로 지출된 다음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수취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동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 접대비로 보고 세무조정을 하면 된다.

- ① 거래처의 매출포기, 사전약정이 없거나 특정거래처에 대하여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채무의 대위변제 등 거래 실태상 금품 등의 지급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여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의제접대비(재경부 법인46012-155, 2000.10.16)
- ②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현물접대비)
- ③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제공한 접대비(법인46012-2301, 2000.11.27)
- ④ 적격증빙을 구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접대비
- ⑤ 농·어민⁵¹⁾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

51) 농어민이란 농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복합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

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접대비한도액

접대비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text{접대비 한도액} = \text{①} + \text{②}$$

① 1천2백만원(중소기업은 2천 4백만원) × 당해 사업연도 월수 / 12

② 수입금액 × 적용률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수입금액⁵²⁾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100으로 한다.

5) 문화접대비에 대한 특례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문화접대비⁵³⁾는 일반접대비의 한도액 외한다.

52) 수입금액 포함여부 판정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에 포함	수익금액에 포함 안 되는 금액	수입금액에서 차감
① 부산물 매각대 ②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① 간주입대료 ② 부가세법상 간주공급 ③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① 매출에누리와 환입액 ② 매출할인

53) 문화접대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각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 ① 문화예술킨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 ②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 ④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 ⑤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 ⑥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

에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조특법 136조)

$$\text{문화접대비손금한도액} = \text{일반접대비한도액} \times 10\%$$

6) 접대비에 대한 전표 입력시 주의사항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접대비는 위와 같이 여러 단계에 걸쳐 규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제내용을 살펴보면 회계기간 중 미리 정리하여야 접대비 세무조정시 정확하게 세무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전표 입력시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 ① 접대비 지출시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수취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표 입력시 적요를 「1 거래처접대비(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수정된 적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요의 코드번호가 「0」으로 변경어 접대비 세무조정과정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전액 손금불산입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② 거래처 경조사비, 해외거래처 접대비, 공연등 문화예술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반드시 전표 입력시 적요를 고정적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하여야 접대비 세무조정과정에서 정확하게 반영된다.

적요NO		현금적요	구분	고정적요
2	일반 국내접대비	현금	1	신용카드등 사용 일반접대비
4	해외접대비	현금	3	신용카드등 사용 해외접대비
6	일반경조사비	현금	5	신용카드등 사용 경조사비
		현금	7	신용카드등 사용 문화,예술접대비
		현금	10	거래처에 현물접대
		현금	11	증빙불비접대
		현금	12	개인적인 용도의 업무무관비용
		대체	1	신용카드등 사용 일반접대비
		대체	3	신용카드등 사용 해외접대비
		대체	5	신용카드등 사용 경조사비
		대체	7	신용카드등 사용 문화,예술접대비
		대체	10	거래처에 현물접대
		대체	11	증빙불비접대
		대체	12	개인적인 용도의 업무무관비용

특히 고정적요가 아닌 「6 일반경조사비」도 경조사비 지출금액 20만원기준으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고정적요와 동일하다. 따라서 접대비와 관련된 전표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된 적요만 사용하여야 정확한 세무조정이

권의 구입

- ⑦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절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
- ⑧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 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이루어진다.

적요 입력시 적요코드번호를 적대비등 조정명세서 작성을 대비하여 정확하게 분류하여 입력한다.

1	신용카드등 사용 일반접대비	6	일반경조사비
2	일반 국내접대비	7	신용카드등 사용 문화,예술평대비
3	신용카드등 사용 해외접대비	9	일반문화, 예술평대비
4	해외접대비	10	거래처에 현물접대
5	신용카드등 사용 경조사비	11	증빙불비접대

7) [세무사랑2] 운영방법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접대비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세무조정을 하시오.

1. 결산서에 포함된 접대비는 다음과 같다.

계 정 과 목	금 액
제 조 경 비	7,147,000
도 급 경 비	13,853,000
판매비와 관리비	18,729,000

2. 제조경비에 포함된 접대비 중 1,500,000원은 개인카드로 사용한 것이며 기타의 접대비는 전액 법인카드로 사용하였다.
3.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된 접대비 중 거래처 경조사비는 1,250,000원이며 지출 별로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500,000원이다.
4. 도급경비에 포함된 접대비 중 3,000,000원은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
5. 수입금액은 3,240,366,000원이며 이 중 특수관계자간 수입금액 5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6. 중소기업이다.

(해답 및 계산과정)

세 무 조 정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접대비(신용카드등 미사용분)	2,000,000원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초과액	5,190,195원	기타사외유출

1.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된 1만원초과 접대비 중 개인카드로 사용한 법인접 대비와 지출건별로 20만원초과하는 거래처 경조시비는 법인카드등 미사용분 에 해당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2. 회사계상접대비 = 39,729,000 - 1,500,000 - 500,000 = 37,729,000
3. 일반접대비 한도액 = ① + ② = 29,580,732
 ① 24,000,000 × 12/12 = 24,000,000
 ② (3,240,366,000 - 500,000,000) × 20/10,000 + 500,000,000 × 20/10,000 × 10% = 5,580,732
4. 문화접대비 한도액 = 29,580,732 × 10% = 2,958,073
5. 접대비 한도액 = 3 + 4 = 32,538,805
6. 접대비 한도초과액 = 2 - 5 = 5,190,195

1. 접대비 입력 (총)		2. 접대비 조정 (합)			
1. 수입금액명세					
구 분	① 일반수입금액	② 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	③ 합 계(①+②)		
금 액	2,740,366,000	500,000,000	3,240,366,000		
2. 접대비 해당금액					
계정과목	합계	접대비(판관)	접대비(도급)	접대비(제조)	
④ 계정금액	39,729,000	18,729,000	13,853,000	7,147,000	
⑤ 접대비계상액 중 사적사용경비					
⑦ 접대비해당금액(④-⑤)	39,729,000	18,729,000	13,853,000	7,147,000	
⑧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경조사비 중 초과액	500,000	500,000		
	국외지역 지출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	500,000	500,000		
	농어민 지출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접대비 중 기준금액	1,500,000	1,500,000		
	(16) 총 초과금액	38,479,000	17,479,000	13,853,000	7,147,000
(17)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2,000,000	2,000,000			
(18) 접대비 부인액(⑧+(17))	2,000,000	2,000,000			

※ [1. 수입금액명세]상의 수입금액 합계액은 [F12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의 [③ 결산서상 수입금액]이 반영되어야 한다.

※ 본 서식의 경우 접대비를 일반전표에 입력할 때 적요내용과 관련하여 적요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조정명세서가 정확하게 작성이 된다. 특히 법인신용카드

사용접대비, 경조사비지출접대비 등은 반드시 정해진 적요코드를 사용하여야 불이익이 없다.

만약 이를 적요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요코드가 「0」으로 변경되어 조정명세서상 접대비가 손금불산입처리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서식의 경우 일반전표 및 매입매출전표에 입력된 내용을 그대로 [불러오기]기능을 통하여 작성하므로 기중 접대비에 대한 회계처리시 주의하여야 한다.

1.접대비 입력 (올)		2.접대비 조정 (감)	
3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정부출자법인	
구분		금액	
① 접대비 해당 금액		39,729,000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2,000,000	
③ 차감 접대비 해당금액(①-②)		37,729,000	
일반	④ 12,000,000 (중소기업 24,000,000) X 월수(12) / 12	24,000,000	
	총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 X 20/10,000	6,480,732
	기준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X 10/10,000	
	기준	500억원 초과 금액 X 3/10,000	
⑤ 소계		6,480,732	
접대비	일반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 X 20/10,000	5,480,732
	기준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X 10/10,000	
⑥ 소계		5,480,732	
한도	⑦ 수입금액기준	(③-⑥) X 10/100	100,000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 (④+⑥+⑦)	29,580,732	
문화접대비 한도 (「조특법」 제136조제3항)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	3,000,000	
	⑩ 문화접대비 한도액(⑨와 (⑧ X 10/100) 중 작은 금액)	2,958,073	
⑪ 접대비 한도액 합계(⑧+⑩)		32,538,805	
⑫ 한도초과액(③-⑪)		5,190,195	
⑬ 손금불산입한도 내 접대비 지출액(⑫과⑭ 중 작은 금액)		32,538,805	

※ 중소기업판정내용은 [기초정보관리-회사등록-기본사항-15.중소기업여부]에서 중소기업여부를 구분하며 이는 「중소기업기준검토표」에 의하여 판정한다.

조정 등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신용카드등미사용액	2,000,000	기타사외유출	
접대비한도초과	5,190,195	기타사외유출	
합 계	7,190,195	합 계	
소득명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접대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	2,000,000		
접대비 한도 초과액	5,190,195		
※환경등록-조정등록방법 : 조정과목사용으로 설정됨			
[손익조정]		[직접입력]	
[계정코드도움(F2)]		[조정코드도움(F4)]	
[삭제(F5)]		[종료(ESC)]	

하여야 한다.

- ① 신설법인과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설립일 또는 수익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 ②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4) 평가방법의 무신고 및 임의변경시 평가방법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를 하는 무신고의 경우와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변경신고기한 후에 신고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임의변경의 경우 각각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무신고시	임의변경
일반적인 재고자산	선입선출법	Max [①, ②] ① 무신고시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②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매매목적용 부동산	개 별 법	
유 가 증 권	총 평 균 법	

5) 세무조정

(1) 재고자산평가

구 분	당 기	차 기
세법상 평가액 > 장부 평가액	손금불산입 재고자산평가감(유보)	손금산입 전기 재고자산평가감(유보)
세법상 평가액 < 장부 평가액	손금산입 재고자산평가증(유보)	손금불산입 전기 재고자산평가증(유보)

당기 세무조정사항이 차기에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바로 반영되는 이유는 당기의 기말재고자산이 차기에 기초재고자산이고 차기에 전부 판매되었다고 보아 관련 자산이 소멸되었으므로 그와 관련된 유보잔액도 소멸하는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2) 유가증권 평가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기업회계는 당기말 공정가액(시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자본 항목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회계에 따라 인식한 평가손익에 대하여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① 단기매매증권평가에 대한 세무조정

구	분	세 무 조 정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계상시	익금불산입 유가증권 xxx (유보)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계상시	손금불산입 유가증권 xxx (유보)

② 매도가능증권평가에 대한 세무조정(「기타포괄손익누계액」 계상)

구	분	세 무 조 정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계상시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xxx(기타)
		손금산입 매도가능증권 xxx(유보)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계상시	손금산입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xxx(기타)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 xxx(유보)

5) 파손 부패 등에 따른 평가손실

재고자산의 파손 부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6) [세무사랑2] 운영방법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

1. 재고자산과 관련된 전기 유보잔액은 재고자산평가증 5,000,000원이 손금산입되었다.
2.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과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말평가금액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금액	평가방법
상 품	153,900,000	155,900,000	이동평균법
원 재 료	26,000,000	27,000,000	후입선출법
제 품	48,004,000	49,000,000	이동평균법

3. 상품 및 제품의 평가방법은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하였으며 나머지는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고 상장주식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다. 세법상 평가방법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구 분	취득가액	시 가
단기매매증권	10,000,000	15,000,000
매도가능증권	20,000,000	18,000,000

(해답 및 계산과정)

세 무 조 정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전기재고자산평가증	5,000,000원	유보
손금불산입	재고자산평가감	1,000,000원	유보
손금산입	단기매매증권평가증	5,000,000원	유보
손금산입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000,000원	기타
손금불산입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2,000,000원	유보

1. 전기재고자산평가증으로 인한 유보잔액은 당기 매출원가계산시 기초재고자

산의 평가금액의 과대로 인하여 매출원가의 과대계상되어 당기순이익을 과소 계상하게 된다. 따라서 전기재고자산평가증과 관련된 유보잔액을 손금불산입 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2. 기업회계에 따라 인식한 평가손익에 대하여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이 동시에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영향이 없어 세무조정을 생략할 수도 있지만 소득 처분이 기타와 유보로 달리 적용되므로 반드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즉, 유보에 대한 세무조정이 수반되어야 세무상의 자산가액 및 세무상 자본이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다.

구 분	차 변	대 변
장부상 분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2,000,000	매도가능증권 2,000,000
TAX상 분개	분개없음	
조정분개	매도가능증권 2,00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2,000,000
조정수정분개	① 이익감소 2,000,000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2,000,000 ② 매도가능증권 2,000,000 / 이익 증가 2,000,000	
세무조정	① 자본의 증가로 이익이 감소하였으므로 손금산입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2,000,000(기타) ② 자산의 증가로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 2,000,000(유보)	

구 분	차 변	대 변
장부상 분개	단기매매증권 5,000,000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5,000,000
TAX상 분개	분개없음	
조정분개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5,000,000	단기매매증권 5,000,000
세무조정	단기매매증권 자산의 감소로 순이익이 감소하였음. 익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3,459,000(유보)	

3. 당기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한 세무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결산서상 가액	세법상 평가액	차액	세무조정
상품	153,900,000	153,900,000	0	손금불산입
원재료	26,000,000	27,000,000	△1,000,000	
제품	48,004,000	48,004,000	0	
단기매매증권	15,000,000	10,000,000	5,000,000	익금불산입
매도가증권	18,000,000	20,000,000	△2,000,000	손금산입/손금불산입

【3023】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1. 재고자산 평가방법 검토

4. 자산별	2. 신고일	3. 신고방법	4. 평가방법	5. 격부	6. 비교
제품 및 상품					
반제품및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유가증권(채권)					
유가증권(기타)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2. 평가조정 계산

7. 과목	8. 품명	9. 규격	10. 단위	11. 수량	회사계산(장부가)		14. 단가	세법상
					12. 단가	13. 금액		
1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계								

【3023】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1. 재고자산 평가방법 검토

4. 자산별	2. 신고일	3. 신고방법	4. 평가방법	5. 격부	6. 비교
제품 및 상품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	○	
반제품및재공품					
원재료		무신고	후입선출법	×	
저장품					
유가증권(채권)					
유가증권(기타)		무신고	기타	×	

2. 평가조정 계산

7. 과목	8. 품명	9. 규격	10. 단위	11. 수량	회사계산(장부가)		조정계산금액		18. 조정액	
					12. 단가	13. 금액	14. 단가	15. 금액		16. 단가
1	0146 상품					153,900,000		153,900,000		
2	0153 원재료					26,000,000			27,000,000	1,000,000
3	0150 제품					48,004,000		48,004,000		
4	0107 단기매매증권					15,000,000			10,000,000	-5,000,000
5	0178 매도가증권					18,000,000			20,000,000	2,000,000
6										
계						260,904,000		201,904,000	57,000,000	-2,000,000

※ [18.조정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을 구분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전기제품평가증	5,000,000	유보감소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5,000,000	유보발생
매도가능증권(손실)	2,000,000	유보발생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000,000	기타
재고자산평가감	1,000,000	유보발생			
합 계	8,000,000		합 계	7,000,000	

소득명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재고자산평가증	2,000,000

※환경등록-조정등록방법 : 조정과목사용으로 설정됨

9. 과목별세무조정-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

1) 외환차손익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 기장액의 차이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76⑤).

2)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외화환산손익)

(1) 평가대상

법인세법상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화폐가치의 변동과 관계없이 자산, 부채의 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 및 부채이다. 다만, 유가증권과 같이 화폐성, 비화폐성의 양면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는 자산, 부채의 보유상의 목적 또는 성질에 따라 구분된다.

구 분	화 폐 성	비 화 폐 성
자 산	현금및현금성자산, 예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보증금등	선급금, 재고자산, 고정자산, 투자유가증권 등
부 채	당좌차월, 차입금,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사채(전환사채 제외) 등	선수금, 예수금, 선수수익, 전환사채 등

②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⁵⁴⁾(이하 ‘환위험회피용통화

54)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통화선도: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도 하기로 하는 거래
2. 통화스왑: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선도등' 이라 한다)

(2) 평가방법 및 적용환율

가. 금융회사 이외의 법인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②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①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 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 등' 이라 한다)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 ②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나. 평가방법 신고기한

법인이 보유한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그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와 함께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속적용과 변경

금융회사 등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선도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환변동보험: 「무역보험법」 제3조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 방식의 보험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과 결합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3) 평가손익의 처리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이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3)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특례(부칙16)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최초로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취득한(통화선도·통화스왑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및 통화선도·통화스왑에 대하여 신고한 평가방법을 최초로 적용할 때 원화기장액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4) [세무사랑2] 운영방법

다음 자료에 의하여 외화평가차손익(갑·을)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1. 회사보유 외화자산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외화금액	장부상금액	기말 평가금액	평가차손익
외 화 예 금	\$34,000	40,800,000	43,000,000	2,200,000
외화장기차입금	\$100,000	110,000,000	120,000,000	(10,000,000)

2. 당해 사업연도 말일의 환율은 다음과 같다.

대고객환매입율	1,295원
기 준 환 율	1,250원

3.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외화자산 부채를 평가하였으며 직전사업연도 3월 31일 매매기준율에 의한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해답 및 계산과정)

세 무 조 정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익금불산입	외화예금	500,000원	유보
손금산입	외화장기차입금	5,000,000원	유보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손익은 매매기준율에 의한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평가손익을 인식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회사는 이미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평가손익을 평가하여 관련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3029]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외화자산, 부채의평가(출지) 통화선도, 스왑, 환변동보험의평가(출지) 환율조정차, 대등(갑지)

②외화종류(자산)	③외화금액	④장부가액		⑦평가금액		⑩평가손익 자 산(⑧-⑥)
		⑤적용환율	⑥원화금액	⑤적용환율	⑧원화금액	
1 USD	34,000	1,200	40,800,000	1,250	42,500,000	1,700,000
2						
합 계	34,000		40,800,000		42,500,000	1,700,000

②외화종류(부채)	③외화금액	④장부가액		⑦평가금액		⑩평가손익 부 채(⑧-⑥)
		⑤적용환율	⑥원화금액	⑤적용환율	⑧원화금액	
1 USD	100,000	1,100	110,000,000	1,250	125,000,000	-15,000,000
2						
합 계	100,000		110,000,000		125,000,000	-15,000,000

※ [④장부가액]은 기말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손익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

※ [⑦평가금액]은 회사가 법인세법에 따라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시 제출한 방법에 의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계산한다.

【3029】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①종료 ②도움 ③코드 ④조정등록 ⑤삭제 ⑥전체삭제 ⑦인쇄 ⑧저장

외화자산, 부채의평가(을지) | 통화선도, 스왑, 환변동보험의평가(을지) | 환율조정차, 대등(갑지)

차손익 구분 (외화자산, 부채명)	⑦구분 (외화자산, 부채명)	⑧최종 상환기일	⑨전기이월액	⑩당기경과일수/잔존일수 발생일자 경과일수 잔존일수	⑪손익금 해당액(⑧×⑩)	⑫차기 이월액(⑧-⑩)	비고
1	1: 차익 2: 차손						
합계	차익 차손						

①구분	②당기손익금 해당액	③회사손익금 계상액	조정		⑥손익조정금액 (②-③)
			④차익조정(②-③)	⑤차손조정(③-②)	
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평가손익	-13,300,000	-7,800,000			-5,500,000
나. 통화선도, 통화스왑, 환변동보험 평가손익					
다. 환율조정 계정손익	차익 차손				
계	-13,300,000	-7,800,000			-5,500,000

※ [③회사손익금계상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가손익금액을 기록하고 동 금액과 법인세법상의 평가손익과 비교하여 [⑥손익조정금액]을 [조정등록]을 통하여 세무조정을 마무리한다.

조정 등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외화예금	500,000	유보발생
			외화장기차입금	5,000,000	유보발생
합 계			합 계	5,500,000	

소득명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평가손익	5,500,000

※환경등록-조정등록방법: 조정과목사용으로 설정됨

손익조정 직접입력 계정코드도움(F2) 조정코드도움(F4) 삭제(F5) 종료(ESC)

※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세무조정은 외화자산별로 별도로 세무조정하여야 개별 자산별 유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

10. 과목별세무조정-세금공과금명세서

1) 개념정리

제세공과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손금에 해당한다. 이 제세공과금 중 조세는 종류에 따라 재산세 등과 같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도 있고 법인세 등과 같이 손금에 불산입되는 것이 있다.

또 공과금은 ①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 ② 법령상 의무불이행,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 아닐 것이란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으로 용인한다.

(1) 손금용인 제세공과금

- 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
- ② 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하역요금 외에 부두근로자(일용노동자)의 퇴직금의 재원을 목적으로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금액
- ③ 성실보고회원 조합원이 동 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
- ④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출대금 네고(Nego)시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출부담금
- 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 ⑥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 ⑦ 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는 동 주식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2) 손금불산입되는 조세 및 공과금

- ①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와 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세액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⁵⁵⁾

5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 ②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③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④ 법령에 의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임의출연금 등
- ⑤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부과되는 공과금 (예: 폐수부담금)
- ⑥ 대기오염물질초과배출부담금
- ⑦ 산재보험료의 가산금: 확정보험료의 보고불이행에 따라 부과되는 벌과금
- ⑧ 교통위반과태료
- ⑨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 ⑩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벌과금
- ⑪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 ⑫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 ⑬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 ⑭ 내국법인이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제1호와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초과액과 이월공제 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다.
- ⑮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⑯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 등(다만, 출자법인이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해산한 법인의 법인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경우에는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 분	매입세액의 내용	회계처리
면세사업자	자본적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	부대비용
	수익적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	손금산입
과세사업자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분(공제)	손익과 무관
	의제매입세액(공제분)	취득가액 차감
	의제매입세액(불공제분)	부대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부대비용
	접대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접대비 등
	세금계산서의 미수취 또는 미제출한 매입세액	손금불산입

(3) 손금으로 인정되는 벌금과 과태료

- ①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는 지체상금
- ② 국외에서 외국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가액 또는 추징금
- ③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 ④ 철도회사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 ⑤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단순한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에 해당
- ⑥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 ⑦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2) [세무사랑2] 운영방법

(주)한국세무의 결산서상 세금과공과금계정, 잡손실계정 및 법인세등 계정내역을 참고하여 세금과공과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하시오.

잡손실계정			세금과공과금계정		
일 자	적 요	금 액	일 자	적 요	금 액
4/6	불법건출물과태료	30,000	1/8	산업기술진흥협회비	100,000
6/9	전기요금연체료	40,000	2/11	기술진흥협회비	100,000
9/7	관세법위반벌과금	20,000	5/20	법인소득할지방소득세	250,000
9/27	교통위반벌과금	20,000	7/25	국민연금회사부담금	7,000,000
12/31	법인세등	17,451,760			

(해답 및 계산과정)

세 무 조 정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법인세등	17,451,760원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잡손실	70,000원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세금과공과금	100,000원	기타사외유출

법인세법상의 손금불산입항목에는 법인세등과 벌금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있는 교통위반벌과금 등은 손금불산입되는 대표적인 벌금, 과태료에 해당하며 기타사외유

출로 소득처분한다.

[3024] 세금과공과금명세서

☐ 종료 ☐ 다음 ☐ 코드 ☐ 조정등록 ☐ **F4과목추가** ☐ 삭제 ☐ 전체삭제 ☐ 불산입만표기 ☐ 원장조회 ☐ 인쇄 ☐ 저장 ☐ 불러오기

코드	계정과목	월	일	거래내용	코드	지급처	금액	손금불산입표시
0817	세금과공과금	1	8	협회및조합비 납부		산업기술진흥협회	100,000	
0817	세금과공과금	2	11	협회및조합비 납부		산업기술진흥협회	100,000	
0990	잡손실	4	6	불법건축물과태료		강남구청	30,000	손금불산입
0817	세금과공과금	5	20	법인소득할지방소득세		서초구청	250,000	손금불산입
0990	잡손실	6	9	전기요금연체료		한국전력공사	40,000	
0817	세금과공과금	7	25	국민연금회사부담금		국민연금공단	7,000,000	
0990	잡손실	9	7	교통위반벌과금		서울지방경찰청	20,000	손금불산입
0990	잡손실	9	27	관세법위반벌과금		관세청	20,000	손금불산입
0998	법인세등	12	31	당기법인세등		강남세무서	17,451,760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계							17,771,760	
합계							25,011,760	

※ [F4과목추가]기능을 이용하여 「세금과공과금명세서」에 불러올 계정과목을 추가로 계정등록할 수 있다. 예제에서 제시한 「잡손실」계정이나 「법인세비용」계정 등을 설정하여 [불러오기]기능을 통하여 동시에 불러올 수 있다.

계정등록

코드	계정과목	참고
0517	세금과공과금	제조원가
0617	세금과공과금	도급원가
0667	세금과공과금	보관원가
0717	세금과공과금	분양원가
0767	세금과공과금	운송원가
0817	세금과공과금	판매관리비
0990	잡손실	
0998	법인세등	

조정 등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세금과공과금	250,000	기타사외유출			
잡손실	70,000	기타사외유출			
법인세등	17,451,760	기타사외유출			
합계	17,771,760				

소득명세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손금불산입액	250,000		

※환경등록-조정등록방법: 조정과목사용으로 설정됨

※ 관련 세무조정은 계정별로 별도로 하는 것이 관리하기 편리하다.

11. 과목별세무조정-선급비용명세서

1) 개념정리

법인에서 발생한 보험료 등과 같은 일부 손금항목들은 일정기간동안 비용의 발생효과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비용의 발생효과가 2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다면 당해 비용의 효과가 미치는 사업연도별로 안분하여 인식하는 것이 법인세법이나 기업회계의 입장이다.

비용의 발생효과가 2사업연도이상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은 이자비용·보험료·임차료 등이 있다. 법인에서 이런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차기이후에 인식하여야 할 선급비용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text{선급비용} = \text{지급금액} \times \frac{\text{선급일수(미경과일수)}}{\text{총일수}}$$

총일수 계산함에 있어 보험료의 경우는 초일산입 말일산입하고 이자비용과 임차료 등은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으로 계산한다.

2) [세무사랑2] 운영방법

(주)한국세무의 결산서상 반영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선급비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

7월 1일 (차) 선급보험료 15,000,000 / (대) 현금 15,000,000

11월 1일 (차) 보험료(판) 6,000,000 / (대) 현금 6,000,000

12월 31일 보험료와 관련된 결산분개는 없음

자동차보험기간은 당해사업연도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1일까지이며 화재보험은 7월1일부터 익년 6월30일까지 이다.

(해답 및 계산과정)

세 무 조 정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선급비용(보험료)	5,000,000원	유보
손금산입	선급보험료	7,540,984원	유보

선급비용의 경우 기업회계나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는 기간별로 안분하여 인식한다. 따라서 보험료 지출시 전액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기간경과분에 대하여 보험료로 비용계상되어야 하므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그러나 보험료 지출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고 기말 결산시 기간미경과분에 대한 회계처리가 없을 경우 기간 미경과분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급비용은 회사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세무조정이 달라진다.

계정구분	거래내용	거래처	대상기간		지급액	선급비용	회사계상액	조정대상금액
			시작일	종료일				
선급 보험료	공장건물화재보험 삼성화재		2015-07-01	2016-06-30	15,000,000	7,459,016	15,000,000	-7,540,984
선급 보험료	자동차보험료 납. 동서화재		2015-11-01	2016-10-31	6,000,000	5,000,000		5,000,000
합 계					21,000,000	12,459,016	15,000,000	-2,540,984

※ 「F12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회계자료가 반영되면 추가로 「대상기간」과 「지급액」 및 「회사계상액」을 직접 입력하면 세무조정대상금액이 산출되며 관련 세무조정을 진행하면 된다.

※ 「회사계상액」이란 법인이 장부상에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의미한다.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명	계정구분등록 코드	구분등록명	기간계산원칙	금액반영
0821	보험료	2	선급 보험료	양편산입	지급액
0133	선급비용	2	선급 보험료	양편산입	선급비용

※ [F12 불러오기]기능을 통하여 선급비용의 지출시 회계처리내용을 등록하여 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다. [계정과목]란에는 선급비용명세서 작성 대상 지출관련 계정과목을 선택하고 「금액반영」란에는 계정과목이 자산계정인 경우 「선급비용」을 선택하고 비용계정과목이 경우 「지급액」을 선택한다.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보험료과대계상	5,000,000	유보발생	선급비용(보험료)과대계상	7,540,984	유보발생
합 계	5,000,000		합 계	7,540,984	

소득명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선급비용 과대계상	2,540,984

※환경등록-조정등록방법 : 조정과목사용으로 설정됨

12. 과목별세무조정-업무무관지급이자조정명세서

1) 개념정리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한다. 현행 세법상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인 배당은 손금불산입하고 타인자본에 대한 비용인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어 기업이 차입금에 의한 자본조달을 선호하도록 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법인이 차입금을 특정용도에 사용하거나 비생산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 등은 손금불산입하여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부인근거	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
①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비공식 금융의 양성화	해당 이자	대표자상여 ⁵⁶⁾
②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	금융실명거래		유보
③ 건설자금이자	이자 자본화		기타사외유출
④ 업무무관자산지급이자	자금의 비생산적 이용	지급이자×일정비율	기타사외유출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채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는 가공채무를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함과 동시에 지하자본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손금불산입액은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①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⁵⁷⁾
- ②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차입금
- ③ 채권자와의 금전거래 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56) 원천징수세액(38.5%)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57) 거래일 현재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자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은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이자에는 예외로 한다.

(2) 수령자 불분명 채권 또는 증권 이자와 할인액

채권·증권을 발행한 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는 채권 등의 발행법인이 채권 등의 소지자에게 직접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실명확인을 강제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 손금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의 경우와 동일하다.

(3)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내용 참조

(4)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가. 개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나 가지급금 및 동산(서화·골동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급한 이자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text{손금불산입액} = \text{지급이자}^{58)} \times \frac{\text{업무무관자산적수} + \text{가지급금적수}}{\text{총차입금적수}^{59)}$$

또 이에 대한 관리유지비도 손금불산입한다. 이는 법인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

나. 규제대상 자산의 범위

업무무관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58) 선순위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제외한다.

59) ‘일정비율’이란 총차입금적수에서 규제대상 자산적수(또는 부채적수)의 비율을 말한다.

업무무관자산	범 위
부 동 산	㉠ 부동산 취득 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⁶⁰⁾ ㉡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⁶¹⁾
동 산	㉠ 서화·골동품 ⁶²⁾ ㉡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 위와 유사한 자산으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
가지급금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가지급금등 인정이자조정명세서]상의 가지급금과 동일하다.

다.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범위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지급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외대상 지급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지급이자 ·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 융통어음할인료 · 금융리스료에 포함된 지급이자 · 전환사채 지급이자 · 수출금융명목의 지급이자 · 채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급이자 ·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 · 상업어음할인료 · 지급보증수수료 ·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 연지급수입이자 · 운용리스조건 리스료의 지급이자 · Usance이자 및 D/A이자

라. 총차입금 적수의 계산

총차입금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로서 매일 잔액에 의한 적수로 계산하여야 하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이자율별로

60) 유예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유예기간은 ① 건축물은 5년 ② 부동산매매업은 5년 ③ 그 외는 3년이다.

6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62) 장식·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에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것을 제외한다.

계산할 수 있다.

$$\text{이자율별 차입금의 적수} = \text{이자율별 지급이자} \times \frac{365(366)}{\text{연이자율}}$$

13. 과목별세무조정-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1) 가지급금의 범위

(1) 가지급금의 개념

가지급금⁶³⁾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법인이 금전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 실제 수령하기로 한 금액과 의 차액을 말하며 그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고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text{인정이자} = \text{가지급금등의 적수} \times \text{인정이자율} \times \frac{1}{365(366)} - \text{실제 수령하기로 한 이자}$$

(2) 가지급금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금전의 대여액에 대하여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① 사용인 등의 미지급소득(배당소득,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 ②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급료·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한 금액
- ③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대여한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자금
- ④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63) 가지급금의 사례

- ① 비현실적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시 당해 퇴직급여
- ② 회사가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로서 동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써 회수 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 ⑤ 사용인에 대한 급료의 가불액
- ⑥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액
- ⑦ 사용인(사용인의 자녀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 ⑧ 귀속자가 불분명하거나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 결정할 때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2) 인정이자율 및 적수

(1)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

$$\text{가중평균 차입이자율} = \frac{\left(\begin{array}{l} \text{자금대여시점의} \\ \text{각각의 차입금 잔액} \end{array} \times \begin{array}{l} \text{차입당시의} \\ \text{각각의 이자율} \end{array} \right) \text{의 합계액}}{\text{자금대여시점의 차입금 잔액의 총액}}$$

위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의 차입금은 제외하고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 ②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예외 : 당좌대출이자율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 ㉡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②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③ 해당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3) 적 수

- ① 가지급금은 잔액으로 남아 있는 매일 매일의 금액의 누적합계액(적수)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이때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한다(재법인 46012-99).
- ②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상계 후 잔액에 대하여 인정이자율 계산을 한다. 다만, 상환기간, 이자율 등의 사전약정이 있어 이를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 ③ 거래횟수가 빈번한 차입금에 직접 적수계산을 할 수 없으므로 이자비용으로 역산한다.

$$\text{이자율별 차입금의 적수} = \text{이자율별 지급이자} \div \text{연이자율} \times 365$$

3) 세무조정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실제 수입이자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익금산입(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등)한다.

또한 가지급금 및 관련 이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산입(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등)한다.

-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에 따라 익금

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㉔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비교]

구 분	가지급금인정이자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근거	· 부당행위 계산부인	· 자금의 비생산적 사용에 대한 규제
이자수령 여부	· 이자수령부분을 감안함. · 인정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을 익금산입	· 이자수령한 것과 무관함. · 이자를 수령하여도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적용
이자비용 여부	· 이자비용존재여부와 무관함	· 이자비용이 존재하여야 손금불산입 가능
가지급금 집계	· 개인별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비교하여 집계	· 법인 전체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일자별로 집계

14. 과목별세무조정-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1) 개념정리

건설자금이자⁶⁴)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및 건설에 소요된 것이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며 건설준공일까지 계산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자본적지출로서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1)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기존고정자산의 증설 및 개량을 포함한다)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상가·아파트 등의 재고자산과 관련 건설자금이자는 발생 즉시 당기 손금으로 인식한다.

(2) 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

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강제사항)

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계상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 ②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

64)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의 건설자금이자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이자계산대상 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재고자산(장기간인 것만 해당)
- ② 차입금의 용도: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뿐만 아니라 불분명한 차입금도 포함한다.
- ③ 비용계상여부: 건설자금이자는 당기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기공사의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 ③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도 이를 손금으로 한다.
- ④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 등의 준공일은 해당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3)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상기간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 등을 개시한 날부터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까지 계산하며,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바,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라 함은 공장 등의 건설에 착공한 날 또는 해당 사업용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말한다(법기통 28-52...1).

②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다.

③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개시일까지 건

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4)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세무처리

일반차입금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 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차입금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 중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뺀 금액(이하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이라 한다)은 자산의 취득 원가에 산입하거나 당기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데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다음에 의해 계산한다.(선택사항)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 = Min[①, ②]
 ① (건설 등 연평균 지출액* - 연평균 특정차입금**) × 일반차입금 연평균이자율***
 ② 건설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 합계액

* 건설 등 연평균 지출액 = $\frac{\text{해당 건설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text{해당 사업연도 일수}}$

** 연평균 특정차입금 = $\frac{\text{해당 사업연도의 특정차입금의 적수}}{\text{해당 사업연도 일수}}$

*** 일반차입금 연평균이자율 = $\frac{\text{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들의 합계액}}{\text{해당 사업연도의 일반차입금의 적수}} \div \frac{\text{해당 사업연도 일수}}$

(5) 세무조정

① 건설자금이자를 과다계상한 경우

구 분	세 무 조 정
감가상각자산	손금산입(유보) → 감가상각시부인계산시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다.
비상각자산	손금산입(유보) → 처분시 익금산입(유보)

② 건설자금이자를 과소계상한 경우

구 분		세 무 조 정
감가상각자산	건설중인자산	손금불산입(유보) → 완성된 사업연도에 상각부인액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완성자산	즉시상각의제(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비상각자산		손금불산입(유보) → 처분시 손금산입(유보)

2) [세무사랑2] 운영방법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한국세무의 가지급금등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업무무관지급이자조정(갑 을) 및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

1. 재무제표에 반영된 이자비용 및 차입금원금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차입금은 전기이월된 것이다.

이자율	이자비용	차입금원금	비 고
15%	2,250,000	15,000,000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12%	4,800,000	40,000,000	국민은행
3.5%	7,000,000	200,000,000	국민은행 건설자금이자 700,000포함

2. 업무무관 가지급금계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대 여 처	금 액	대여기간	이자율	이자 수취
가지급금	대표이사	300,000,000	2015.8.8~	무상	
단기대여금	갑 법 인	100,000,000	2015.8.1~2016.7.31	연3%	매월말

갑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약정이자 1,250,000원(=1억×3%×5/12)을 매월말 현금으로 수취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원천징수세액은 무시한다.)

3. 국세청장이 고시한 인정이자율은 6.9%로 가정한다.
4. 위의 건설자금이자 는 공장건물을 짓기 위하여 차입한 2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서 동 차입금은 2014년 1월 1일 차입하여 공장건물에 직접 사용된 부분이며 건물의 완공예정일은 2016년 10월 5일이다.
5. 당사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해답 및 계산과정)

세 무 조 정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익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5,899,992원	상여
익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810,956원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	700,000원	유보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2,250,000원	대표자 상여
손금불산입	업무무관가지급금관련지급이자	8,169,489원	기타사외유출

1. 인정이자의 익금조정은 소득의 귀속자별로 소득처분한다.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금액은 상여로 갑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① 차입금의 적수: 이자율별로 계산한다.

$$12\% \text{의 차입금 적수} = 4,800,000 \div 12\% \times 365 = 14,600,000,000$$

$$3.5\% \text{의 차입금 적수} = 7,000,000 \div 3.5\% \times 365 = 73,000,000,000$$

차입금 적수 계산시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와 관련된 이자율은 인정이자계산시 제외한다.

② 가지급금 적수(대표이사) = $300,000,000 \times 146 = 43,800,000,000$

③ 가지급금 적수(갑법인) = $100,000,000 \times 153 = 15,300,000,000$

④ 총 가지급금 적수 = $59,100,000,000$

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text{가중평균차입이자율} = \frac{[\text{대여시점 차입금 잔액} \times \text{차입이자율}] \text{의 합계액}}{\text{자금대여시점의 차입금잔액의 총액}}$$

$$= [(40,000,000 \times 12\% + 200,000,000 \times 3.5\%)] \div 240,000,000 = 4.91666\%$$

⑥ 적용인정이자율: 4.91666%

⑦ 인정이자(대표이사)

$$= 43,800,000,000 \times 4.91666\% \times 1/365 = 5,899,992$$

⑧ 인정이자(갑법인)

$$= 15,300,000,000 \times 4.91666\% \times 1/365 - 1,250,000 = 810,956$$

2.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지급이자 불산입액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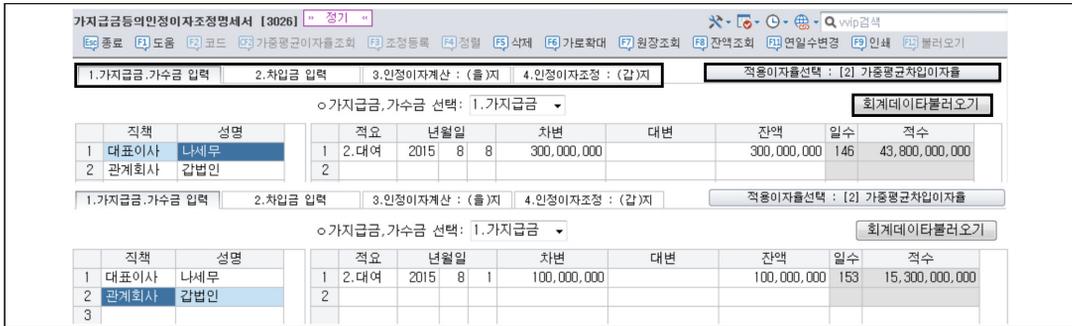
① 가지급금 적수 = 59,100,000,000

② 건설자금이자 상당액 차입금적수 = $700,000 \div 3.5\% \times 365$
 = 7,300,000,000

③ 손금불산입액 = $11,100,000 \times 59,100,000,000 \div (14,600,000,000 + 73,000,000,000 - 7,300,000,000) = 8,169,489$

④ 가지급금적수가 차입금적수보다 큰 경우 가지급금 적수는 차입금 적수를 초과할 수 없다. 즉 비율이 100%초과시 100%로 본다.

[가지급금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



※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의 작성은 [1. 가지급금.가수금입력-2. 차입금입력-3. 인정이자계산:(을)지-4. 인정이자조정:(갑)지]순서로 진행된다.

※ [적용이자율선택]을 클릭하여 법인이 적용할 이자율을 먼저 선택한다.

- [1]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
-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
- [3] 해당사업연도만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
- [4] 해당대여금만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

※ [회사데이터불러오기]기능에 [직책, 성명, 계정과목 및 적요번호]를 전표에 입력된 자료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전표에 입력된 계정과목 중 세법상의 가지급금 성격이 부여된 계정과목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이 경우 동일 계정과목으로 둘 이상에게 가지급금 등이 발생하였다면 적요번호로 구분하여야 한다.

즉, 인별로 전표입력시 적요번호를 [1과4], [2와5], [3과6]으로 구분하여 사용한 경우 인별로 자동 반영할 수 있다.

구 분	적요번호	
	지급	회수
나세무	1	4
홍길동	2	5
백두산	3	6

회계데이터 불러오기 [가지급금류]

	직책	성명	계정과목	적요번호 지급 회수	데이터불러오기
1	대표이사	나세무	0134 가지급금	1 4	1. 불러오기
2	관계회사	갑법인	0114 단기대여금	1 4	1. 불러오기
3					

일자별 통합해서 불러옴(F4)
 같은일자, 같은 적요번호는 통합해서 불러옵니다.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 전기분재무상대표의 134.가지급금계정의 직책, 성명이 같아야만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회계전표 불러오기(Tab) 코드도움(F2) 삭제(F5)
 직책,성명 불러오기(F3) 취소(Esc)

※ 「계정과목」에 「가지급금」 및 「가수금」이외의 계정과목을 입력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회계관리-기초정보등록-계정과목및적요등록」에서 관련 계정과목의 성격을 「7. 가지급금」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3026]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1.가지급금.가수금 입력 2.차입금 입력 3.인정이자계산 : (올)지 4.인정이자조정 : (갑)지 적용이자율선택 :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정과목설정 새로불러오기(현재거래처) 새로불러오기(전체거래처) 이자율일괄적용

거래처명	적요	연월일	차번	대번	이자대상금액	이자율 %	이자
1 국민은행	1.전기이	2014 1 1		40,000,000	40,000,000	12.00000	4,800,000
2	1.전기이	2014 1 1		200,000,000	200,000,000	3.50000	7,000,000
3							
합 계					240,000,000	240,000,000	11,800,000

※ [거래처명]을 [F2코드] 또는 「새로불러오기(현재거래처)」와 「새로불러오기(전체거래처)」를 이용하여 입력하면 자동으로 관련 거래처의 차입금 등과 관련된 회계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며 이자율만 개별적으로 입력한다.

※ 이자율 입력시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직접 수정하여 입력해야 한다.

※ 이자율 및 지급이자 입력시 다음의 이자는 제외한다.

- ① 채권자불분명사채 및 비실명채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이자
- ②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이자

[3026] 가지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1. 가지금금.가수금 입력 2. 차입금 입력 3. 인정이자계산 : (을)지 4. 인정이자조정 : (갑)지 적용이자율선택 :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이자율 선택: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연일수(365) 일

직책	설명	7. 잔액(5-6)	일수	가지금잔액수(7X8)	10. 가수금잔액수	11. 차감잔액수	이자율(%)	13. 인정이자(11X12)
1 대표이사	나세무	300,000,000	146	43,800,000,000		43,800,000,000	4.91666	5,899,992
2 관계회사	갑법인	300,000,000		43,800,000,000		43,800,000,000		5,899,992

1. 가지금금.가수금 입력 2. 차입금 입력 3. 인정이자계산 : (을)지 4. 인정이자조정 : (갑)지 적용이자율선택 :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이자율 선택: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연일수(365) 일

직책	설명	7. 잔액(5-6)	일수	가지금잔액수(7X8)	10. 가수금잔액수	11. 차감잔액수	이자율(%)	13. 인정이자(11X12)
1 대표이사	나세무	100,000,000	153	15,300,000,000		15,300,000,000	4.91666	2,060,956
2 관계회사	갑법인	100,000,000		15,300,000,000		15,300,000,000		2,060,956

※ [3. 인정이자계산:(을)지]는 전단계인 [1. 가지금금.가수금입력],[2. 차입금입력]자료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인별로 인정이자율을 계산하여 반영되며 이를 근거로 인정이자도 함께 계산된다.

[3026] 가지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1. 가지금금.가수금 입력 2. 차입금 입력 3. 인정이자계산 : (을)지 4. 인정이자조정 : (갑)지 적용이자율선택 :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가지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연일수 : 365일)

	1. 설명	2. 가지금잔액수	3. 가수금잔액수	4. 차감잔액수(2-3)	5. 인정이자	6. 회사계상액	7. 차액(5-6)	8. 시가인정범위 비율(%)	9. 조정액(=7) 7>=3의, 8>=5%
1	나세무	43,800,000,000		43,800,000,000	5,899,992		5,899,992	100.00000	5,899,992
2	갑법인	15,300,000,000		15,300,000,000	2,060,956	1,250,000	810,956	39.34853	810,956
	합 계	59,100,000,000		59,100,000,000	7,960,948	1,250,000			6,710,948

조정 등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가지금등인정이자(대표이사)	5,899,995	상여			
가지금등인정이자(관계회사)	810,956	기타사외유출			
합 계	6,710,951		합 계		

소득명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인정이자	6,710,948		

※환경등록-조정등록방법: 조정과목사용으로 설정됨 손익조정 직접입력 계정코드도움(F2) 조정코드도움(F4) 삭제(F5) 종료(ESC)

※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은 인별로 각각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작성]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3020] [정기] [wip검색]

① 2. 특정차입금 건설자금이자계산 명세

구분	①건설 자산명	②대출 기관명	③차입일	④차입금액	⑤이자율	⑥지금이자 (일시이자수의차감)	⑦준공일 (또는 예정일)	⑧대상일수 (공사일수)	⑨대상금액 (건설이자)
1	공장건물	국민은행	2014/01/01	20,000,000	3.500	700,000	2016/10/05	365	700,000
2	합 계			20,000,000		700,000			700,000

② 3. 일반차입금 건설자금이자계산 명세

⑩해당 사업년도 중 건설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 합계

⑪해당 건설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	(16)해당 사업연도의 특정차입금의 적수	(17)사업연도 일수	(18)계산대상금액 (15/17 - 16/17)
(19)일반차입금 지급이자 등의 합계	(20)해당 사업연도의 일반 차입금의 적수	(21)자본화이자율(%) 19/(20/17)	(22)비교대상금액 (18 * 21)
(23)일반차입금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금액 (min (14), (22))			

③ 1. 건설자금이자계산 조정

구분	① 건설자금이자	② 회사계상액	③ 상각대상자산분	④ 차감조정액(①-②-③)
건설완료자산분				
건설중인자산분	700,000			700,000
계	700,000			700,000

※ 건설자금이자 계산명세: 고정자산 건설과 관련된 이자비용발생분이 있다면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이 경우 특정차입금은 강제사항이며 일반차입금은 원가산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건설자금이자계산 조정: 당기 건설완료여부에 따라 세무조정이 달라지며 [④차감조정액]을 [조정등록]을 통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한다.

조정 등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건설자금이자	700,000	유보발생			
합 계	700,000		합 계		

소득명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건설자금이자와소계상분	700,000		

※환경등록-조정등록방법: 조정과목사용으로 설정됨

손익조정 직접입력 계정코드도움(F2) 조정코드도움(F4) 삭제(F5) 종료(ESC)

[업무무관지금이자조정명세서 작성]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3027] [정기] [wip검색]

1.적수입력(율) 2.지금이자 손금불산입(감)

1.업무무관부동산	2.업무무관동산	3.가지금	4.가수금	5.그밖의	블러오기	적요수정
①월일	②적요	③차변	④대변	⑤잔액	⑥일수	⑦적수
1 8 1	지 급	100,000,000		100,000,000	7	700,000,000
2 8 8	지 급	300,000,000		400,000,000	146	58,400,000,000
3	합 계	400,000,000			153	59,100,000,000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자료는 각 자산별로 [불러오기]기능을 이용하여 일반 전표입력 데이터와 인정이자 계산시 정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적수를 자동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자산별로만 구분정리한다.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3027] [정기]

1.적수입력(출) 2.지급이자 손금불산입(갑)

2.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①지급 이자	적 수		④차입금 (-19)	⑦ ⑧와 ⑨중 적은 금액	⑩손금불산입 지급이자 (①×⑦-⑨)
	②업무무관 부 동 산	③업무무관 동 산			
11,100,000			59,100,000,000	59,100,000,000	80,300,000,001
					59,100,000,000
					8,169,489

1.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 계산 [연이율 일수 현재: 365일] [단수차이조정] [연일수]

(9) 이자율 (%)	(10)지급이자	(11)차입금적수	(12)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수령자불분명 사채이자		(15)건설 자금 이자 국조법 14조에 따른 이자		차 감	
			(13)지급이자	(14)차입금적수	(16)지급이자	(17)차입금적수	(18)지급이자 (10-13-16)	(19)차입금적수 (11-14-17)
15	2,250,000	5,475,000,000	2,250,000	5,475,000,000				
12	4,800,000	14,600,000,000					4,800,000	14,600,000,000
3.5	7,000,000	73,000,000,000			700,000	7,299,999,999	6,300,000	65,700,000,001
합계	14,050,000	93,075,000,000	2,250,000	5,475,000,000	700,000	7,299,999,999	11,100,000	80,300,000,001

※ [2.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 계산]의 이자율과 지급이자는 이자율별로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 선순위 지급이자불산입 된 지급이자 및 동 차입금 적수를 직접 입력한다.

조정 등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건설자금이자	700,000	유보발생			
업무무관자산지급이자	8,169,489	기타사외유출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원천세처)	2,250,000	상여			
합 계	11,119,489		합 계		

소득명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8,169,489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2,250,000		
건설자금이자	700,000		

※관경등록-조정등록방법: 조정과목사용으로 설정됨

순익조정 직접입력 계정코드도움(F2) 조정코드도움(F4) 삭제(F5) 종료(ESC)

15. 과목별세무조정-준비금 조정명세서

준비금이란 장래에 발생가능성이 있는 특정자산의 취득 및 비용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세법상 일정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으로 용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처럼 손금으로 용인하는 일정금액은 당해연도의 법인소득을 감소시키지만 부채로 계상된 적립금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환입되기 때문에 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은 과세이연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이다.

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법인세법상 준비금

법인세법상 다음의 준비금은 반드시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신고조정가능) 이는 준비금의 손금산입이 배당가능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당해 법인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조정만 인정한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가. 손금산입 및 한도액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⁶⁵⁾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②호 내지 ⑤호의 배당소득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 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65)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2조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 ②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또는 같은 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 ③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용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④ 위 ① 내지 ③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⁶⁶⁾에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8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되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다.

- ① 해산한 때
- ②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 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66)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 제2항(법정기부금)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위 ① 내지 ③의 이자소득금액 등 및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과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법령 56③).

-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⑤ 손금계상 후 5년 내 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

라.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text{이자상당가산액} = \text{법인세차액}^{67)} \times \text{이자상당가산기산일수}^{68)} \times 3/10,000$$

2)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1) 개요

가. 준비금의 개념

준비금은 말 그대로 미래에 발생할 비용 또는 자산취득을 위하여 준비하는 제도이다. 당해연도에 비용으로 인정하여 주고 차기 이후에 비용처리액 만큼 환입하여 주는 절차로 세부담의 과세이연효과를 주는 것이다.

준비금의 설정 내용에 따라서 사용이 강제되는 것과 강제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로서 사용을 아니하면 세부담이연에 대한 이자부담도 하여야 한다.

환입방법은 목적사용액은 거치기간 경과 후 법정기간 동안 분할환입하고, 미사용액은 거치기간 후 일시환입한다. 위의 사용이 강제되지 않는 준비금도 일정기간 거치 후 일시환입한다.

※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규정은 일몰이 도래하여 폐지되었으며 일부 준비금의 경우 환입에 대한 기간이 미도래 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67) '법인세차액'이라 함은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말한다.

68) '이자상당가산기산의 일수'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은 결산조정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신고조정을 인정하고 있다. 신고조정을 한 경우에는 이익처분에 의하여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동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 준비금의 환입

┆ 거치기간=사용기간=이자추징기간 ┆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손금산입			1차환입	2차환입	3차환입	
		↑		↑	↑	↑	
	준비금설정		사용분	12/36	12/36	12/36	
			미사용분	전액	-	-	

※ 이자상당액 징수방법: 사용이 강제된 준비금의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다음의 이자상당액을 그 환입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text{이자상당액} = \text{감소된 법인세액} \times \text{기간} \times 3/10,000$$

(1) 연구연력개발준비금

가. 개요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⁶⁹⁾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액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¹⁾ × 3%

1)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69)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나. 환입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 ①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②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①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 ③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이자상당액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 중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text{이자상당액} = \text{법인세 차액}\text{①} \times \text{일수}\text{②} \times \frac{3}{10,000}$$

- ① 해당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말한다.
- ②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세무사랑2] 운영방법

(1) 연구인력개발준비금에 대한 세무조정사례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한국세무의 준비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1. 회사의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2012년도에 70,000,000원을 설정하고 당해과세기간까지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한 금액이 60,000,000원이며 나머지는 미사용분이다.
2. 2012년도의 과세표준은 50,000,000원이며 세율은 2억원 이하는 10%로 가정한다.
3. 기업회계기준상의 당기 매출액은 2,000,000,000원으로 가정한다.
4. 최저한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답 및 계산과정)

세 무 조 정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익금산입	준비금과소환입	30,000,000원	유보

1. 설정에 대한 세무조정

2013년 12월31일 이후엔 추가 설정을 할 수 없다.(일몰기한 종료)

2.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법정용도에 맞게 사용한 경우에는 3년거치 3년 균등분할 환입하며 미사용분은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전액 환입한다.

미사용분: 10,000,000(익금산입 유보)

사용분: 70,000,000 - 10,000,000 = 60,000,000(3년간 균등 환입)

사용분에 대한 환입액 = 60,000,000/3 = 20,000,000

3. 준비금 미사용분에 대한 추가납부세액계산

[법인조정-공제감면세액조정-추가납부세액계산(6)]메뉴에서 미사용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동 금액을 공제감면세액합계표(갑 을)을 작성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반영한다.

$$\text{이자상당액} = 10,000,000 \times 10\% \times 3/10,000 \times 1,094 = 328,200$$

(2013.1.1.~ 2015.12.31)

[연구및인력개발비조정명세서]

[3049] 연구·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뒤돌리기 조정등록 삭제 전체삭제 신청일 원장조회 잔액조회 인쇄 저장 불러오기									
1. 손금산입액 조정									
6. 수입 금액	7. 설정률	8. 한도액(6×7)	9. 회사계상액	10. 한도초과액(9-8)					
	3/100								
11. 최제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	12. 손금불산입계(10+11)	13. 손금산입액(9-10-11)	비고						
2. 익금산입액 조정									
손금환입액	15. 설정액	16. 장부상 준비금 기초잔액	17. 기중환입액	18. 준비금 누계액	차 감 액				계(16-17-18)
					3년 미경과분		3년 경과분		
					19. 연구 및 인력개발 소요자금 상당액	20. 미사용분	21. 연구 및 인력개발 소요자금 상당액	22. 기 타	
본란은 설정된 준비금의 법정용도 사용여부를 구분하여 입력한다.									
계									
손금환입액	연구 및 인력개발 소요자금상당액(21)중 환입할 금액								
	24. 1차 연도	25. 2차 연도	26. 3차 연도	27. 계 (24+25+26)	28. 환입할 금액합계 (22+27)	29. 회사 환입액	30. 과소환입, 과다환입 (△) (28-29)		
준비금의 환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입력한다.									
계									

연구·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3049] [정기]

종료, 조정등록, 삭제, 전체삭제, 산청일, 원장조회, 잔액조회, 인쇄, 저장, 불러오기

1. 손금산입액 조정

6. 수입금액	7. 설정률	8. 한도액(6×7)	9. 회사계상액	10. 한도초과액(9-8)
	3/100			
11.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	12. 손금불산입계(10+11)	13. 손금산입액(9-10-11)	비고	

2. 익금산입액 조정

연도	15. 설정액	16. 장부상 준비금 기초잔액	17. 기 중 환입액	18. 준비금 누계액	차 감 액				계(16-17-18)
					19. 연구 및 인력개발 소요자금 상당액	20. 미사용분	21. 연구 및 인력개발 소요자금 상당액	22. 기타	
2012	70,000,000						60,000,000	10,000,000	
계	70,000,000						60,000,000	10,000,000	

연구 및 인력개발 소요자금상당액(21) 중 환입할 금액

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 소요자금상당액(21) 중 환입할 금액				28. 환입할 금액합계 (22+27)	29. 회사 환입액	30. 과소환입, 과다환입 (Δ) (28-29)
	24. 1차 연도	25. 2차 연도	26. 3차 연도	27. 계 (24+25+26)			
2012	20,000,000			20,000,000	30,000,000		30,000,000
계	20,000,000			20,000,000	30,000,000		30,000,000

※ [3년 경과분]에 입력되는 금액 중 [21. 연구 및 인력개발 소요자금 상당액]은 36개월분할로 익금산입하며 [22. 기타]의 금액은 즉시 입금산입하며 이자상당액을 당해 법인세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조정 등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환입	30,000,000	유보감소			
합계	30,000,000		합계		

소득명세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준비금과소환입액	30,000,000		

※환경등록-조정등록방법: 조정과목사용으로 설정됨

순익조정, 직접입력, 계정코드도움(F2), 조정코드도움(F4), 삭제(F5), 종료(ESC)

※ 준비금의 기한내 미사용분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계산하여야 한다. 「법인조정 I -공제감면세액조정-추가납부세액계산서(6)」의 서식에서 진행한다.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3139] * 정기 *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1. 구 분	2. 손금산입 연도	3. 추가납부대상 준비금환입액	4. 공제	5. 차감계 (3-4)	6. 법인세 상당액	7. 이 율 (일변)	8. 기 간	9. 법인세 추가납부액(6×7×8)
연구 및 인력개발비	2012	10,000,000		10,000,000	1,000,000	3/10,000	1,094	328,200
계		10,000,000		10,000,000	1,000,000			328,200

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10. 구 분	11. 소득공제 연도	12. 추가납부 사유	가 산 액	16. 기 간	17. 금 액 (14×15×16)	18. 법인세 추가납부액 (14+17)
계						

기간

대상기간 : 2013년 01월 01일 ~ 2015년 12월 31일

미납일수 : 1094 일

※ [6.법인세상당액]은 준비금 설정한 연도의 법인세액의 차액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직접 계산하여 입력한다.

$$\text{법인세상당액} = \text{준비금 설정 연도의 산출세액} - (\text{설정연도의 과세표준} - \text{준비금 환입액}) \times \text{세율}$$

※ [8.기간]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3148] * 정기 *

최저한세배제세액감면 | 최저한세배제세액공제 | 최저한세적용세액감면 | 최저한세적용세액공제, 면제 | **비과세, 이월과세 추가납부액**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구 분	비과세, 이월과세 추가납부액	코드	금 액
(10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제13조	601	
(102)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제22조	61A	
(10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	604	
(104)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	제104조의2제1항	605	
(105)		606	
(107) 합 계		610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이월과세액
(176)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1조	661	
(177)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	662	
(178)		663	
(180) 합 계		667	

구 분	근거법 조항	코드	대 상 금 액	세 액
(18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1		328,200
(18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2		
(18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3		
(184) 기 타		775		
(185) 소 계		780		328,200
(186) 가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	781		
(187) 업무무관동등한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782		
(188)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97조제3항	783		
(189)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60조제8항	786		
(190) 기 타		785		
(191) 소 계		784		

[법인조정-공제감면세액조정-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3072] "정기"				wip검색			
종류 코드 삭제 원장조회 잔액조회 인쇄 저장 불러오기							
① 각 사 업 연 도 부 가 납 부 세 액 계 산	101.결산서상 당기순손익	01		120.산출세액 (120=119)			
	소득조정	102.익금산입	02	121.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 세액	17		
	금액	103.손금산입	03	122.차감세액	18		
	104.차가감소득금액 (101+102-103)	04		123.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 감면 세액	19		
	105.기부금 한도 초과액	05		124.가산세액	20		
	106.기부금 한도 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54		125.가감계 (122-123+124)	21		
	107.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4+105-106)	06		기 한 내 납 부 세 액 계 산	126.중간예납세액	22	
② 과 세 표 준 계 산	108.각사업연도 소득금액 (108=107)			127.수시부과세액	23		
	109.이월결손금	07		128.원천납부세액	24		
	110.비과세소득	08		129.간접회사등 외국 납부세액	25		
	111.소득공제	09		130.소계 (126+127+128+129)	26		
	112.과세표준 (108-109-110-111)	10		131.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③ 산 출 세 액 계 산	159.선박표준이익	55		132.합계 (130+131)	28		
	113.과세표준 (113=112+159)	56		133.감면분추가납부세액	29	328,200	
	114.세율	11		134.차가감납부합세액 (125-132+133)	30	328,200	
	115.산출세액	12		④토지등양도소득, ⑤미환류소득 법인세계산 (TAB로 이동)			
	116.지점유보소득 (법제96조)	13		151.차가감납부합세액계 (134+150)	46	328,200	
④ 세 액 계 산	117.세율	14		15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결정세액공제	57		
	118.산출세액	15		153.분납세액계산범위액 (151-124-133-145-152+131)	47		
	119.합계 (115+118)	16		분 납 합 세 액 계 산	154.현금납부	48	
				155.물납	49		
				156.계 (154+155)	50		
				차 감 납 부 세 액 계 산	157.현금납부	51	328,200
				158.물납	52		
			160.계 (157+158) [160=(151-152-156)]	53	328,200		

※ [133.감면분추가납부세액]은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상의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세무조정사례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단법인 청계장학회의 당기(2015.1.1~2015.12.31)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시오.

1. 수익사업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100,000,000원
2. 수익사업의 손익계산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①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 8,000,000원
 - ② 위의 기부금은 모두 세법상의 한도내의 금액이다.
 - ③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100,000,000원(비영업대금이익 20,000,000원 포함)
 - ④ 접대비 한도초과액 2,000,000원이 있다.
 - 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은 150,000,000원이다.
3. 전기말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

설정사업연도	당초 손금산입액	잔액
2012년	100,000,000원	100,000,000원
2013년	200,000,000원	200,000,000원
계	300,000,000원	300,000,000원

4. 당기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 용 내 용	금 액
장학금 지출액	100,000,000원
지정기부금지출액	50,000,000원
계	150,000,000원

(해답 및 계산과정)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무조정 전의 수익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총액 - 손금총액
 $= 100,000,000 + 2,000,000 - 0 = 102,000,000$ 원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 ① + ② = 166,000,000원
 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기준 = $(100,000,000 - 20,000,000) \times 100\%$

= 80,000,000원

② 수익사업소득기준 = [102,000,000(사업소득금액) + 150,000,000(고유목적사업준비전입액) + 8,000,000(법정기부금) - 80,000,000(이자수익) - 5,000,000(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3,000,000(특례기부금손금산입액)] × 50% = 172,000,000 × 50% = 86,000,000원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 = 150,000,000 - 166,000,000 = △16,000,000원 (한도미달)

4. 만약 회사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150,000,000원)의 잉여금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였다면 신고조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50,000,000원 기타

법인조정-비영리법인조정-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 결산조정사항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3191] * 정기 *

종류 | 도움 | 코드 | 조정등록 | 삭제 | 전체삭제 | 인쇄 | 저장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을)

1 손금 산입액 조정

1. 소득금액	2.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4.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1+2+3)	5.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1호 부터 제3호에 따른 금액	6.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따른 결손금
102,000,000	150,000,000	8,000,000	260,000,000	80,000,000	
7.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8.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3 제5항 제2호에 따른 금액	9. 수익사업 소득금액 (4-5-6-7-8)	10. 손금 산입률	11. 손금산입 한도액 (5+8+9×10)	12. 손금부인액 [(2-11)>0]
8,000,000		172,000,000	50 / 100	166,000,00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13. 사업년도	14. 손금산입액	15. 직전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	16. 해당 사업 연도 고유목적사업지출액	17. 익금산입액	18. 잔액(14-15-16-17)
(달기)					19. 5년 이내분 20. 5년 경과분
2012	150,000,000				150,000,000
2013	100,000,000		100,000,000		
	200,000,000		50,000,000		150,000,000
계	450,000,000		150,000,000		300,000,000

※ [2. 당기계상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에는 결산조정에 의하여 이미 반영된 준비금을 입력하며 [12. 손금부인액]을 손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한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는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여부를 확인하며 [16.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란의 합계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표에서 세부내역별로 구분하여 지출처

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록하며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319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1.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2.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을)

1. 지정기부금

1	2.적요	3.지출처 상호(성명)	3.사업자(주민)등록번호	4.금액	5.비고
1	기부금지급	공익법인	12085767988	50,000,000	
소계				50,000,000	

2. 고유목적사업비

1	2.적요	3.지출처 상호(성명)	3.사업자(주민)등록번호	4.금액	5.비고
1	인건비			50,000,000	
소계				50,000,000	

3. 고유목적사업관련 운영경비

1	2.적요	3.지출처 상호(성명)	3.사업자(주민)등록번호	4.금액	5.비고
1	운영경비			50,000,000	
소계				50,000,000	

4. 기타

1	2.적요	3.지출처 상호(성명)	3.사업자(주민)등록번호	4.금액	5.비고
소계					
6.계				150,000,000	

※ 신고조정사항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3191] 정기

1.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2.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을)

1. 손금 산입액 조정

1. 소득금액	2.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4.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1+2+3)	5.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1호 부터 제3호에 따른 금액	6.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따른 결손금
252,000,000		8,000,000	260,000,000	80,000,000	
7.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8.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3 제6항 제2호에 따른 금액	9. 수익사업 소득금액 (4-5-6-7-8)	10. 손 금 산입률	11. 손금산입 한도액 (5+8+9×10)	12. 손금부인액 [(2-11)>0]
8,000,000		172,000,000	50 /100	166,000,00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13. 사업연도 (당기)	14. 손금산입액	15. 직전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	16. 해당 사업 연도 고유목적사업지출액	17. 익금산입액	18. 잔액(14-15-16-17)
					19. 5년내내분 20. 5년경과분
2012	150,000,000				150,000,000
2013	100,000,000		100,000,000		
	200,000,000		50,000,000		150,000,000
계	450,000,000		150,000,000		300,000,000

※ 신고조정외의 경우라면 [1.소득금액]란에는 당초에 손금산입하였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손금에서 제외되므로 그 금액만큼 증가하여 252,000,000원이 되며 [10.손금산입한도액]과 잉여금처분으로 적립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손금산입(유보)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한다.

16. 과목별세무조정-국고보조금등 손금산입조정명세서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상 순자산의 증가로 보아 전액 익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부담이 발생하며 이는 공사부담금 등의 자산취득방해요소가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년도에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 설정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감가상각 또는 처분시에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과세시기를 이연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대상법인	전기사업·도시가스사업·액화석유가스충전·공급판매사업,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수도사업 영위법인	내국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 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한국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하여 받게되는 보조금등의 자산	보험에 가입한 고정자산이 화재등으로 멸실 손괴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손금산입 요 건	수요자 또는 편익자로부터 금전·자재를 교부받은 사업시설의 고정자산 취득과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기타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것	고정자산을 취득·개량할 목적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그 목적에 지출 및 석유류의 취득	고정자산의 멸실손괴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 일 것
손금산입 범 위 액	소요된 공사부담금×100%	소요된 국고보조금×100%	소요된 보험차익×100%
손금산입 사업연도	공사부담금을 교부받은 연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연도	보험금을 받은 연도
사용기간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1년이내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내
제출서류	법인세신고시 공사부담금, 국고보조금, 보험금의 감가상각대상자산일시상각충당금 계상 위 이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사용계획서 제출
손 금 산입방법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
기 타	세무조정계산서에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 가능(신고조정가능)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 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		

법인조정-과목별세무조정-국고보조금등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

[3150] 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보험차익)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조정 | 보험차익 및 익금산입조정

1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액 조정

(1)보조금등 수령액	(2)과목	취득한 또는 취득할 고정자산가액			(6)당해자산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 [MIN(1), (5)]	손금산입액 조정
		(3)취득한 자산가액	(4)취득할 자산가액	(5)계 [(3)+(4)]	(7)용인한도액 [(7)-(6)]	
						(8)회사계상액
						(9)한도초과액 [(8)-(7)]
계						

2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액 조정

(10)공사 부담금 가액	(11)과목	취득한 또는 취득할 고정자산가액			(15)계 [(12)+(13)+(14)]	손금산입액 조정
		(12)취득한 자산가액	(13)취득할 자산가액	(14)교부받은 자산가액	(16)용인한도액 [(16)-(15)]	
						(17)회사계상액
						(18)한도초과액 [(17)-(16)]
계						

[3150] 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보험차익)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조정 | 보험차익 및 익금산입조정

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액 조정

(19)보험금	(20)멸실손괴 자산가액	(21)보험차익 [(19)-(20)]	(22)과목	대체한 또는 대체할 자산가액		(25)계 [(23)+(24)]	(26)대체자산에 소요되는 보험차익 [(21) 또는 (25)-(20)]	손금산입액 조정
				(23)대체한 자산가액	(24)대체할 자산가액		(27)용인한도액 [(27)-(26)]	
								(28)회사계상액
								(29)한도초과액 [(28)-(27)]
계								

4 미사용분 익금산입액 조정

(30)구분	(31)손금산입연도	(32)손금산입기준액	(33)손금산입액	(34)계획서 제출금액	(35)사용액	(36)미사용액 [(34)-(35)]	(37)익금산입액 [(33)x(36)/(32)]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계							

[3516] 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

국고보조금등내용

①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 사용기간: _____ ~ _____

②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 지급처명: _____

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 지급목적별 지급금액	고정자산취득 및 개량목적의보조금	기타보조금	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계	기타
④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 지급용지일: _____			④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 지급용지일: _____	

2 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

⑥취득 또는 개량 연월일	⑦취득 또는 개량할 고정자산 소재지	⑧취득 또는 개량할 고정자산 명칭	⑨수량	⑩취득 또는 개량금액	⑪참고
합계					

「법인세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8항
 「법인세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5항 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제출년월일 : 2014 년 03 월 31 일 신청인 나세무 서초 세무서장 귀하

17. 과목별세무조정-기부금조정명세서

1) 개념정리

기부금이란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특수관계자를 제외함)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증여한 경우에는 기부금이 아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다만 그 특수관계자가 세법에 열거된 기부금 대상 단체 등인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된다.

2) 기부금의 의제(간주기부금)

① 고가매입·저가양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⁷⁰⁾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간주한다(기타기부금에 해당함).

② 특별회비와 임의단체에 지급한 회비

조합 협회의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③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

3) 기부금의 종류

(1) 법정기부금의 종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 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70) 정상가액이란 시가에 100분의 30을 가감(시가±시가의 30%)한 범위내의 금액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③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의 구호금품의 가액
- ④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등의 기관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공익성 기부금으로서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 ① 비영리법인 등⁷¹⁾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② 기부금을 받는 단체 및 용도를 지정하여 지출하는 다음의 기부금
 - ㉠ 불우이웃돕기성금
 - ㉡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연구비·장학금
 - ㉢ 종교방송을 위한 건물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③ 조합 협회의 회비 중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한 협회 등에 지급하는 협회비 등
- ④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금액

71) 비영리법인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사회복지법인·학교·기능대학 및 원격대학
- ②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법인 포함)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단체
- ③ 의료법인
- ④ 종교의 보급 등의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 ⑤ 대한적십자사
- ⑥ 국민건강보험공단
- ⑦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수입의 공익목적사용 및 잔여재산의 국가 등 귀속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이 지정한 법인
- ⑧ ①~⑦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3) 기타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제외하고는 기타기부금으로 전액손금으로 용인되지 아니한다(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⁷²⁾.

4) 기부금 한도액

구 분	한 도 액
법정기부금	(소득금액 - 세무상 이월결손금) × 50%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 세무상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용인액) × 10%

※ 세무상 이월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2009.1.1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5)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법정·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법정·지정기부금한도액 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6) 기부가액의 평가 등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7) 기부금의 귀속시기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현금주의) 이때 지출일은

72)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의 소득처분[법기통 67-106----6]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①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 배당
- ② 사용인(임원포함) : 상여
- ③ 전 각호 이외의 경우 : 기타사외유출

실제 현금지출일을 말하며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실제로 결제된 날, 수표로 지급한 때에는 수표를 교부한 날을 말한다.

법인이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세무사랑2] 운영방법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한국세무의 기부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

1. 기부금의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 자	지 급 처	적 요	금 액
2/28	국 방 부	방위성금	20,000,000
12/31	장 애 인 협 회	불우이웃돕기성금	30,000,000
12/31	동 창 회	대표이사개인동창회비	5,000,000
12/31	성 균 관 대 학	대학 시설비	10,000,000
12/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모금회 기부	15,000,000

※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생략한다.

2. 위 기부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제외한 차가감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200,000,000
익금산입/손금불산입	150,000,000
손금산입/익금불산입	100,000,000
차가감 소득금액	250,000,000

3.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2000년	2003년	2012년
30,000,000	20,000,000	50,000,000

4. 2012년 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 중 한도초과액이 40,000,000원이 있다.

(해답 및 계산과정)

세 무 조 정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	5,000,000원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전기법정기부금이월공제	40,000,000원	
손금불산입	지정기부금한도초과	24,000,000원	

기부금 종류구분

일 자	지 급 처	금 액	종류구분
2/28	국 방 부	20,000,000	법정
12/31	장 애 인 협 회	30,000,000	지정
12/31	동 창 회	5,000,000	비지정
12/31	성 균 관 대 학	10,000,000	법정
12/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5,000,000	지정

대표이사개인동창회 회비는 세법상의 기부금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① 차가감소득금액 = 250,000,000 + 5,000,000 = 255,000,000
- ②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 = 20,000,000 + 10,000,000 = 30,000,000
- ③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 30,000,000 + 15,000,000 = 45,000,000
- ④ 소득금액 = ① + ② + ③ = 330,000,000
- ⑤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의 한도액 = [④ - 이월결손금(=50,000,000)] × 50%
= 280,000,000 × 50% = 140,000,000
- ⑥ 법정기부금 한도미달(30,000,000 - 140,000,000 = △110,000,000)로 전액 손금인정
- ⑦ 이월공제분 손금산입액 = Min[㉠ 110,000,000 ㉡ 40,000,000] = 40,000,000
손금산입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과표및 세액조정계산서상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에 기록되어 각사업연도소득의 감소시킨다.
- ⑧ 지정기부금의 한도액
= [④-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용인액 및 이월공제분] × 10%

$$= (330,000,000 - 50,000,000 - 30,000,000 - 40,000,000) \times 10\%$$

$$= 21,000,000$$

⑨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 = 45,000,000 - 21,000,000 = 24,000,000

⑩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24,000,000원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과표및세액조정계산서상 [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기록되어 각사업연도소득의 증가시킨다.

[3031] 기부금조정명세서

1.기부금 입력 | 2.기부금 조정

1.기부금명세서

월별로 전환 | 구분만 별도 입력하기 | 유형별 정렬

구분			4. 일자		5. 적요		기부처		8. 금액	비고
1. 유형	2. 코드	3. 과목					6. 법인명등	7. 사업자(주인)번호등		
법정기부금	10	기부금	2	28	방위성금 지급		국방부		20,000,000	
지정기부금	40	기부금	12	31	불우이웃돕기 성금지급		장애인협회		30,000,000	
기타	50	기부금	12	31	동창회장학금 지급		동창회		5,000,000	
법정기부금	10	기부금	12	31	대학시설비		성균관대학		10,000,000	
지정기부금	40	기부금	12	31	공동모금회기부		사회복지공동모금		15,000,000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3. 그밖의기부금										
9. 소계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법정기부금								코드 10	30,000,000	
나.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								코드 40	45,000,000	
다. 그 밖의 기부금								코드 50	5,000,000	
계									80,000,000	

2. 소득금액확정

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200,000,000 | 2. 익금산입 155,000,000 | 3. 손금산입 100,000,000 | 4. 기부금합계 75,000,000 | 5. 소득금액계(1+2-3+4) 330,000,000

새로 불러오기 | 수정 해제

※ 본 서식은 기부금한도초과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이 끝난 후 작성하며 기부금명세서, 소득금액계, 이월결손금만 정확히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완료된다.

※ 기부금명세서는 [불러오기]기능을 이용하여 일반전표입력데이터를 사용한다. 기부금에 대하여 일반전표에 입력시 기부처를 미리 거래처 등록시켜 사용하면 본 란에서 별도의 기부처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별도로 입력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단지 본란에서는 불러온 기부금의 유형을 구분하여 입력만 하면 된다. 기부금의 유형은 반드시 기부금영수증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 본 서식은 [1.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한 후 [2.소득금액확정]에서 기준소득금액을 [새로불러오기]기능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기부금 입력		2. 기부금 조정				
1. 기부금명세서				월별로 전환	구분만 별도 입력하기	유형별 정렬
구분	3. 과목	4. 일자	5. 적요	기부처	8. 금액	비고
1. 유형	2. 코드			6. 법인명등	7. 사업자(주인)번호등	
법정기부금	10	기부금	2 28	방위성금 지급	국방부	20,000,000
지정기부금	40	기부금	12 31	불우이웃돕기 성금지급	장애인협회	30,000,000
기타	50	기부금	12 31	동창회장학금 지급	동창회	5,000,000
법정기부금	10	기부금	12 31	대학시설비	성균관대학	10,000,000
지정기부금	40	기부금	12 31	공동모금회기부	사회복지공동모금	15,000,000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3. 그밖의기부금						

※ [1. 유형]에서 기타(코드:50)로 분류된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 한도초과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기 전에 합계등록을 통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정 등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과 목	소 득 처 분
기타기부금	5,000,000	기타사외유출	
합 계	5,000,000	합 계	
소득명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비지정 기부금	5,000,000		

1. 기부금 입력		2. 기부금 조정	
1.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1. 소득금액 계	330,000,000	5. 손금산입액 [MIN 3, 4]	30,000,000
2.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 결손금 합계액	50,000,000	6.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4-3) > 0, (25)]	40,000,000
3.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30,000,000	7. 소득금액 차감잔액 [(1-2-5-6) > 0]	210,000,000
4. 한도액 {[(1-2) > 0] x 50%}	140,000,000	8. 한도초과액 [(3-4) > 0]	0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9.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105,000,000	12.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10-9) > 0, (25)]	210,000,000
10. 한도액 (7x50%)	105,000,000	13. 소득금액 차감잔액 [(7-11-12) > 0]	210,000,000
11. 손금산입액 MIN(9, 10)	105,000,000	14. 한도초과액 ((9-10) > 0]	0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15.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금액	45,000,000	18.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16-15) > 0, (25)]	24,000,000
16. 한도액 (13x10%)	21,000,000	19. 한도초과액 [(15-16) > 0]	0
17. 손금산입액 MIN(15, 16)	21,000,000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20. 기부금합계액 (3+15)	75,000,000	21. 손금산입 합계 (5+17)	51,000,000
		22. 한도초과액 합계 (20-21)	24,000,000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 연도	기부금 종류	23.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24. 기공제액
	①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40,000,000	40,000,000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③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2013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40,000,000	40,000,000
			25. 공제가능 잔액 (23-24)
			26. 해당연도 손금추인액
			27. 차기이월액 (25-26)

- ※ 「2.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란에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을 확인하여 입력한다.
- ※ 전기에 기부금한도초과로 인하여 이월공제대상 기부금한도초과액이 있으면 [5.기부금이월액명세]에서 그 잔액을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① 이월공제대상 기부금한도초과액을 「23. 한도초과손금불산입액」과 「24. 기공제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25. 공제가능잔액」이 계산되고 「25. 공제가능잔액」이 자동으로 「6.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18.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에 당기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 ② 「6.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18.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에 자동으로 반영된 금액을 [26. 해당사업연도손금추인액]란에 직접 입력하여 관리하며 「26. 해당사업연도손금추인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세무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서식의 [106. 기부금한도초과이월손금산입액]란에 자동반영된다.
 - ③ 또 당기에 기부금한도미달액이 없는 경우라도 전기의 이월공제대상 기부금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월공제명세는 자동으로 관리되지 아니한다.
- ※ 기부금한도초과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서식의 [105. 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자동반영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는 기부금한도계산시 소득금액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3072] " 전기 "			
종류	코드	식제	원장조회
① 각사업연도	101.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200,000,000
소득	소득조정	102.익금산입	155,000,000
	금액	103.손금산입	100,000,000
연도	104.차가감소득금액 (101+102-103)	04	255,000,000
	105.기부금한도초과액	05	24,000,000
소득계산	106.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54	40,000,000
	107.각사업연도소득금액(104+105-106)	06	239,000,000
세	120.산출세액 (120=119)		27,800,000
	121.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 세액	17	
납부	122.차감세액	18	27,800,000
	123.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 감면 세액	19	
할	124.가산세액	20	
	125.가감계 (122-123+124)	21	27,800,000
기납세	126.중간예납세액	22	
	127.수시부과세액	23	
	128.원천납부세액	24	

[별지 제45호의2서식] (2010.4.30 개정)

일련번호		기부금 영수증			
1. 기부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소 재 지					
4.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구 분	년 월	내 용	금 액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2. “4. 기부내용”란에 적는 유형·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 법정, 코드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 정치자금, 코드 2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11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 조특법 73, 코드 30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신탁기부금 : 조특법 73 ① 11, 코드 31 마.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 지정, 코드 40 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 종교단체 코드 41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 코드 42 아.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 공제제외, 코드 50 3.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습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제 4 장

[세무사랑2]에 의한 세액계산

1. 소득 및 과세표준계산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명세서

지금까지 작성한 각종 조정명세서상의 세무조정사항을 기입하여 집계하고 필요에 따라 기타 조정사항의 명세 또는 계산근거를 첨부할 수 있는 명세서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이다. 다만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본 명세서에서 제외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바로 기재한다.

따라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별도로 세무조정사항을 기록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조정명세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조정등록]이라는 메뉴를 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종 조정명세서 등을 통하여 반영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자기주식	5,000,000	기타	전기오류수정손실	3,000,000	기타
임원상여금한도초과	50,000,000	상여	전기건설용장비감가상각비한도초과	6,088,500	유보감소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	42,500,000	상여	전기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	20,000,000	유보감소
공사미수금과소	32,800,000	유보발생	퇴직연금등손금산입	100,000,000	유보발생
임대보증금간주익금	3,633,972	기타사외유출	전기대손충당금한도초과	500,000	유보감소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	117,500,000	유보발생	단기매대증권평가이익	5,000,000	유보발생
부도어음과수표	1,000	유보발생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000,000	기타
대손충당금한도초과	5,839,990	유보발생	외화예금	500,000	유보발생
신용카드등미사용액	2,000,000	기타사외유출	외화장기차입금	5,000,000	유보발생
접대비한도초과	1,608,035	기타사외유출	선급비용	1,002,740	유보발생
전기제품평가증	5,000,000	유보감소	연구인력개발준비금	60,000,000	기타
매도가능증권(손실)	2,000,000	유보발생			
재고자산평가감	1,000,000	유보발생			
세금과공과금	250,000	기타사외유출			
잡손실	70,000	기타사외유출			
법인세등	17,451,760	기타사외유출			
가지금인정이자(대표이사)	5,883,871	상여			
가지금인정이자(관계회사)	805,325	기타사외유출			
건설자금이자	700,000	유보발생			
업무무관자산지금이자	8,147,168	기타사외유출			
채권자불명명사채이자(원천세제외)	2,250,000	상여			
건설자금이자	700,000	유보발생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환입	30,000,000	유보감소			
기타기부금	5,000,000	기타사외유출			
합 계	340,141,121		합 계	203,091,240	

2) 비과세소득명세서

비과세소득은 당초부터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방법과 일단 과세대상소득에 포함시키고 과세표준계산단계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의 입장이고 후자는 현행 법인세법의 입장이다.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면 그 유형에 상관없이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계산시 비과세소득의 당초 입법취지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신고나 신청절차 없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비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하므로 각사업연도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하고 소멸한다. 실무상 비과세소득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서식작성은 생략한다.

3) 소득자료명세서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시 발생하는 세무조정사항의 소득처분중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소득의 귀속(주주, 임원, 사용인, 기타의 자등)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당해 법인에게 부여된다.

이러한 원천징수세액 및 귀속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소득자료명세서에 기록하여 제출함으로써 과세관청에서 소득의 귀속자에게 개인소득세의 추가적인 납세의무를 부여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소득처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구 분	귀 속 시 기	지 급 시 기	소득자의 정리방법
인정상여	법인의 결산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법인세신고시: 과세표준신고일	연말정산자료에 합산하여 수정신고
인정배당	법인의 결산확정일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
기타소득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

①소득구분	②소득 귀속연도	③배당·상여 및 기타소득금액	연말정산 여부	④원천징수할 소득세	⑤원천징수일	⑥신고 여부	소 득 자		⑧비고	
							⑦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1	1. 인정상여	2015	10,000,000	여	0		여	나세무	222222-1333333	연말정산 원천징수필
2	2. 인정배당	2016	50,000,000	부	7,000,000	2016-03-31	여	홍길동	111111-1222222	원천징수필
3	1. 인정상여 2. 인정배당 3. 기타소득									

4) 소득구분계산서

(1) 개념정리

법인세 및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장부를 관리하지만 과세사업과 감면사업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은 구분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공통경비의 경우 법에서 정한 안분기준에 따라 공통경비를 안분하는 서식이 바로 「소득구분계산서」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구분을 업태·종목으로 판단하는데 업태·종목은 반드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이 감면사업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자수익 등은 감면사업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법에서 과세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상의 공통경비나 수익에 대한 구분기준이나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과세소득 등에 대한 규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 구분경리의 기준(안분기준)

다음은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의 기준이다.

가. 개별익금

사업 또는 수입별 개별익금은 당해 사업 또는 수입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구분경리한다. 또한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부수이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 ① 부산물, 작업폐물의 매출액
- ② 매입할인
- ③ 채무면제익
- ④ 원가차익

- ⑤ 상각채권추심익
- ⑥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 ⑦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 ⑧ 판매장려금⁷³⁾

다만 다음의 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즉, 감면대상 사업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

- ① 수입배당금
- ② 수입이자
- ③ 유가증권평가익, 처분익
- ④ 수입임대료
- ⑤ 가지급금 인정이자
- ⑥ 유형자산처분익
- ⑦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분⁷⁴⁾
- ⑧ 자산수증이익

나. 개별손금

사업 또는 수입별 개별손금은 당해 사업 또는 수입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구분경리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은 당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한다.

- ① 매출원가
- ②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 ③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 충당금 전입액
- ④ 기타 귀속이 불분명한 제비용

다만 다음의 영업외비용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한다.

- ① 유가증권평가손
- ② 유가증권처분손
- ③ 유형자산처분손

다.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

다음과 같이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수익(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수익(비용)은 공통익금(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 ①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 ②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채무면제익

73) 판매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소득에 해당한다.(서면1팁-1398, 2007.10.11)

7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서일 46011-11427, 2003.10.9)

- ③ 공통손금의 환입액
- ④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 ⑥ 사채발행비 상각
- ⑦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 ⑧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라.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공통손익은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결산시 안분하여 구분계산한다.

① 원칙

- ㉠ 공통익금: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 ㉡ 공통손금: 구분경리대상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구분경리대상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각 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개별손금액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예외

개별손금(공통손금 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함)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안분계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수개업종 겸업법인의 경우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 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한다.

구 분		안분계산방법
· 공통익금		수입금액비례
· 공통손금	업종이 동일한 경우	수입금액비례
	업종이 다른 경우	개별손금액비례

마. 기타의 구분

① 이자비용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 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여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② 외환차손익

감면 및 기타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기타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③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의 구분공제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감면사업과 기타과세의 사업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하며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감면소득에서 공제한다.

④ 기부금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기부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때에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서이46012-10674, 2001.12.05)

(2) [세무사랑2] 운영방법

①과목	표준손익계산서	②구분	③합계	감면분 또는 합병 승계사업해당분 등						기타분	
				제조업						⑧금액	⑨비율
				④금액	⑤비율	④금액	⑤비율	④금액	⑤비율		
(1)매출액	2,520,000,000		2,520,000,000	2,320,000,000	92.06					200,000,000	7.94
(2)매출원가	2,035,604,380		2,035,604,380	1,985,620,000	97.54					49,984,380	2.46
(3)매출총이익 {(1)-(2)}	484,395,620		484,395,620								
(4)판매비와 관리비	125,485,200	개별분	125,485,200								
(5)영업손익 {(3)-(4)}	358,910,420	공통분	358,910,420								
(6)영업외 수익	43,420,000	계	43,420,000								
(7)영업외 비용	155,623,000	개별분	155,623,000								
(8)각 사업년도 소득 {(5)+(6)-(7)}	246,707,420	공통분	246,707,420								
(9)이월결손금		계									
(10)비과세 소득											
(11)소득공제액											
(12)과세표준 {(8)-(9)-(10)-(11)}	246,707,420		246,707,420								

- 본 서식은 [1.표준손익계산서 소득구분경리]→[2.세무조정소득구분]→[3.공통손익의안분기준]→[4.표준손익/세무조정구분명세조회]→[5.소득구분계산서]순으로 작성한다.
- 본 서식은 [감면분 또는 합병 승계사업해당분 등]란에 감면등 사업명을 먼저 등록한 후 표준손익계산서상의 내용을 [새로불러오기]기능을 이용하여 등록한다.
- 감면명칭을 등록할 때에는 감면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이는 감면사업별로 감면세액계산시 감면율이 감면업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 [③합계]란에는 표준손익계산서상의 금액을 [공통분]과 [개별분]으로 구분하고 개별분은 [감면분 또는 합병 승계사업해당분 등]과 [기타분]으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1. 표준손익계산서구분경리		2. 세무조정소득구분		3. 공통손익의 안분기준		4. 표준손익/세무조정 구분명세조회		5. 소득구분계산서	
2.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과목명	금액	과목선택	구분선택	감면선택	종류	소득처분	유보감소	과목추가
1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	판매비와	공통분	해당없음	추가	소득내용	당기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인	
2	신용카드등미사용액	2,000,000	판매비와	공통분	해당없음		소득내용	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3	집대비한도초과	5,000,000	판매비와	공통분	해당없음		과목선택	1:매출액, 2:매출원가, 3:판매비와관리비, 4:영업외수익, 5:영업외비용, 6:해당없음	
4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30,000,000	판매비와	개별분	감면분1		구분선택	1:개별분, 2:공통분, 3:해당없음	
5	기타기부금	5,000,000	영업외비	공통분	해당없음		감면선택	1:감면분1, 2:감면분2, 3:감면분3, 4:기타분, 5:해당없음	
6	인정이자	10,000,000	영업외수	개별분	기타분				
7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	45,785,200	판매비와	공통분	해당없음				
8	기부금한도초과	25,000,000	영업외비	공통분	해당없음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명	금액	과목선택	구분선택	감면선택	종류	소득처분	유보감소	
1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	판매비와	공통분	해당없음	추가	소득내용	퇴직연금운용자산과 상계된 퇴직급여충당금을	
2	퇴직연금운용자산	30,000,000	판매비와	공통분	해당없음		소득내용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함	
3	법정기부금이월공제	50,000,000	영업외비	공통분	해당없음		과목선택	1:매출액, 2:매출원가, 3:판매비와관리비, 4:영업외수익, 5:영업외비용, 6:해당없음	
							구분선택	1:개별분, 2:공통분, 3:해당없음	
							감면선택	1:감면분1, 2:감면분2, 3:감면분3, 4:기타분, 5:해당없음	

- [2. 세무조정소득구분]란에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된 모든 세무조정사항이 자동으로 반영되며 [과목선택·구분선택·감면선택]에서 오른쪽 내용을 참조하여 선택 입력한다.
- 세무조정사항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 즉 「기부금한도초과액」 및 「기부금이월손금산입액」 등은 상단의 [과목추가]기능을 통하여 직접 반영한다.

1. 표준손익계산서구분경리		2. 세무조정소득구분		3. 공통손익의 안분기준		4. 표준손익/세무조정 구분명세조회		5. 소득구분계산서	
1. 안분기준									
	과목	안분기준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공통손금은 업종이 동일한 경우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법령 제 156, 법칙 제 75 ㉔, 법칙 제 76 ㉔)					
1.	판매비와 관리비 공통분	2.	1:매출액비례	2:개별손금비례					
2.	영업외 수익 공통분	1.	1:매출액비례	2:개별손금비례					
3.	영업외 비용 공통분	2.	1:매출액비례	2:개별손금비례					
2. 기준금액									
	과목	합계	감면분 또는 합병 승계사업자 해당분 등				기타분		
			건설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매출액	1,250,000,000		1,000,000,000	80.00			250,000,000	20.00
	개별손금	856,920,000		750,000,000	87.52			106,920,000	12.48

- [3. 공통손익의 안분기준]란은 공통손익에 대한 안분기준을 선택하여 입력한다.

1.표준손익계산서구분경리 2.세무조정소득구분 3.공통손익의 안분기준 4.표준손익/세무조정 구분명세조회 5.소득구분계산서											
①과목	구분	②구분	③합계	감면분 또는 합병 승계사업해당분 등						기타분	
				제조업						⑥금액	⑦비율
(1)매출액	표준손익계산서		2,520,000,000	④금액	⑤비율	④금액	⑤비율	④금액	⑤비율	⑥금액	⑦비율
	세무조정				92.06					200,000,000	7.94
	계		2,520,000,000	2,320,000,000						200,000,000	
(2)매출원가	표준손익계산서		2,035,604,380	1,985,620,000	97.54					49,984,380	2.46
	세무조정										
	계		2,035,604,380	1,985,620,000						49,984,380	
(3)매출총손익	표준손익계산서		484,395,620	334,380,000						150,015,620	
{{(1)-(2)}	계		484,395,620	334,380,000						150,015,620	
(4)판매비와 관리비	표준손익계산서	개발분									
		공통분	125,485,200	119,386,619	95.14					6,098,581	4.86
		계	125,485,200	119,386,619						6,098,581	
	세무조정	개발분	-30,000,000	-30,000,000							
		공통분	-22,785,200	-21,677,839	95.14					-1,107,361	4.86
		계	-52,785,200	-51,677,839						-1,107,361	
(5)영업손익	표준손익계산서		358,910,420	214,993,381						143,917,039	
{{(3)-(4)}	세무조정		52,785,200	51,677,839						1,107,361	
	계		411,695,620	266,671,220						145,024,400	
(6)영업외 수익	표준손익계산서	개발분	40,000,000							40,000,000	
		공통분	3,420,000	3,148,452	92.06					271,548	7.94
		계	43,420,000	3,148,452						40,271,548	
	세무조정	개발분	10,000,000							10,000,000	
		공통분									
		계	10,000,000							10,000,000	
(7)영업외 비용	표준손익계산서	개발분	50,000,000							50,000,000	
		공통분	105,623,000	100,489,722	95.14					5,133,278	4.86
		계	155,623,000	100,489,722						55,133,278	
	세무조정	개발분									
		공통분	20,000,000	19,028,000	95.14					972,000	4.86
		계	20,000,000	19,028,000						972,000	
(8)각 사업년도 소득	표준손익계산서		246,707,420	117,652,111						129,055,309	
{{(5)-(6)-(7)}	세무조정		42,785,200	32,649,839						10,135,361	
	계		289,492,620	150,301,950						139,190,670	
(9)이월결손금											
(10)비과세 소득											
(11)소득공제액											
{{(8)-(9)-(10)-(11)}			289,492,620	150,301,950						139,190,670	

1.표준손익계산서구분경리 2.세무조정소득구분 3.공통손익의 안분기준 4.표준손익/세무조정 구분명세조회 5.소득구분계산서												
①과목	②구분	③합계	제조업	감면분 또는 합병 승계사업해당분 등						기타분		비고
				④금액	⑤비율	④금액	⑤비율	④금액	⑤비율	⑥금액	⑦비율	
(1)매출액		2,520,000,000	2,320,000,000	92.06						200,000,000	7.94	
(2)매출원가		2,035,604,380	1,985,620,000	97.54						49,984,380	2.46	
(3)매출총손익		484,395,620	334,380,000							150,015,620		
{{(1)-(2)}												
(4)판매비와 관리비	개발분	-30,000,000	-30,000,000	100.00								
	공통분	102,700,000	97,708,780	95.14						4,991,220	4.86	개발손금
	계	72,700,000	67,708,780							4,991,220		
(5)영업손익		411,695,620	266,671,220							145,024,400		
{{(3)-(4)}												
(6)영업외 수익	개발분	50,000,000								50,000,000	100.00	
	공통분	3,420,000	3,148,452	92.06						271,548	7.94	매출액
	계	53,420,000	3,148,452							50,271,548		
(7)영업외 비용	개발분	50,000,000								50,000,000	100.00	
	공통분	125,623,000	119,517,722	95.14						6,105,278	4.86	개발손금
	계	175,623,000	119,517,722							56,105,278		
(8)각 사업년도 소득		289,492,620	150,301,950							139,190,670		
{{(5)-(6)-(7)}												
(9)이월결손금												
(10)비과세 소득												
(11)소득공제액												
{{(8)-(9)-(10)-(11)}		289,492,620	150,301,950							139,190,670		

8. 과세표준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여

야 하며 구분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9 본 서식에서 표준손익계산서 및 세무조정사항이 변경된 경우 관련 내용을 수정반영하면 자동으로 소득구분계산서가 작성된다.

2. 공제감면추납세액

1)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공공차관도입관련법인세감면, 재해손실세액공제

공공차관 도입관련 외국법인의 기술 용역대가 수령에 따른 감면세액과 법인세 법상 재해손실세액공제를 계산하는 서식으로서 법인세법상의 재해손실세액공제는 다음과 같다.

법인의 각 사업년도 중에 천재·지변 및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총자산 가액(토지는 제외하고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법인에게 있을 때에는 이를 포함함)의 20/10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공제세액의 계산

$$\left[\text{산출세액} + \text{가산세액} - \begin{array}{l} \text{다른 법률의} \\ \text{규정에 의한} \\ \text{공제세액 및 감면세액} \end{array} \right] \times \frac{\text{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 \text{자산의 가액}}{\text{상실전 사업용 총자산가액} \\ \text{(토지제외)}}$$

(2) 재해손실자산의 계산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며 예금 및 매출채권 등은 당해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재해상실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부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가액으로 한다.

(3) 공제대상세액

재해발생일에 있어서의 미납부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산금을 포함한다)와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세법에 의

한 무기장가산세 국세기본법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가산세가 대상세액이다.

(4) 세액공제한도

재해손실세액공제는 당해 법인의 상실된 자산가액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5) 세액공제신청기한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된 세액의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발생일로 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134]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① 구 분		② 계 산 기 준		③ 계 산 명 세		④ 공제감면세액	
(1)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법인세감면	감면소득		산출세액				
	산출세액 X _____		감면세액				
	과세표준금액		과표금액				
(2) 재해손실세액공제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미납세액				
	미납부 또는 납부할세액 X _____		상실가액				
	사업용 자산총액		자산총액				
(3)							
계							
⑤							
(1) 재해내용			미납부 또는 납부할	구분			
(2) 재해발생일	----		세액명세	세액			
(3) 공제신청일	----						

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조·건설·도/소매업 등 일정한 업종⁷⁵⁾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의 감면율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①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경우

감 면 업 종	수도권 내외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감면율
도매업 등 영위사업장	소기업에 한하여 10%
지식기반산업 영위사업장	소기업은 20%(중기업 10%)
위 외의 업종 영위사업장	소기업에 한하여 20%

75) 적용대상업종은 다음과 같다.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업에 속하는 제외한다),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¹⁾,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¹⁾,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②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감 면 업 종	수도권 내의 사업장 감면율	수도권 외의 사업장 감면율
도매업 등 ^{주1)}	소기업에 한해 10%	소기업 10%(중기업 5%)
지식기반산업 ^{주2)}	소기업20%(중기업 10%)	소기업 30%(중기업 15%)
위 외의 업종	소기업에 한해 20%	소기업 30%(중기업 15%)

주1) 도매업등이란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을 말한다.

주2) 지식기반산업은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을 의미한다.

여기서 소기업이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⁷⁶⁾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① 제조업을 주된 사업: 100명 미만
- ②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 50명 미만
- ③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 10명 미만인

나. 감면세액의 계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text{감면(면제)세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소득}}{\text{과세표준}} \times \text{감면비율}$$

다.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여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

76)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한 수로 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데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 •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북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 연천군 • 포천시 • 양주시 • 김포시 • 화성시 •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송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술리·내강리만 해당한다) •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군 • 광주시 •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울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2)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① 업종요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건설업·음식점업 등 일정한 업종⁷⁷⁾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당시부터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요건

중소기업의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77) 일정한 업종이란 다음의 업종을 말한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엔지니어링사업¹⁾, 물류산업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참고」 한국표준산업분의 업종구분 단계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로 5단계로 구분

● 동일업종 등의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법인 -1086, 2009.09.30)

신설법인 B와 A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로서, 사업장까지 같으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③ 창업중소기업의 지역요건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법인인 경우에 적용한다.

④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과 달리 지역의 제한은 없으나 벤처기업⁷⁸⁾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15.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

78) 벤처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 ②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본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세액감면

①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범위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고효율제품 등⁷⁹⁾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적용요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세액감면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⁸⁰⁾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적용제외

해당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79) 고효율제품등이란 다음의 제품을 말한다.

-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80)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text{해당 사업 발생소득금액} =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text{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times \text{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 등의 매출액}$$

다.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여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다.

(3) [세무사랑2] 운영방법

(주)한국세무는 수도권내의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최대한 받고자 할 경우 최대감면금액은 얼마인가?(최저한세는 고려하지 아니하며 소득구분계산서상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구 분	각사업연도소득	도매업소득	건설업소득	과세분소득
금 액	350,000,000	50,000,000	250,000,000	50,000,000
산출세액	60,000,000			

(해답 및 계산과정)

최저한세 고려하기 전의 감면세액은 9,428,570원이다.

도매업 관련 감면세액 = 60,000,000 × 50,000,000/350,000,000 × 10%
= 857,142

건설업 관련 감면세액 = 60,000,000 × 250,000,000/350,000,000 × 20%
= 8,571,428

동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므로 농어촌특별세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구분 (F2-구분도움)	산출세액	감면소득	과세표준	외국인투자 비율(%)	감면율 (%)	①감면대상 세액	④최저한세 적용 감면배제금액	⑤감면세액 (①-④)	⑥전용사유 발생일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60,000,000	50,000,000	350,000,000		10	857,142		857,142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60,000,000	250,000,000	350,000,000		20	8,571,428		8,571,428	
3									

※ [①구분]란에는 [F2코드]기능을 이용하여 적용받고자하는 감면의 종류를 선택한 후 [불러오기]를 통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명세서]상의 산출세액과 과세표준이 자동으로 반영하고 [감면소득]란에 소득구분계산서상의 감면소득을 감면업종별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 감면세액 중 최저한세 계산시 감면이 배제되는 세액이 있다면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 입력하여 다시 작성한다.

사 계

(주)한국세무는 수도권내의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최대한 받고자 할 경우 최대감면금액은 얼마인가?(최저한세는 고려하지 아니하며 소득구분계산서상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구 분	각사업연도소득	도매업소득	건설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금 액	250,000,000	△50,000,000	250,000,000	50,000,000
산출세액	31,000,000			

풀 이

당해연도에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감면대상 소득인 건설업소득에서 차감하며, 차감 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한다.(법인 -338, 2010.04.07)

건설업 관련 감면세액=31,000,000×200,000,000/250,000,000×20%=4,960,000

동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므로 농어촌특별세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최저한세 고려하기 전의 감면세액은 4,960,000원이다.

- 겸업법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시 결손금액 통산 여부(법인 -338, 2010.04.07, 법규 -1062, 2007.03.09, 재조특 -167, 2009.02.13외 다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매업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감면대상 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2007.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특법상 중소기업업종과 세액공제감면 대상업종비교]

중소기업 업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	○
건설업	○	○	○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 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유흥 음식점업은 제외)	○	△1	△1
광고업	○	○	○
광업	○	○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	○
×	×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	×	그밖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	×
도매 및 소매업	○	×	○
물류산업	○	○	○
방송업	○	○	○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	○
수탁생산업	△2	×	
어업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	×
엔지니어링사업	○	○	○
연구개발업	○	○	○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제외)	△3	○	○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	×
음식점업		○	×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	×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4	×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	×	○
일반도시가스사업		×	○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	×
작물재배업	○	×	농업

전기통신업	○	○	○
전문디자인업	○	○	○
전시 및 행사대행업		○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	○
정보서비스업	○	△5	○
제조업(의제제조업 포함)	○	○	○
직업기술분야학원	○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6	×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7	△7	○
축산업	○	×	
출판업	○	○	○
컴퓨터프로그래밍	○	○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	○
포장 및 충전업	○	×	○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포함)	○	×	○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	×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	×	○
연구개발지원업	○	×	○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	×	○
사회교육시설	○	×	○
직원훈련기관	○	×	○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	○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	×	○
주택임대관리업	○	×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	×
×	×	×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	×	×	보안시스템서비스업
×	×	×	컴퓨터학원
×	×	×	수리업
×	×	×	기타개인서비스업
×	×	×	항공운송업
<p>△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2: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3: 영화·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 영화·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 △4: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 △5: 뉴스제공업 제외 △6: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7: 자영예술가는 제외</p>			

3)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서식으로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본 조정명세서에서는 세액공제액만을 기록하며 구체적인 계산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에서 한다.

(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가. 세액공제 요건

중소기업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규상장 중견기업⁸¹⁾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 자산에 2015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4%)를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나. 세액공제의 배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⁸²⁾)는 제외한다)으로서 증설

8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① 중소기업이 아닐 것
- ② 제2조 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③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¹⁾에 적합할 것
- ④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1천500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82) ① “디지털방송장비”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편집·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에 한한다)를 말한다.

②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

투자⁸³⁾에 해당하는 것은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정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⁸⁴⁾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에 대한 증설투자 및 대체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여부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다.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일정한 업종⁸⁵⁾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는 경우 고용창출투

설비·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 83)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② ①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84) “일정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 ①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 제3항의 제2중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 85) 일정한 업종이란 다음의 업종을 말한다.
-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등

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①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
- ②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와 선박
- ③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 ④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⁸⁶⁾
- ⑤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써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 ⑥ 도매업·소매업·물류산업 또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써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⑦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써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 ⑧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써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
- ⑨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써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 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하거나 투자하는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이나 미술관,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 과학관의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86)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기본공제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text{세액공제액} = \text{기본공제금액} + \text{추가공제금액}$$

① 기본공제금액

중견기업 외 대기업	중견기업 ⁸⁷⁾		중소기업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	
배제	투자금액×1%	투자금액×2%	투자금액×3%

② 추가공제금액

구 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그 외의 기업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
일반업종	투자금액×4%	투자금액×5%	투자금액×6%	투자금액×4%
서비스업종	투자금액×5%	투자금액×6%	투자금액×4%	투자금액×5%

단, 추가공제금액이 $[(\text{㉑})+(\text{㉒})+(\text{㉓})-(\text{㉔})]$ 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㉑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⁸⁸⁾의 졸업생 수⁸⁹⁾ × 2천만원

87)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① 중소기업이 아닐 것
- ② 제2조 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③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적합할 것
- ④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88)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다음의 학교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각종학교(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학교만 해당한다)

89)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

- ㉠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⁹⁰⁾ × 1천500만원
-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에 따른 졸업생 수 - ㉠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만원
- ㉢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 공제받는 금액

다. 중복적용배제

- ① 동일한 사업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또는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②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한 자산이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구분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업종	조특법 상 중소기업 업종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 중 일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 적용배제 대체투자: 적용가능	적용배제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적용	적용
수도권 밖	적용	적용

- ③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

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 90) ① 청년근로자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제4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다만, 그 청년근로자가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장애인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상시근로자 수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인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4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와 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 ③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4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와 제2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라.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다.

(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가. 세액공제요건

내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①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나. 세액공제액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의 금액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text{세액공제액} = \text{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91)} \times 5\%$$

(중소기업과 중견기업⁹¹⁾은 10%)

①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다. 기타사항

- 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감면과 중복적용받을

9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① 중소기업이 아닐 것
- ② 제2조 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③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적합할 것
- ④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수 있다.

- ②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다.

(4)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가. 적용대상법인

소비성서비스업 등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이 적용대상이다.

-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③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나. 세액공제액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 다음의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5.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text{세액공제} = \text{직전연도보다 증가한 근로자 인원수}^{\text{㉑}} \times 200\text{만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⁹²⁾은 500만원)

㉑ 직년연도보다 증가한 근로자 인원수는 다음 중 가장 작은 인원수를 말한다.

- ① 직전연도보다 청년정규직근로자수가 증가한 인원수
- ② 직전연도보다 전체정규직근로자가 증가한 인원수
- ③ 직전연도보다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인원수

다. 기타사항

- ① 동일한 사업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

92)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① 중소기업이 아닐 것
- ② 제2조 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③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적합할 것
- ④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다.

(5) [세무사랑2] 운영방법

(주)한국세무는 수도권성장권리권역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액을 최대한 받고자 할 경우 적용할 세액공제와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최저한세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투자자산내역
 기계장치: 300,000,000원, 공장건물 신축: 500,000,000원
- 상시근로자 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10명,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12명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 인 근로자는 없다.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구분	계산기준	계산명세		공제대상액
		투자액	공제율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 3/100	300,000,000	3	9,000,000
기업의 어려움대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환어음 등 지급금액-약속어음결제금액) × ((4.5)/1000, 15/10000) * 산출세액의 10% 한도	F4-계산내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세액공제	출연금 × 7/100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14.1.1~'14.12.31.: 발생액 × 3-4(8, 10, 15, 20, 25, 30)/100 또는 2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 × 40(50)/100	F4-계산내역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15.1.1. 이후: 발생액 × 2-3(8, 10, 15, 20, 25, 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40(50)/100	F4-계산내역		
연구·인력개발비비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 3(5, 10)/100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허권등록취득금액 × 7/100 * 법인세의 10% 한도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가치금액 × 10/100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매입가액 × 10/100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 7(3)/100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 3(7)/100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 3(5, 10)/100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 3(5, 10)/100			
의약품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 3(5, 10)/100			
임시투자세액공제	10.12.31 이전: 투자금액 × 7/100 11.1.1~12.31: 투자금액 × 4%, 5%	F4-계산내역		

※ 본 서식은 [1.세액공제(1)]과 [2.세액공제(2)]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찾아 직접 세액공제액 등을 입력하여 세액공제를 계산하며 세부내역이 필요한 경우 [F4-계산내역]에 관련 자료를 입력하여 계산하거나 별도의 서식에서 작성된 내역을 [불러오기]기능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3529] - 정기 -

공제세액계산(1) 공제세액계산(2) 납부세액 및 이월세액현황 사업용자산 투자 명세

1.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1. 기본공제금액		(8)	(9)	(10)투자금액	(11)공제율	(12)공제세액((10)X(11))
법인구분	지역구분					
중소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300,000,000	4%	12,000,000
중견기업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2%	
	수도권 밖				3%	
일반기업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2%	
	수도권 밖				3%	
계						

2. 추가공제금액((12)와(25)중 작은수)

① 투자금액에 따른 공제세액		(10)투자금액	(11)공제율	(14)인당공제금액	(15)공제한도((13)X(14))
법인구분	지역구분				
중소·중견·일반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300,000,000	3%		9,000,000
② 고용증가					
(13)상시근로자 구분에 따른 인원수					
(16)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12	
(17)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10	
인원에 따른					
(18)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단, (18)←(16)-(17))				2천만원	(21)
공제한도					
(19)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청년 근로자 수(단, (19)←(16)-(17)-(18))				1천5백만원	(22)
(20)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16)-(17)-(18)-(19))				2	1천만원
(24)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금액 (=40)					(23)
(25)추가공제한도 계((21)+(22)+(23)-(24))					20,000,000
※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12)-(25)와 0 중 큰 수)					(26)

1. 해당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8)+(9))	21,000,000	11. 해당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III. 공제세액계(I + II)	21,000,000
---------------------------------	------------	---	--	----------------------	------------

세액공제 조정명세서(3) [3136] - 정기 -

1. 세액공제(1) 2. 세액공제(2) 3. 당기공제 및 이월액계산

(105)구분	(106)사업연도	요공제액				당기공제대상세액			
		(107)당기분	(108)이월분	(109)당기분	(110)1차연도	(111)2차연도	(112)3차연도	(113)4차연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015	21,000,000		21,000,000					
1									
	소계	21,000,000							
2									
	소계								
합 계		21,000,000		21,000,000					

최저배제

사업연도	적용배제 이월액 및 당기금액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서식적용(F12) 확인(Tab) 삭제(F5) 취소(ESC)

※ 계산된 세액공제액은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에서 당기 세액공제액의 당기공제여부, 최저한세 적용배제여부, 전기이월세액공제액의 당기공제여부 등을 판단 반영하여 작성한다.

4)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외국투자기업의 감면세액계산서식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세액의 계산시 작성하는 서식으로서 법인세신고시 신고영업과 신고외영업에 대하여 소득구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감면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3137] vwp검색									
종료 도움 코드 삭제 전체삭제 인쇄 저장 불러오기									
1 감면세액의 계산(「조세특례제한법」)									
1. 증자 횟수	과세표준금액			5. 산출세액	6. 감면대상 사업 소득비율(2/4)	7. 감면비율 (23)	8. 감면세액 (5x6x7)		
당초	2. 감면대상사업	3. 비감면사업	4. 계						
합계									
2 감면비율의 계산									
9. 증자 횟수	10. 구분	11. 증자 등기일자	12. 등록 일자	증자자본금(합병후 자본금)		감면기간	18. 감면율	19. 감면대상외국투자자 자본금[(14-15)×18]	20.
당초				13. 총액	14. 외국투자자자본금	15. 감면배제자본금			
합 계									
3 감면한도·감면의 제한 및 당기 감면세액의 계산									
투자금액기준한도계산					고용기준한도계산				
24. 증자 횟수	25. 외국인 투자누계액	26. 한도율	27. 투자기준 한도액(25x26)	28. 해당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	29. 한도액 [(28x1천만원)]	30. 외국인 투자누계액(25)	31. 한도액 [(30x20%)]	32. 고용기준한도액 Min(29, 31)	33. 감면한도 세액(27+32)
당초									
합계									
3-2. 감면의 제한(「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4항)									
37. 종전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가액			38. 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39. 종전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제사용비율(37/38)		40. 감면된 제한이 적용된 감면대상세액[8×(1-(39))]		41. 당기감면세액 [Min(36, 40)]

5)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외국납부세액공제

이 서식은 법인세법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거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전액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text{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text{법인세과세표준}}$$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3138] * 정기 *

종료 도움 코드 삭제 전체삭제 인쇄 저장 불러오기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선택한 방법의 []에 V표 합니다.)
 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2호)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에서 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원) 크 계

(2)국가명	(2)국가 코드	당기 공제대상 세액		(6)국가별 공제한도	(7)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8)이월배제액	(9)차기이월액
		(4)전기이월액	(5)당기 외국 납부세액 발생액				
합 계							

3 손금산입 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에서 손금산입을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원)

구분	금액
(10)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11) 매출원가 계상	
(12)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	
(13) 제조원가에 계상	
(14) 그 밖의 계정과목에 계상	
합계 [(10)+(11)+(12)+(13)+(14)]	

4 전기이월액 안분방법 (선택한 방법의 []에 V표 합니다.)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6068호, 2015.2.3.) 제15조제1항제1호]
 국가별 외국법인세액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6068호, 2015.2.3.) 제15조제1항제2호]

5 전기이월액 국가별 안분명세 (단위: 원) 크 계

(16)국가명	(2)국가 코드	(18)전기이월액	안분 기준		(21)국가별 안분비율(%)	(22)국가별안분 전기이월액 [(18)x(21)]
			(19)국가별 국외원천소득	(20)국가별 외국법인세액		
합계						

6)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이자상당가산액계산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 세액공제 감면제도는 조세의 경제·사회 정책적 목적 하에 세부담의 직·간접적 경감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그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사후관리요건에 위배되는 경우 당초의 공제세액 등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납부하거나 추징하게 된다. 이때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text{이자상당가산액} = \text{감소된 법인세 상당액} \times \text{기간}^{\text{①}} \times 3/10,000$$

①기간 : 공제감면 등을 한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이자상당가산액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상의 [133.감면분 추가납부세액]란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1. 구 분	2. 손금산입 연도	3. 추가납부대상 준비금환입액	4. 공제	5. 차감액 (3-4)	6. 법인세 상당액	7. 이 율 (일반)	8. 기 간	9. 법인세추가 납부액 (6×7×8)
연구 및 인력개발비	2012	10,000,000		10,000,000	1,000,000	3/10,000	1,094	328,200
계		10,000,000		10,000,000	1,000,000			328,200

※ [6.법인세상당액]은 준비금 설정한 연도의 법인세액의 차액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직접 계산하여 입력한다.

$$\text{법인세상당액} = \text{준비금 설정 연도의 산출세액} - (\text{설정연도의 과세표준} - \text{준비금 환입액}) \times \text{세율}$$

※ [8.기간]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3148] * 정기 *

☑종료 ☑도움 ☑코드 ☑조정등록 ☑삭제 ☑전체삭제 ☑잔액조회 ☑인쇄 ☑저장 ☑블러오기

최저한세배제세액감면 최저한세배제세액공제 최저한세적용세액감면 최저한세적용세액공제 면제 **비과세,이월과세추가납부액**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①구 분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④금 액	
비과세 면제	(101)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제13조	601		
	(102)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제22조	61A		
	(10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	604		
	(104)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	제104조의2제1항	605		
	(105)		606		
	(107)합 계		610		
	③구 분		④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⑤이월과세액
(176)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1조	661		
(177)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	662		
(178)			663		
(180)합 계			667		
⑥구 분		⑦근거법 조항	코드	⑧대 상 금 액	⑨세 액
「조세 특례 제한 법」	(181)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1		
	(182)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2		
	(183)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3		
	(184)기 타		775		
	(185)소 계		780		328,200
「법인 세법」	(186)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5항	781		
	(187)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782		
	(188)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97조제3항	783		
	(189)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60조제8항	786		
	(190)기 타		785		
	(191)소 계		784		

[법인조정-공제감면세액조정-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3072] * 정기 *

☑종료 ☑코드 ☑삭제 ☑원장조회 ☑잔액조회 ☑인쇄 ☑저장 ☑블러오기

①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101.결산서상 당기순손익 01				
	소득조정 102.익금산입 02				
	금액 103.순금산입 03				
	104.차가감소득금액(101+102-103) 04				
	105.기부금한도초과액 05				
	106.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107.각사업연도소득금액(104+105-106) 06				
② 과세표준계산	108.각사업연도소득금액(108=107)				
	109.이월결손금 07				
	110.비과세소득 08				
	111.소득공제 09				
	112.과세표준(108-109-110-111) 10				
	159.선박표준이익 55				
③ 산출세액	113.과세표준(113=112+159) 56				
	114.세율 11				
	115.산출세액 12				
	116.지점유보소득(법제96조) 13				
	117.세율 14				
	118.산출세액 15				
	119.합계(115+118) 16				
납부세액계산	120.산출세액(120=119)				
	④ 121.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 세액 17				
	122.차감세액 18				
	123.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 감면 세액 19				
	124.가산세액 20				
	125.가감계(122-123+124) 21				
	할부세액계산	126.중간예납세액 22			
		127.수시부과세액 23			
		128.원천납부세액 24			
		129.간접회사등외국납부세액 25			
		130.소계(126+127+128+129) 26			
		131.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132.합계(130+131) 28			
133.감면분추가납부세액 29		328,200			
134.차가감납부할세액(125-132+133) 30		328,200			
⑤ 토지등양도소득, ⑥ 미환류소득 법인세계산 (TAB로 이동)					
세액계산	151.차가감납부할세액계(134+150) 46		328,200		
	15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 57				
	153.분납세액계산법위액(151-124-133-145-152+131) 47				
	분납할세액	154.현금납부 48			
		155.물납 49			
		156.계(154+155) 50			
	차감납부세액	157.현금납부 51		328,200	
		158.물납 52			
160.계(157+158) [160=(151-152-156)] 53			328,200		

※ [133.감면분추가납부세액]은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상의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7) 소득공제조정명세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계산 공제하기 위한 서식으로서 다음과 같다.

- ①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② 외국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③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 ④ 부동산투자회사의 국민주택 임대소득공제
- ⑤ 축산업소득공제

[3143] 소득공제 조정명세서							
종료 도움 전체삭제 인쇄 저장 vvp검색							
구분	근거법조항	계산기준	계산기준금액	공제율	소득공제대상금액 (④×⑤)	최저한세액용 감면배제금액	소득공제액 (⑥-⑦)
조세특례제한법	(101) 국민주택임대 소득공제	법 제55조의2 제4항	해당 소득금액	50/100			
	(102) 주택임대소득공제 (연면적149㎡이하)	법 제55조의2 제5항	해당 소득금액	100/100			
	(103)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법 제30조의3	임금 삭감액	50/100			
(108)계(101 ~ 107)							
법인세법	(109) 배당금액소득공제	법 제51조의2	배당금액	100/100			
	(110) 외국법인외국항행 소득공제	법 제91조	외국 항행소득				
(112)계(109 ~ 111)							
(113)합계(108 + 112)							

8) 연구 및 인력개발비발생명세서

(1) 개념정리

가. 적용대상

내국법인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나. 세액공제액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은 일반법인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구 분	내 용
중소기업	세액공제액 = 해당 연도 발생액 × 30%
일반법인	세액공제액 = 해당 연도 발생액 × 20%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위 ①)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포함)

내국인의 연구 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다음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① 증가금액 기준 세액공제

$$\left(\begin{array}{l} \text{해당과세연도의} \\ \text{일반연구인력개발비} \end{array} - \begin{array}{l} \text{직전과세연도에 발생한} \\ \text{일반연구인력개발비} \end{array} \right) \times \begin{array}{l} 40\% \\ \text{(중소기업)} \\ 50\% \end{array}$$

93) 직전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2013.1.1부터 2013.12.31까지 개시하는 과세연도까지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으로 하고 2014.1.1부터 2014.12.31까지 개시하는 과세연도까지는 '2년간 발생한 일반연구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으로 한다.

② 당기 발생금액 기준 세액공제

구 분	공 제 율
중소기업의 경우(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25%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의 기업	15%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4~5년차의 기업	10%
중견기업 ⁹⁴⁾ 의 경우	8%
일반 비중소기업	$2\% + \frac{\text{연구 인력개발비}}{\text{해당과세연도의 수입금액}} \times \frac{1}{2}$ (3%한도)

다만,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기발생기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여기서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frac{\text{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text{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 (그 수가 4이상인 경우 4로 한다)}} \times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사례

(주)코리아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 내역이다. 사례별로 직전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금액을 계산하시오.

94)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견기업을 말한다.

- ㉠ 중소기업이 아닐 것
- ㉡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닐 것
-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구 분	20×6년	20×7년	20×8년	20×9년	총계
Case1	150,000	256,000	0	125,000	531,000
Case2	0	150,000	256,000	125,000	531,000
Case3	-	125,000	350,000	125,000	600,000

※ Case1은 20×6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으며, Case2는 20×7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지출되었으며, Case3은 20×7년 7월 1일 사업을 개시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지출되었다.

해답

Case1) 연평균액 = $531,000 \div 3 \times 12/12 = 177,000$

Case2) 연평균액 = $531,000 \div 3 \times 12/12 = 177,000$

Case3) 연평균액 = $600,000 \div 3 \times 12/12 = 200,000$

다. 기타사항

- ① 다른 세액공제 및 감면과 중복적용가능하다.
- ②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다.
- ③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된다.
- ④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5년간 이월공제된다.

(2) [세무사랑2] 운영방법

다음 자료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1. 회사는 일반기술개발을 위한 인건비로 100,000,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손익계산서상 경상연구개발비계정으로 반영되어 있다.(인원수: 5명)
2. 당해 법인은 중소기업이며 지출된 연구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3.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 지출액은 다음과 같다.

2011년	70,000,000	2012년	50,000,000
2013년	60,000,000	2014년	70,000,000

(해답 및 계산과정)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25,000,000(최대액으로 결정함)

- ① 4년간 평균지출액 $= (70,000,000 + 50,000,000 + 60,000,000 + 80,000,000) / 4$
 $= 65,000,000$
- ② 직전지출액 = 70,000,000
- ③ 당기발생액기준 세액공제 = 당기 발생액 $\times 25\% = 100,000,000 \times 25\% = 25,000,000$
- ④ 증가금액기준 세액공제액 = (당기발생액 - 직전지출액) $\times 50\%$
 $= (100,000,000 - 70,000,000) \times 50\% = 15,000,000$

1. 발생명세 및 증가발생액계산		2. 공제세액		3. 연구소/전담부서 현황		4. 해당연도 연구·인력개발비 발생명세																																			
<p>1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rowspan="2">계정과목</th> <th colspan="4">자체연구개발비</th> <th colspan="2">기타</th> </tr> <tr> <th>인원</th> <th>(6)금액</th> <th>건수</th> <th>(7)금액</th> <th>건수</th> <th>(8)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 경상연구개발</td> <td>5</td> <td>100,000,00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합계</td> <td>5</td> <td>100,000,000</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계정과목	자체연구개발비				기타		인원	(6)금액	건수	(7)금액	건수	(8)금액	1 경상연구개발	5	100,000,000					2							합계	5	100,000,000				
계정과목	자체연구개발비				기타																																				
	인원	(6)금액	건수	(7)금액	건수	(8)금액																																			
1 경상연구개발	5	100,000,000																																							
2																																									
합계	5	100,000,00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계정과목</th> <th>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건수</th> <th>9. 금액</th> <th>(10)인력개발비</th> <th>(11)맞춤형교육비용</th> <th>(12)현장훈련 수당 등</th> <th>(13)총 계</th> </tr> </thead> <tbody> <tr> <td>1 경상연구개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100,000,000</td> </tr> <tr>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합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100,000,000</td> </tr> </tbody> </table>								계정과목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건수	9. 금액	(10)인력개발비	(11)맞춤형교육비용	(12)현장훈련 수당 등	(13)총 계	1 경상연구개발						100,000,000	2							합계						100,000,000						
계정과목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건수	9. 금액	(10)인력개발비	(11)맞춤형교육비용	(12)현장훈련 수당 등	(13)총 계																																			
1 경상연구개발						100,000,000																																			
2																																									
합계						100,000,000																																			
<p>2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14)해당과세연도 발생액(=(13))</th> <th>(15)직전4년 발생액 계 (16+17+18+19)</th> <th>(16)직전 1년 2014-01-01 ~ 2014-12-31</th> <th>(17)직전 2년 2013-01-01 ~ 2013-12-31</th> <th>(18)직전 3년 2012-01-01 ~ 2012-12-31</th> <th>(19)직전 4년 2011-01-01 ~ 2011-12-31</th> </tr> </thead> <tbody> <tr> <td>100,000,000</td> <td>250,000,000</td> <td>70,000,000</td> <td>60,000,000</td> <td>50,000,000</td> <td>70,000,000</td> </tr> <tr> <td>(20)직전4년간 연평균 발생액</td> <td>62,500,000</td> <td>(21)직전3년간 연평균 발생액</td> <td>60,000,000</td> <td>(22)직전2년간 연평균 발생액</td> <td>70,000,000</td> </tr> <tr> <td colspan="5">(23)증가발생액 (2013년 (14)-(21), 2014년 (14)-(22), 2015년 이후 (14)-(16))</td> <td>30,000,000</td> </tr> </tbody> </table>								(14)해당과세연도 발생액(=(13))	(15)직전4년 발생액 계 (16+17+18+19)	(16)직전 1년 2014-01-01 ~ 2014-12-31	(17)직전 2년 2013-01-01 ~ 2013-12-31	(18)직전 3년 2012-01-01 ~ 2012-12-31	(19)직전 4년 2011-01-01 ~ 2011-12-31	100,000,000	250,000,000	70,000,000	60,000,000	50,000,000	70,000,000	(20)직전4년간 연평균 발생액	62,500,000	(21)직전3년간 연평균 발생액	60,000,000	(22)직전2년간 연평균 발생액	70,000,000	(23)증가발생액 (2013년 (14)-(21), 2014년 (14)-(22), 2015년 이후 (14)-(16))					30,000,000										
(14)해당과세연도 발생액(=(13))	(15)직전4년 발생액 계 (16+17+18+19)	(16)직전 1년 2014-01-01 ~ 2014-12-31	(17)직전 2년 2013-01-01 ~ 2013-12-31	(18)직전 3년 2012-01-01 ~ 2012-12-31	(19)직전 4년 2011-01-01 ~ 2011-12-31																																				
100,000,000	250,000,000	70,000,000	60,000,000	50,000,000	70,000,000																																				
(20)직전4년간 연평균 발생액	62,500,000	(21)직전3년간 연평균 발생액	60,000,000	(22)직전2년간 연평균 발생액	70,000,000																																				
(23)증가발생액 (2013년 (14)-(21), 2014년 (14)-(22), 2015년 이후 (14)-(16))					30,000,000																																				

- ※ 본 서식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명세서]로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비명세서]는 별도의 서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 ※ 「3. 연구소/전담부서 현황」란에 관련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다.
- ※ [4. 해당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명세]란에는 당해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기록한다.

1. 발생명세 및 증가발생액계산		2. 공제세액		3. 연구소/전담부서 현황		4. 해당연도 연구·인력개발비 발생명세	
3	공제세액						
해당 연도	중소기업	(24)대상금액 (=13) 100,000,000	(25)공제율 25%			(26)공제세액 25,000,000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이후 5년내기업	(27)대상금액 (=13)	(28)유예기간 종료연도	(29)유예기간 종료이후년차	(30)공제율	(31)공제세액	
총발생금액	중견기업	(32)대상금액 (=13)	(33)공제율 8%			(34)공제세액	
	일반기업	(35)대상금액 (=13)	공제율 (36)기본율 2% (37)추가 (38)계			(39)공제세액	
증가발생금액 공제		(40)대상금액 (=23) 30,000,000	(41)공제율 50%	(42)공제세액 15,000,000		*공제율 중소기업 : 50% 중소기업외 : 40%	
(43)해당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26과 42 중 선택)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이후 5년내 기업(31과 42 중 선택) 중견기업(34와 42 중 선택) 일반기업(39와 42 중 선택)			25,000,000	* 최저한세 설정 <input checked="" type="radio"/> 제외 <input type="radio"/> 대상	

※ [2.공제세액]에서 법인의 규모(중소기업, 중소기업유예기간이후5년내, 중견기업, 일반기업)를 선택하여 연구인력개발비의 발생액을 입력한 후 [해당연도에 공제받을 세액]을 선택한다.

※ 「최저한세 설정」란에 「제외, 대상」을 선택하면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서식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세액공제 조정명세서(3) [3136] * 정기 *

1.세액공제(1) 2.세액공제(2) 3.당기공제 및 이월액계산

구분	계산기준	계산명세		공제대상세액
		투자액	공제율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 3/100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환어음 등 지급금액-약속어음결제금액) × ((4.5)/1000, 15/10000) *산출세액의 10% 한도	F4-계산내역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자금출연세액공제	출연금 × 7/100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14.1.1~'14.12.31.: 발생액×3~4(8,10,15,20,25,30)/100 또는 2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40(50)/100	F4-계산내역		25,000,000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15.1.1. 이후: 발생액×2~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40(50)/100	F4-계산내역		
연구·인력개발비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 3(5,10)/100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허권등록취득금액 × 7/100 *법인세의 10% 한도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가치금액 × 10/100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매입가액 × 10/100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 7(3)/100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 3(7)/100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 3(5,10)/100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 3(5,10)/100			
의약품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 3(5,10)/100			
임시투자세액공제	10.12.31 이전 : 투자금액 × 7/100 11.1.1~12.31 : 투자금액 × 4%, 5%	F4-계산내역		

1.세액공제(1)		2.세액공제(2)		3.당기공제 및 이월액계산				
(105)구분	(106)사업연도	요공제액			당기공제대상세액			
		(107)당기분	(108)이월분	(109)당기분	(110)1차연도	(111)2차연도	(112)3차연도	(113)4
연구·인력개발비세액	2015	25,000,000		25,000,000				
1								
	소계	25,000,000		25,000,000				
2								
	소계							
합	계	25,000,000		25,000,000				

공제구분

전체 | 구분명

여기를 클릭하여 검색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기업의 어려움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금융출연 세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제외)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적용)
- 연구·인력개발비비투자세액공제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확인(Enter) 취소(Esc)

※ [3. 당기공제 및 이월액계산]에 세액공제별로 당기 공제분을 반영하고 공제받은 세액이 최저한세배제대상이라면 [최저배제]기능을 이용하여 구분표시하여야 최저한세계산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구분에서 최저한세적용대상과 제외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어 「최저배제」기능과 상관없이 최저한세 적용여부를 선택한다.

9)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 개요

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30의4)

$$\text{세액공제액} = \text{①} + \text{②}$$

① 청년 상시근로자⁹⁵⁾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95) 청년 상시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제2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년 외 상시근로자는 청년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 중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청년 상시근로자로 본다.

$$= \frac{\text{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⁹⁶⁾$$

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frac{\text{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⁹⁷⁾$$

(2) 사회보험의 범위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3)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계산

1)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frac{\text{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text{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times \text{사회보험료율}$$

2)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frac{\text{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text{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text{청년 상시근로자 수}} \times \text{사회보험료율}$$

96)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청년 상시근로자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

97)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서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수를 뺀 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4) 사회보험료율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

-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 ② ①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 ③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료율
-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합한 수
-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5) 상시근로자의 개념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 감사
 - ㉣ 그 밖에 ㉠부터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

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과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6)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⁹⁸⁾

$$\text{상시근로자 수} = \frac{\text{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 기간의 개월 수}}$$

$$\text{청년 상시근로자 수} = \frac{\text{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 기간의 개월 수}}$$

98) 청년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 ① 창업(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② 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 ㉠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또한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 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③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 ④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7) 이월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8) 기타사항

- 1) 최저한세 적용대상임.
- 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공제세액계산서 [3532] [정기]			
[종료] [도움] [코드] [전체삭제] [4대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 [인세] [저장] [불러오기]			
1.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가. 고용증가 인원계산			
(8)해당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9)직전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10)증가한 청년 상시 근로자 수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11)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상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1항에 따른 총 급여액	(12)해당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8)	(13)사회보험료율 (=20)	(14)사회보험료부담금((11)/(12)×(13))
			8.5911725
다. 사회보험료율			
(15)국민건강보험	(16)장기요양보험	(17)국민연금	(18)고용보험
2.995	0.1961725	4.50	0.90
			8.5911725
2.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22)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23)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24)증가한 상시 근로자 수 ((22)-(23))	(25)증가한 청년 상시 근로자 수(=(10))
		(26)증가한 청년 외 상시 근로자 수((24)-(25))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27)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외 상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1항에 따른 총 급여액	(28)해당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해당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22)-(8))	(29)사회보험료율 (=20)	(30)사회보험료부담금((27)/(28)×(29))
			8.5911725
공제세액 계산내용			
(7) 공제세액 (10)×(14)			
(21)공제세액 ((26)×(30)×0.5)			
(6) 공제세액 합계 (7)+(2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3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일자: [20]년 [3]월 [31]일 신청인: (주)한국전자 [나세무] [서초] [세무서장 귀하]			

10)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 세액합계표

(1) 개념정리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과 추가납부세액 및 조특법상 비과세·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과세이연내역을 정리한 서식으로서 앞서 작성한 각종 공제감면명세서와 공제감면추납세액계산서 등의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며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 세액합계표」에 반영된 내용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반영된다.

(2) [세무사랑2] 운영방법

【3148】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종료 ☑도움 ☑코드 ☑조정등록 ☑삭제 ☑전체삭제 ☑잔액조회 ☑인쇄 ☑저장 ☑블러오기

최저한세배제세액감면 | 최저한세배제세액공제 | 최저한세적용세액감면 | 최저한세적용세액공제, 면제 | 비과세, 이월과세추가납부액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구분	근거법조항	코드	대상세액	감면(공제)세액
(136)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및 「조특법」 제104조의6	01		
(143)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02		
(138)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특법」 제10조	66	25,000,000	25,000,000
(139)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5	94		
(140)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조특법」 제122조제1항	2C		
(141)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세액공제	「조특법」 제122조제5항	4G		
(142)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2D		
(143)		99		
(149)소계		80	25,000,000	25,000,000
(150)합계((135) + (149))		10	25,000,000	25,000,000

최저한세배제세액감면 | 최저한세배제세액공제 | 최저한세적용세액감면 | 최저한세적용세액공제, 면제 | 비과세, 이월과세추가납부액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구분	근거법조항	코드	대상세액	감면세액
(151)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제1항	111		
(152)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제2항	174		
(153)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제4항	13E		
(15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112	9,428,570	9,428,570
(155)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12조제2	179		
(156)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특법」 제21조	123		
(157)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33조제2	192		
(158)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조특법」 제33조제2	13A		

최저한세배제세액감면 | 최저한세배제세액공제 | 최저한세적용세액감면 | 최저한세적용세액공제, 면제 | 비과세, 이월과세추가납부액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구분	근거법조항	코드	전기이월액	당기발생액	공제세액
(185)임시투자세액공제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137			
(186)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6조	14N		21,000,000	21,000,000
(187)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조특법」 제29조제2	14S			
(188)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제3	14X			
(189)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제4	14Y			
(190)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제2	14H			
(191)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제4	191			
(192)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조특법」 제30조제4	14O			

최저한세배제세액감면		최저한세배제세액공제		최저한세액용세액감면		최저한세액용세액공제, 면제		비과세, 이월과세추가납부액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비과세 면제	①구 분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④금 액					
	(101)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제13조	601							
	(102)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제22조	61A							
	(10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	604							
	(104)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				제104조의2제1항	605							
	(105)					606							
	(107)합 계					610							
		③구 분			⑤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⑥이월과세액				
(176)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1조	661								
(177)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	662								
(178)					663								
(180)합 계					667								
「조세 특례 제한 법」	⑧구 분			⑨근거법 조항			코드	⑩대 상 금 액	⑪세 액				
	(181)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1	328,200	328,200					
	(182)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2							
	(183)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3							
	(184)기 타					775							
	(185)소 계					780	328,200	328,200					
「법인 세법」	(186)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	781							
	(187)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782							
	(188)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97조제3항	783							
	(189)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60조제8항	786							
	(190)기 타					785							
	(191)소 계					784							

11) 외국납부세액공제등 명세서

본 명세서는 공제감면세액계산서(5)에서 작성한 세액공제액을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와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한다면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으로 또 결산조정시 외국납부세액이 포함된 항목은 어디인지를 나타내는 표이다. 따라서 본 명세서는 자진납부세액계산시 작성하는 서식과는 별도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부표의 성격이다.

[3145] 외국납부세액공제등명세서		
<div style="text-align: right;"> 홈 도움 전체삭제 인쇄 저장 불러오기 </div>		
(단위: 원)		
1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대상		
관 련 근 거 법	외 국 납 부 세 목	금 액
1. 직접 외국 납부세액 (§ 57조 1항)		
2. 간주 외국 납부세액 (§ 57조 3항)		
3. 간접 외국 납부세액 (§ 57조 4항)		
4.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 (§ 57조 6항)		
합 계		
2 선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방법(해당란에 ○ 표시)		
5. 세액공제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세액공제 (국가별로 계산하는 방법)		
7. 손금산입 (신고 조정)		
8. 손금산입 (결산 조정)		
3 손금산입 명세 (단위: 원)		
구 분	금 액	
9.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10. 매출원가 계상		
11.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		
12. 제조원가에 계상		
13. 기타 계정과목에 계상		
합 계		

3. 조특법서식

1) 세액공제신청서

당해 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부분을 신청하는 서식이다. 이는 세액공제신청을 강제규정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 서식은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구분	근거법령	코드	공제율(%)	대상세액	공제세액
(10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4항	131			
(102) 기업의 머물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2제3항	175			
(103) 재·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4항	14H			
(104)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액종대상)	영 제9조제9항	132			
(105)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액종제외)	영 제9조제9항	166		25,000,000	25,000,000
(106)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10조제7항	134			
(107)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5항	176			
(108)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14T			
(109)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14U			
(110)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1조제4항	135			
(111)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제2항	136			
(112)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제3항	177			
(113)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제3항	14A			
(114)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4제3항	14B			
(115) 임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2항~제14항(2010년개정전)	137		21,000,000	21,000,000
(116)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14N			
(117)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후 복귀영	영 제26조의2제2항	143	10%		
(118)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5항	14X			
(119) 근로소득을 중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9조의4제13항	14V			
(120)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영 제30조의2제3항	14H			
(12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영 제30조의4제3항	14Q			
(122) 고용증대세액공제	영 제30조의4제5항	191			
(123)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세액공제	영 제94조제6항	142			
(12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영 제104조의5제6항	184			
(12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등)	영 제104조의5제6항	14J			
(126) 제3차 플류비움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	14E			
(127)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5제5항	14F			
(128) 기업운용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4항	14P			
(129)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2제2항	14R			
(130) 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141			
(131) 대학 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14K			
(13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	법 제104조의19제4항	14S			
(133) 금사업자와 구리스크립트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 등	법 제122조의4제3항	14H			
(134)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26조의7제13항	14V			
(135) 세액공제 합계		143		46,000,000	46,000,000

2) 세액감면신청서

당해 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감면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부분을 신청하는 서식이다. 이는 세액감면신청을 강제규정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 서식은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구분	근거법령	코드	①감면율	②대상세액	③감면세액	④한도종속 감면세액
(10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16항	111				
(102)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16항	174				
(103)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16항	18E				
(10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8항	112		8,428,570	8,428,570	
(105)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J				
(106)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K				
(107)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의2제5항	179				(감면한도 계산내용)
(108)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07년 개정전)	190				
(109)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192				
(110)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13A				
(111) 혁신도시 등 미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영 제58조제11항	18F				
(112)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에 대한 감면(수도권 안으로 이전)	영 제60조제5항	116				
(113)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에 대한 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영 제60조제5항	169				
(114) 수도권 밖 이전 공장에 대한 감면	영 제60조의2제13항	108				
(115) 수도권 밖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	영 제60조의2제13항	109				
(11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영 제61조제3항	117				
(117)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3조제7항	104				
(118) 영여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4조제7항	107				
(119)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영 제65조제3항	11B				
(120)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영 제65조제3항	119				
(121)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L				
(122)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M				
(123)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법 제85조의2제5항	11A				
(12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제6항	131				
(125)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	영 제102조	124				
(12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구에 대한 감면(실수방식)	영 제104조의21제5항	11F				
(137) 세액감면 합계		1A4		8,428,570	8,428,570	

4. 세액계산 및 신고서작성

1) 원천납부세액조정명세서(갑,을)

(1) 개념정리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귀속법인은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당해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기 위하여 원천납부명세서(갑,을)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원천납부명세서 갑표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세액을 기본으로 작성하며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을표는 채권 및 수익증권에서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된 내역을 작성한다.

(2) [세무사랑2] 운영방법

(주)한국세무의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하시오.

1. 적요 (이자발생사유)	2.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주민)번호	상호(성명)	3. 원천 징수월	4. 이자금액	5. 세율(%)	6. 법인세
1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113-81-73512	신한은행	6 20	500,000	14	70,000
2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108-21-85201	신한은행	12 20	1,000,000	14	140,000
3						

※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전자신고시 체크사항으로 거래처등록시 금융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해 두면 편리하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른다면 [999-99-99999]로 등록하여도 무방하다.

※ 본 서식은 [불러오기]를 통하여 계정별원장 데이터를 반영하며 [④ 이자금액]란에 커서를 이동하면 이자금액이 일반전표입력메뉴에 입력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일반전표입력시 「이자수입」계정과 「선납세금」계정이 하나의 전표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본 서식에 자동반영되므로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본서식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법인세 총 합계액과 선납세금의 계정별원장상의 합계금액 중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으로 알 수 있다.

1. 채권등의 명칭	구분	액면금액	2. 유가증권 표준코드	3. 채권이자 구분	6. 보유기간 이자계산일수	7. 보유기간 이자율	8. 보유기간이자 상당액(1×6×7)	9. 원천징수 상호(성명)
1								

※ 채권 및 수익증권에서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된 내역을 기록하여 작성한다.

2) 가산세액계산서

(1) 개념정리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고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가산세는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징수절차상의 편의성 때문에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행정상 제제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종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종 류	요 건	내 용
무신고가산세	부당 ⁹⁹⁾ 무신고시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무신고수입금액× 7/10,000
	일반무신고시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무신고수입금액 × 7/10,000
과소신고가산세	부당무신고시	Max[① ②] ① 추가납부할 세액×40% ② 일반무신고수입금액 × 14/10,000
	일반무신고시	추가납부할 세액×20%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당초과환급신고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40%
	일반초과환급신고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10%
무기장가산세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Max[①, ②] ① 결정 산출세액 × 20% ② 수입금액 × 7/10,000
납부불성실 가산세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 × 기간 × 3/10,000
환급불성실 가산세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환급세액 × 기간 × 3/10,000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납부하거나 징수납부하지 아니한 때	Min[①, ②] ①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미납기간 × 3/10,000 ② 미납(미달납부)세액 × 10%

주주등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설립등기일~2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미제출	출자금액×0.5%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 및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규정 참고	미수취금액 × 2%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소정기한 내 미제출	미제출(불분명)한 지급금액의 2% (3개월 내 제출시 1%)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때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2%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때	미제출·누락·불분명한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지분의 출자가액의 2%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계산서 미교부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불성실 기재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성실기재시	각 공급가액의 1%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미교부, 허위, 가공, 위장 등 발급 및 수취시	공급가액의 2%
기부금영수증 관련가산세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발급내역을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①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 × 1% ② 발급내역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 × 0.1%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불성실가산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Max[① ②] ① 건별 발급거부등 금액 × 5% ② 건별 5천원
현금영수증가맹점·미가입 불성실가산세	가맹점 미가입한 경우	가맹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0.5%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Max[① ②] ① 건별 발급거부등 금액 × 5% ② 건별 5천원

※ 무신고 및 과소신고 계산시 산출세액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됨.

(2) 가산세의 감면등

과세관청은 국제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

99) 부당한 경우라함은 다음과 같다.

-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 ② 허위증빙 도는 허위 문서의 작성
- ③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④ 장부와 기록의 과기
-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⑥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기위하여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원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 ②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무신고가산세에 한한다)
- ③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에 한한다)
- ④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이하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계산서합계표 제출, 사업장현황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 협력의무 불이행의 가산세는 기한경과 후 1월 이내에 이행하는 경우 당해 가산세를 50% 감면한다.

3) 최저한세조정명세서

(1) 개념정리

세액감면은 조세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나 세부담의 형평성과 세제의 중립성, 재정확보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자에게 누구나 최소한의 세부담을 지우기 위하여 최저한세 제도를 두고 있다.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제도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중합과세되는 경우에 한함)로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및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대상으로 한다.

(2) 최저한세 대상 감면 등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모든 조세특례 및 감면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모두 최저한세의 대상이 되나,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조세특례 및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음의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최저한세를 적용한 후의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① 외국납부세액공제(법법 57)
- ② 재해손실세액공제(법법 58)
- ③ 중소기업이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10)
- ④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조특법 63)
- ⑤ 법인의 공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3)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최저한세대상인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한세액은 다음의 ②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이 부담할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최저한세} = \text{MAX} \left[\begin{array}{l} \text{① 각종 공제 및 감면 후의 세액} \\ \text{② 각종 공제 및 감면 전의 과세표준} \times \text{최저한세율} \end{array} \right]$$

주 · 일반기업 : 10%(과세표준 100억에서 1,000억까지 12%, 1,000억 초과 16%)
 ·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 7%
 · 중소기업이 규모초과 및 법개정으로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9%로 한다)

따라서 부담할 세액이 [① 각종 감면 후의 세액]인 경우 모든 조세감면을 그대로 적용하며 부담할 세액이 [② 최저한세]인 경우에는 법인이 적용한 조세감면 중 법인이 임의선택하여 [① 각종 감면 후의 세액]이 [② 최저한세]과 최소한 같은 금액이 되도록 조세감면을 배제한다.

(4) 조세감면의 배제순위

기본적으로 회사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라 배제를 하며 정부가 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배제한다.

- ① 특례상각비의 손금산입 → ② 준비금의 손금산입 → ③ 조특법 제1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④ 세액공제¹⁰⁰⁾ → ⑤ 세액감면 → ⑥ 소득공제, 비과세

(5)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세액의 처리방법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대상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공제하며 각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 세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6) [세무사랑2] 운영방법

(주)한국세무의 세무조정내역을 기초로 하여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100) 세액공제 중 이월공제된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을 배제한다.

①구분		23	②감면후세액	③최저한세	④조정감	⑤조정후세액
(101)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	01		246,707,420			
소득조정금액	(102)의금산입	02	102,785,200			
	(103)손금산입	03	35,000,000			
(104) 조정후 소득금액 (101+102-103)	04		314,492,620	314,492,620		314,492,620
최저한세적용대상 특별비용	(105)준비금	05		100,000,000	21,829,801	21,829,801
	(106)특별상각,특례상각	06				
(107) 특별비용손금산입전소득금액(104+105+106)	07		314,492,620	414,492,620		336,322,421
(108) 기부금 한도 초과액	08		25,000,000	25,000,000		25,000,000
(109) 기부금 한도 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09		50,000,000	50,000,000		50,000,000
(110)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107+108-109)	10		289,492,620	389,492,620		311,322,421
(111) 이월결손금	11					
(112) 비과세소득	12					
(113) 최저한세적용대상 비과세소득	13					
(114) 최저한세적용대상 익금불산입	14					
(115) 차감소득금액(110-111-112+113+114)	15		289,492,620	389,492,620		311,322,421
(116) 소득공제	16					
(117) 최저한세적용대상 소득공제	17					
(118) 과세표준금액(115-116+117)	18		289,492,620	389,492,620		311,322,421
(119) 선박표준이익	24					
(120) 과세표준금액 (118+119)	25		289,492,620	389,492,620		311,322,421
(121) 세율	19		20%	7%		20%
(122) 산출세액	20		37,898,524	27,264,483		42,264,483
(123) 감면세액	21		15,000,000			15,000,000
(124) 세액공제	22					
(125) 차감세액 (122-123-124)	23		22,898,524			27,264,483

- ※ [② 감면후세액]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내용을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반영하며 [③ 최저한세]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 조세감면등을 직접 입력함으로써 감면을 적용하기전의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 ※ [② 감면후세액]의 차감세액과 [③ 최저한세]의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⑤ 조정 후 세액]의 [차감세액]이 [③ 최저한세]의 [산출세액]과 동일하도록 [④ 조정감]란에서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감면배제를 선택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에서는 세법에 의한 배제 순서대로 자동으로 감면배제액이 계산된다. 이러한 최저한세적용과정에서 배제된 감면 등의 금액은 감면세액조정명세서를 다시 작성하여 최저한세적용배제부분을 입력하여 감면세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동 금액에 대하여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4)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 개념정리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자진납부세액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는 서식이다. 본 서식에 반영되는 금액들은 지금까지 작성한 모든 서식상의 금액을 근거한 것이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부분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기납부세액 중 중간예납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을 반영하여야 하며 자진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분납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2) [세무사랑2] 운영방법

(주)한국세무의 회계자료와 세무조정내용을 바탕으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시오.

[3072]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wip검색			
종류	코드	삭제	원장조회	잔액조회	인쇄	저장	불러오기
①	101.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300,000,000	120.산출세액(120+119)		73,000,000
②	102.익금산입	02		200,000,000	121.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액	17	6,580,000
	103.손금산입	03		35,000,000	122.차감세액	18	66,420,000
	104.차가감소득금액(101+102-103)	04		465,000,000	123.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 감면세액	19	15,000,000
	105.기부금 한도 초과액	05		25,000,000	124.가산세액	20	20,000
	106.기부금 한도 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54		10,000,000	125.가감합계(122-123+124)	21	51,440,000
	107.각사업연도소득금액(104+105-106)	06		480,000,000	126.중간예납세액	22	15,000,000
③	108.각사업연도 소득금액(108-107)		480,000,000	127.수시부과세액	23		
④	109.이월결손금	07	15,000,000	128.원천납부세액	24	4,585,000	
⑤	110.비과세소득	08			129.간접회사등 외국 납부세액	25	
	111.소득공제	09			130.소계(126+127+128+129)	26	19,585,000
	112.과세표준(108-109-110-111)	10	465,000,000		131.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113.과세표준(113+112+159)	56	465,000,000		132.합계(130+131)	28	19,585,000
	114.세율	11	20%		133.감면분 추가 납부세액	29	320,500
⑥	115.산출세액	12	73,000,000		134.차가감 납부할 세액(125-132+133)	30	32,183,500
	116.지점유보소득(법제96조)	13			⑦토지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TAB로 이동)		
	117.세율	14			151.차가감 납부할 세액 계(134+150)	46	32,183,500
⑧	118.산출세액	15			15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	57	
	119.합계(115+118)	16	73,000,000		153.분납세액 계산 범위액(151-124-133-145-152+131)	47	31,835,000
⑨	120.산출세액				분납할 세액	48	15,917,500
	121.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액				155.몰납	49	
	122.차감세액				156.계(154+155)	50	15,917,500
	123.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 감면세액				차감납부	51	16,266,000
	124.가산세액				158.몰납	52	
125.가감합계(122-123+124)				160.계(157+158) [160=(151-152-156)]	53	16,266,000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는 최종적으로 각종 조정명세서의 내용을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본 서식에 반영한다. 특히 본 서식의 데이터 중 기납부세액 중 중간예납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1월(중소기업은 2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분납할 수 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법인이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서식에 분납할 세액란에 분납할 세액을 입력하여 신고하면 된다.

이때 분납하고자하는 세액에는 가산세는 제외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또한 분납할 세액의 입력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사실상 분납으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분납신청한 것으로 인정된다.

5. 신고부속 기타서식

1)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1) 개념정리

본 서식은 정확한 세무상의 자본을 계산하는 서식으로서 결산서상의 자기자본과 세무상 자기자본의 차이의 원인을 제공하는 세무조정사항 중 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과 실제 과세된 법인세비용 등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무상 자본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세무조정사항 중 유보로 소득처분된 사항은 자산 부채의 과대 또는 과소계상으로 인한 것으로서 차기이후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서 관리되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은 자본금과 적립금의 변동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또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은 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이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의 원인이 결손금 때문인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한 발생 및 처리내역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이월결손금 계산서로 나타내고 있다.

(2)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결손금이란 각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동 결손금이 차기로 이월된 경우 그것을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러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2009년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 5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감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¹⁰¹⁾

- ①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경우
- ② 자산수증익·채무면제액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경우¹⁰²⁾
- ③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은 경우
- ④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한 경우

(3) 이월결손금 계산서

이월결손금에 대한 정보는 기부금 한도액계산시 필요하나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잔액이 감소하지는 않는다. 이월결손금이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거나 자산수증익이나 채무면제액으로 충당되는 경우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발생연도와 그 잔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이월결손금의 발생연도와 상관없이 세무상 소멸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의 내용은 모두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관리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서식의 「Ⅱ. 이월결손금 계산서」에서 한다.

「Ⅱ. 이월결손금 계산서」에 이월결손금의 발생연도와 증감내역을 입력하여야 하며 「(13)당기공제액」은 「법인세과표및세액조정계산서」에서 과세표준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이월결손금으로 자동반영된다.(법인세과표및세액조정계산서 서식 109. 이월결손금 란)

또 「(14) 보전」은 자산수증익이나 채무면제액으로 충당된 경우를 의미하며 발생연도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다.

101)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업발전적립금,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 또는 충당된 이월결손금 및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02)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산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간혹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에 당기공제 이월결손금을 수동으로 입력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차기이후 이월결손금 공제시 이중으로 공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은 반드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에서 당기공제액이 자동으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세무사랑2] 운영방법

(주) 한국세무의 전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기말잔액은 다음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당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을 작성하시오.

구 분	금 액
감 가 상 각 부 인 액	23,500,000
퇴 직 급 여 총 당 금	50,000,000
대 손 총 당 금	500,000
재 고 자 산 평 가 증	-5,000,000
연구인력개발준비금	-70,000,000
퇴 직 연 금 부 담 금	-15,000,000

※ [② 기초잔액]과 [당기중증감]은 전기세무조정계산서 중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상의 기말 잔액을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3062]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wip 검색

종료 다음 코드 조정등록 삭제 전체삭제 직접입력 재무상태표조회 잔액조회 인쇄 저장 불러오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이월결손금

➡ **I.세무조정유보소득계산**

①과목 또는 사항	②기초잔액	당기 증 증 감		③기 말잔액 (=②-③+④)	비 고
		③감 소	④증 가		
미수수익			-3,459,000	-3,459,000	
건설용장비감가상각비한도초과	23,500,000	6,088,500		17,411,500	
공사미수금과소			32,800,000	32,800,000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	50,000,000	20,000,000	123,000,000	153,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		-5,000,000	
비품감가상각비한도초과		-176,000		176,000	
퇴직연금등순금산입	-15,000,000	-5,000,000	-100,000,000	-110,000,000	
대손충당금한도초과	500,000	500,000	5,839,990	5,839,990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3,000,000	-3,000,000	
부도어음과수표			1,000	1,000	
외화예금			-500,000	-500,000	
외화장기차입금			-5,000,000	-5,000,000	
상급비용(보험료)과대계상			-7,561,644	-7,561,644	
상품평가증	5,000,000	-5,000,000		10,000,000	
재고자산평가감			1,000,000	1,000,000	
보험료과대계상			4,997,260	4,997,260	
건설자금이자			700,000	700,000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전입	-70,000,000	-30,000,000		-40,000,000	
합 계	-6,000,000	-8,587,500	48,817,606	51,405,106	

[3062]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wip 검색

종료 다음 코드 조정등록 삭제 전체삭제 직접입력 재무상태표조회 잔액조회 인쇄 저장 불러오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이월결손금

➡ **I.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①과목 또는 사항	코드	②기초잔액	당기 증 증 감		③기 말잔액 (=②-③+④)	비 고
			③감 소	④증 가		
1.자 본 금	01	500,000,000		125,000,000	625,000,000	
2.자 본 잉 여 금	02			29,000,000	29,000,000	
3.자 본 조 정	15			-10,000,000	-10,000,000	
4.기타포괄손익누계액	18			-2,000,000	-2,000,000	
5.이 익 잉 여 금	14	269,675,000	269,675,000	591,279,603	591,279,603	
12.기타	17					
6.계	20	769,675,000	269,675,000	733,279,603	1,233,279,603	
7.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계	21	-6,000,000	-8,587,500	48,817,606	51,405,106	
8.법 인 세	22					
9.지 방 소 득 세	23					
10.계 (8+9)	30					
11.차 가 감 계 (6+7-10)	31	763,675,000	261,087,500	782,097,209	1,284,684,709	

➡ **III.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기초잔액 수정**

27.과목 또는 사항	28.코드	29.전기말 잔액	기초잔액 수정 (30)증가	(31)감소	32.수정후 기초잔액 (29+30-31)	33.비고

- ① 본 서식은 재무상태표상 기초 및 기말자본계정의 변동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것으로서 [F7 재무상태표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기말재무상태표의 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 ② [5. 이익잉여금]은 처분전 이익잉여금으로 기초잔액과 감소, 증가와 기말잔액이 서로 일치하게 입력한다. 그리고 기말잔액은 재무상태표상 차기이월이

익잉여금과 일치하여야 한다.

- ③ 또한 [8. 법인세]와 [9. 주민세]란은 손익계산서상 계상된 법인세등 비용과 실제 납부하는 법인세비용과의 차이를 기록한다.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출)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입) | 이월결손금

II. 이월결손금 계산서

1. 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

(6)사업연도	이월결손금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7) 계	(8)일반 결손금	(9)배분 한도초과 결손금((9)-(25))	(10) 소급공제	(11) 차감계	(12) 기공제액	(13) 당기 공제액	(14) 보 전	(15) 계	(16) 기 한 내	(17) 기 한 경과	(18) 계
1999-12-31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20,000,000			20,000,000		80,000,000	80,000,000
2010-12-31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계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20,000,000	50,000,000		70,000,000		80,000,000	80,000,000

2.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를 초과하여 배분받은 결손금(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 구분내역

(19) 법 인 세 신 고 사업연도	(20)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 료 일	(21) 순금산입한 배분한도 초 과 결 손 금	(22) 법 인 세 신 고 사업연도 결 손 금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된 이월결손금 사업연도별 구분			(26)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해당액 ((18)일반결손금으로 계상) ((21)+(22)의 경우는 0.
				(23) 합 계 ((23) = (25) + (26))	(24) 이월결손금 계상 사업연도	(25) 이월결손금 해당액 ((25)-(9)) (21)과(22)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	

- ① [이월결손금 계산서]에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는 곳으로서 본 계산서상에서는 이월결손금의 발생연도와 상관없이 소멸되지 아니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내용은 모두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자산수증익이나 채무면제익과 상계되는 이월결손금에는 발생연도에 상관없이 순차적으로 보전 적용되기 때문이다.(서식에서 (12)보전)
- ② [(10)소급공제]금액은 전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신청을 한 경우 이월결손금이 감소하므로 반드시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서식에서 [(13)당기공제액]의 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과세표준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이월결손금과 일치하여야 하며 [세무사랑2]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의 이월결손금란에 [(13)당기공제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법인세과세표및세액조정계산서 서식 109.이월결손금 란)

[3072]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wvip검색		
종료 코드 삭제 원장조회 잔액조회 인쇄 저장 불러오기						
①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당기순이익	01	300,000,000		
	소득조정금액	102.익금산입	02	340,141,121		
		103.손금산입	03	203,091,240		
		104.차가감소득금액(101+102-103)	04	437,049,881		
	105.기부금한도초과액		05	20,000,000		
	106.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107.각사업연도소득금액(104+105-106)		06	457,049,881		
②	과세표준	108.각사업연도소득금액(108-107)		457,049,881		
	계산	109.이월결손금	07	50,000,000		
		110.비과세소득	08	50,000,000		
		111.소득공제	09			
		112.과세표준(108-109-110-111)	10	357,049,881		
	159.선박표준이익		55			
③	산출세액	113.과세표준(113=112+159)	56	357,049,881		
	세액	114.세율	11	20%		
		115.산출세액	12	51,409,976		
	계산	116.지점유보소득(법제96조)	13			
		117.세율	14			
	산출세액	118.산출세액	15			
		119.합계(115+118)	16	51,409,976		
④	납부할세액	120.산출세액(120=119)		51,409,976		
		121.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액	17	12,320,000		
		122.차감세액	18	39,089,976		
		123.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 감면세액	19	25,000,000		
		124.가산세액	20			
		125.가감계(122-123+124)	21	14,089,976		
		기납부세액	126.중간예납세액	22		
			127.수시부과세액	23		
			128.원천납부세액	24	210,000	
			129.간접회사등 외국납부세액	25		
		세액	130.소계(126+127+128+129)	26	210,000	
			131.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산출세액	132.합계(130+131)	28	210,000	
			133.감면분 추가납부세액	29	361,680	
	134.차가감납부할세액(125-132+133)		30	14,241,656		
	⑤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TAB로 이동)					
	세액	151.차가감납부할세액계(134+150)	46	14,241,656		
		15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결정세액공제	57			
		153.분납세액계산범위액(151-124-133-145-152+131)	47	13,879,976		
		분납할세액	154.현금납부	48		
			155.물납	49		
		계산	156.계(154+155)	50		
			157.현금납부	51	14,241,656	
		납부세액	158.물납	52		
			160.계(157+158)[160=(151-152-156)]	53	14,241,656	

2) 주식등 변동(양도)상황명세서

(1) 개념정리

본 명세서는 당해 법인의 과세소득계산과는 상관없이 과세관청에서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이동정보를 파악하고자하는 차원에서 제출을 강제화하고 있다.

주식 등의 이동이 발생하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는데 과세당국에서 이에 대한 과세정보를 얻고자하는 차원에서 주식 등 발행법인에게 주식 등의 변동내역을 보고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법인세신고기한 내에 미제출시 가산세¹⁰³⁾가 부과된다.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자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¹⁰⁴⁾이 있는 법인(일정한 조합법인 등¹⁰⁵⁾을 제외한다)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① 주권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¹⁰⁶⁾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103) 참고예규: 서면2팀-1064, (2006.6.12)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104) 주식 등의 변동사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되는 주식등의 변동사항이라 함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등 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의 변동사항이 당해 사업연도의 주주명부 등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사항을 말한다.

105)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법인에서 제외된다.

- ① 조합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호 내지 제11호의 법인(단 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출대상)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
- ③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
- ④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 ⑤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106)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란 지배주주등을 말하며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② ①호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¹⁰⁷⁾가 소유하는 주식등

(2) [세무사랑2] 운영방법

(주)한국세무의 주주내역 및 출자내역을 참고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시오.

1. 기초자본금은 주당 10,000원에 30,000주를 발행하여 300,000,000원이다.
2. 10월 2일 유상증자를 주당 15,000원 20,000주를 실시하였으며 자본금 변경등기를 완료하였다.
3. 주주의 지분변동내역을 다음과 같다.

주 주	주민등록번호	기초지분율	기말지분율
대표이사-나세무	541011-1123562	35%	35%
대주주-홍길동	590309-1018918	65%	55%
김갑돌	610122-1496513	0%	10%

4. 대주주 홍길동은 3월1일 김갑돌에게 주당 13,000원에 3,000주를 양도하였다.(취득일: 2012.05.02)
5. 기초 및 기말주당시가는 20,000원으로 가정한다.
6. 유상증자시에도 동일한 지분율로 참여하여 유상증자 이후 지분의 변동은 없으며 회사보유분인 자기주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을 말한다.

107) '소액주주'란 소액주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 ①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 ②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시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 ③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

[306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 2. 주식(출자분)양도명세서

1 2 3 4 5 1/5 번째 명세서 | 상장변경일 | 합병, 분할일 | 사업년도 | 신고방법 | 0: 전자, 1: 매체, 2: 신고인합

1 자본금(출자금)변동 상황 ? | 증권상장여부 | 3 | 1: 주권상장, 2: 코스닥, 3: 비상장 | 무역면주식발행여부 | 2 | 1: 여, 2: 부

2 [자본금(출자금)변동 상황]과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사항]의 차이내용

차액	구분	기초	기말	구분	기초	기말
출주식수		30,000 주	50,000 주	출주식수	30,000 주	50,000 주
내입력누계		30,000 주	50,000 주	1주당 액면가액	10,000 주	10,000 주
총출주식수와의 차이				자본금	300,000,000 주	500,000,000 주

3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사항

화면정렬: 구분순 | 지분율재계산 | EXCEL자료로드 | EXCEL자료다운

번호	성명(법인명)	구분	구분	[1:개인, 2:우리사주]	등록번호	610122-1496513	거주국 코드	KR	대한민국
1	나세무	2.개인	기초	증가					
2	홍길동	2.개인	주식수	감소		5,000 주			5,000 주
3	김갑돌	2.개인	지분율			X			10 X
4			지분율누계			100.00 X			100.00 X

기중변동사항

종가	양수	증가	감소	상속	증여	기타
	3,000 주					
		2,000 주				

지배주주와의관계 09 기타

[주주 기타 인적사항(전자신고(매체)수락 사항 아님)]

유면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번호 - - - - - 팩스 - - - - -

- ※ 본 서식은 [자본금(출자금)변동 사항]을 먼저 입력한 후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다. 이 경우 [지배주주와의 관계]와 기중 변동상황을 정확하게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 ※ 주식이동상황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국세기본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선정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기한 내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주요계정명세서(갑,을)

법인세 신고내용 중 주요 계정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표시하는 양식으로서 법인세 신고내용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서식이다.

(1) [세무사랑2] 운영방법

(주) 한국세무의 세무조정사항을 바탕으로 주요계정명세서(갑,을)을 작성하시오.

[3063] 주요계정명세서						
☰ 총료 ☰ 다음 ☰ 코드 ☰ 삭제 ☰ 전체삭제 ☰ 채권등록 ☰ 원장조회 ☰ 잔액조회 ☰ 인쇄 ☰ 저장 ☰ 불러오기						
주요계정명세서(갑) 주요계정명세서(을)						
구분	구분	근거법 조항	코드	회사 계상금액	세무상부인 (조정)금액	차가감금액 (⑤-④)
준비금	(101)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 제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53			
	(102)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제33조	12	140,000,000	117,500,000	22,500,000
총당금 등	(103)퇴직연금부담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71		-100,000,000	100,000,000
	(104)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	13	13,000,000	5,839,990	7,160,010
손금	(105)대손금	법인세법 제 19조의2	72	1,500,000	1,000	1,499,000
	(106)활발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4조	55			
산입	(107)분할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6조	56			
	(108)물적분할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7조	57			
익금 불산입	(125)선물출자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7조의 2	50			
	(109)교환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50조	58			
기부금	(110)채무면제익 등 이월결손금 보전액	법인세법 제18조 제 6호	59			
	(112)법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41	30,000,000		30,000,000
비	(113)특례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64			
	(114)지정기부금 한도액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66			25,000,000
접대비	(115)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42	45,000,000	20,000,000	25,000,000
	(116)기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73	5,000,000	5,000,000	
접대비	(117)접대비 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49			26,120,965
	(118)접대비 ((119), (120)포함)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65	29,729,000	3,608,035	26,120,965
접대비	(119)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61	28,979,000	2,000,000	26,979,000
	(120)문화접대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67	3,000,000		

※ 「F12 불러오기」를 통하여 주요계정의 회사계상액과 세무조정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3063】 주요계정명세서 wvip검색

종료 도움 코드 삭제 전체삭제 채권등록 원장조회 잔액조회 인쇄 저장 블러오기

주요계정명세서(갑) | 주요계정명세서(을)

1. 재고자산·유가증권 평가

① 자산별	②신고방법	③평가방법	④회사계산 금액	조정계산금액		⑦조정액 (⑤또는 ⑥와⑥ 중 큰 금액-⑤)
				⑤신고방법	⑥선입선출법	
(101)제품 및 상품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	201,904,000	201,904,000		
(102)반제품 및 재공품						
(103)원재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26,000,000		27,000,000	1,000,000
(104)저장품						
유가증권	(105)채권					
	(106)기타	총평균법	33,000,000		30,000,000	-3,000,000
(107)합계			260,904,000	201,904,000	57,000,000	-2,000,000

2. 국고보조금 등·공사부담금·보험차익 손금산입 조정

⑧구분	⑨금 액	⑩취득고정자산가액	⑪회사손금계상액	⑫한도초과액 (⑩-⑪)	⑬미사용분익금산입액
108. 국고보조금 등					
109. 공사부담금					
110. 보험차익					

3. 가지금 등 인정이자 조정

적수		(16)차감(⑭-⑮)	(17)인정이자	(18)회사계상액	(19)조정액((17)-(18))
⑭가지금	⑮가수금				
59,100,000,000		59,100,000,000	7,939,196	1,250,000	6,689,196

4. 건설자금이자 조정

(20)구분	(21)건설자금이자	(22)회사계상액	(23) 상각대상자산분	(24)차감조정액((21)-(22)-(23))
(111)건설완료자산분				
(112)건설중인자산분		700,000		700,000
(113)계((111)+(112))		700,000		700,000

6. 세액계산및신고서-법인세과표 및 세액신고서

1) 개념정리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견손금처리계산서)
- ② 세무조정계산서¹⁰⁸⁾
- ③ 외부감사대상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현금흐름표
- ④ 기타 세무조정계산서의 부속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위 ① 및 ②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

108) 세무조정계산서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을 의미하며,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직접 작성한 자기조정계산서와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가 있으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다음의 법인은 반드시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규정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가. 다음 각 호에 의한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해당하는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외한다.
 - 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3.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
4.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법인
5.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6.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세무사랑2] 운영방법

(주) 한국세무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시오.

[3071]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F3]종료 [F4]도움 [F2]코드 [F3]마감 [F4]납부서인쇄 [F4]인쇄 [F4]저장 [F4]불러오기										
(13)법인구분	1	1.내국	2.외국	3.외투	비율%	(14)조정구분	1	1.외부	2.자기	
(15)종류별 구분	중소	중견	출자	그외	당기순이익과세	(16)외부감사대상	2	1.여	2.부	
영리	11	71	81	91		(17)신고구분	1	1.정기신고		
코스닥상장	21	72	82	92			2	2.수정신고	1.서면분석	
기타법인	30	73	83	93			3	3.기한후신고	2.기타	
비영리법인	60	74	84	94	50	(11)사업연도	2012-01-01 ~ 2012-12-31			
(19)결산확정일	-----				(20)신고일	20	-03-31	(18)법인유형별구분	100	기타
(22)신고기한연장승인	1.신청일 -----						2.연장기한 -----			
구분	여/부			구분	여/부					
(23)주식변동	2	1.여	2.부	(24)장부전산화	1	1.여	2.부			
(25)사업연도의제	2	1.여	2.부	(26)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2	1.여	2.부			
(27)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제출	2	1.여	2.부	(28)새 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2	1.여	2.부			
(29)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2	1.여	2.부	(30)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원단위)						
(31)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2	1.여	2.부	(32)국제회계기준(K-IFRS)적용	2	1.여	2.부			
(47)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	2	1.여	2.부	(48)감가상각변경신청승인신청	2	1.여	2.부			
(49)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										
구분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			
(33)수입금액	3,273,166,000									
(34)과세표준	457,049,881						457,049,881			
(35)산출세액	71,409,976						71,409,976			
(36)충부담세액	34,451,656						34,451,656			
(37)기납부세액	210,000						210,000			
(38)차감납부할세액	34,241,656						34,241,656			
(39)분납할세액							16,939,988			
(40)차감납부세액							17,301,668			
(41)조정번호	-	(42)조정자관리번호	-	(43)조정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44)예입처			은행	본(지점)					
	(45)예금종류			예금	(46)계좌번호					

※ 본 서식의 [(14) 조정구분]부터 [(49)기능통화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란에는 법인이 법인세신고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사항으로 [회사등록]사항의 전반적인 내용이 반영되며 세무조정내역의 주체의 구분, 결산 확정일, 신고일, 신고구분, 주식변동여부, 결손금소급공제환급 등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특히 [(26) 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은 신청여부에 따라 소급공제와 이월공제로 달라지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F3 마감]기능을 이용하여 법인의 세무조정내용을 마무리함으로서 추후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등의 서식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등의 여부를 체크함과 동시에 전자신고를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마감작업이라 한다.

※ [F8납부서인쇄]기능을 이용하여 본 서식에서 바로 법인세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다.

납부서출력

(전자)납부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년월	납부구분	세목	회계연도	수입 징수관서	계좌번호
0126	0214	1603	1	31	2016	서초 세무서	180658
상호(성명) (주)한국전자		사업자등록번호		214-81-21210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497-1						전화번호	-

귀속년도 2015년

세목명	납부금액	분할납부
법인세	17,301,660원	
교육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계	17,301,660원	

납부기한 2016년 03월 31일

출력 확인

7. 납부서 작성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1월(중소기업은 2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분납할 수 있다.

-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법인세납부서 [130781] - 정기 -

분할납부

(전자)납부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년월	납부구분	세목	회계연도	수입 징수관서	계좌번호
0126	214	1603	1	31	2016	서초 세무서	180658
상호(성명) (주)한국전자		사업자등록번호		214-81-21210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497-1						전화번호	

귀속연도/기분 2015년 귀속(확정분)

세목명	납부금액
법인세	17,301,660원
교육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계	17,301,660원

납부기한 2016년 03월 31일

은행 지점 우체국 수납인

원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또는 상호지속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총회사 : 1개 회사

※ 납부세액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의 차감납부세액과 [농특세과세 및 세액신고서]상에 작성된 세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며 분납을 신청한 경우 [분할납부]기능을 통하여 분납분에 대한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다.

8.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1) 법인지방소득세의 개요

법인세의 부가세형태로 부과·징수하는 지방소득세가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1) 납세의무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각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연도와 일치한다.

(3) 법인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
|--------------|---------|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 | ② 청산소득 |
| ③ 양도소득 | ④ 미환류소득 |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계산구조

법인결산서상 당기순이익(순손실)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	이월 결손금	
-	비과세 소득	
-	소득공제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	세율	2억이하: 1% 200억이하: 2% 200초과: 2.2%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사업장별 안분율	
=	사업장별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액	가산세를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가산
+	공제감면분추가납부세액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특별징수세액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자진납부세액	

(1)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즉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다.

나. 세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200억원 초과	3억9천8백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위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가. 일반적인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나.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frac{\text{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text{사업연도월수}} \times \frac{12}{\text{사업연도월수}} \times \text{세율} \times \frac{\text{사업연도월수}}{12}$$

(3)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에서 공제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③ 지방자치단체별 안분내역 등이 포함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 ④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만 해당함), 표시통화재무제표, 원화재무제표 등

위의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위 ①·②·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2)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가.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기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안분율에 의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한다.

$$\text{안분율} = \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 + \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 \right] \div 2$$

- ① 종업원수: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¹⁰⁹⁾의 수로 한다.
- ② 건축물연면적: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¹¹⁰⁾(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

나. 특별시 등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납부방법

같은 특별시·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연결법인의 경우에는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안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다.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text{과세표준} \times \text{표준세율} \times \text{안분율} \times \left(\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text{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1 \right)$$

라. 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의 제출

① 일반적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내국법인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분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총액과 위 지방소득세 안분기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09)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근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이사 등을 포함하며 국외근로자는 제외한다. 또한 계약은 그 명칭 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110)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가. 2 이상 사업장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 특례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납세지 특례

한편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다. 납부할 지방소득세액 및 납부기한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①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감면 세액
- ②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 ③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

4) 가산세

(1) 기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종류	요건	내용
무신고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산출세액×20%
	사기·부정한 행위로 무신고	산출세액×40%
과소신고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분세액×10%
	사기·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	①+② ① 부정과소신고분세액×40% ② (과소신분세액-부정과세신고분세액)×10%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미납세액×미납일수×3/10,000

(2)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무기장가산세)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또는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또는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9조 제2항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징수하려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안분하여 징수한다.

5) [세무사랑2] 운영방법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한국세무의 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을 작성하시오.

1. (주)한국세무의 당해사업연도의 정기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사 업 연 도	101.결산서상 당기순손익	01	250,000,000	④ 납 부 할 기 내 세 액 계 산	120.산출세액(120=119)	46,000,000		
	소득조정 금액	102.익금산입	02		130,000,000	121.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 세액	17	15,000,000
		103.손금산입	03		50,000,000	122.차감세액	18	31,000,000
	104.차가감소득금액(101+102-103)	04	330,000,000		123.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 감면 세액	19	5,000,000	
	105.기부금한도초과액	05			124.가산세액	20	1,000,000	
	106.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54			125.가감계(122-123+124)	21	27,000,000	
	107.각사업연도소득금액(104+105-106)	06	330,000,000		126.중간예납세액	22	5,000,000	
② 과 세 표 준 계 산	108.각사업연도 소득금액(108=107)		330,000,000	127.수시부과세액	23			
	109.이월결손금	07		128.원천납부세액	24	1,400,000		
	110.비과세소득	08		129.간접회사등외국납부세액	25			
	111.소득공제	09		130.소계(126+127+128+129)	26	6,400,000		
	112.과세표준(108-109-110-111)	10	330,000,000	131.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③ 산 출 세 액 계 산	159.선박표준이익	55		132.합계(130+131)	28	6,400,000		
	113.과세표준(113=112+159)	56	330,000,000	133.감면분추가납부세액	29			
	114.세율	11	20%	134.차가감납부할세액(125-132+133)	30	20,600,000		
115.산출세액	12	46,000,000	⑤토지등양도소득, ⑥미환류소득 법인세계산(TAB로 이동)					
116.지점유보소득(법제96조)	13		151.차가감납부할세액(134+150)	46	20,600,000			
117.세율	14		15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조정세액공제	57				
118.산출세액	15		153.분납세액계산범위액(151-124-133-145-152+131)	47	19,600,000			
119.합계(115+118)	16	46,000,000	154.현금납부	48				
			155.물납	49				
			156.계(154+155)	50				
			157.현금납부	51	20,600,000			
			158.물납	52				
			160.계(157+158) [160=(151-152-156)]	53	20,600,000			

2. 공제감면세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15,000,000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5,000,000

3. 가산세 1,000,000원은 증빙불비가산세이다.
4. 원천납부세액은 은행정기예금이자이다.
5. 당사는 서울에 본점이 있으며 부산에 지점이 있다. 본점과 지점의 종업원수 및 건물연면적은 다음과 같다.

구분	본점	지점
종업원수	30명	10명
건물연면적	200㎡	150㎡

-풀이-

「세무사랑2」에서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 ① 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 작성
- 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③ 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④ 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⑤ 지방소득세안분신고서(일반법인용) 또는 사업장별지방소득세안분신고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 작성

본 서식은 법인세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와 동일한 서식으로서 원천징수된 지방소득세를 확인하는 서식이다.

1. 과목 (이자발생사유)	2. 원천징수 의무자 사업자(주인)번호 상호(성명)		3. 원천 징수월	4. 이자금액	5. 세율(%)	6. 법인세	7. 법인 지방소득세	지방세 납제지
1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113-81-73512	신한은행(110-200-56985)	1	31	10,000,000	14	1,400,000	140,000 강남구
2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 ※ 본 서식은 일반전표메뉴에 입력된 자료를 「F12 전표불러오기」기능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 ※ 「6. 법인세」는 법인세신고서식인 「원천납부세액명세서」상의 「6. 법인세」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 ※ 본 서식의 작성요령은 「원천납부명세서」작성요령과 동일하다.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작성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3548]			
[>] 지방세		[>] 정기	
[>] 종료	[>] 도움	[>] 코드	[>] 전체삭제 [>] 인쇄 [>] 저장
1. 공제(감면)세액			
1. 구분	2. 근거법조항	3. 대상세액	4. 세액
합 계			
2. 이월과세액			
5. 구분	6. 법근거조항	7. 이월과세액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19조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0조		
영농조합인의 조합원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6조		
농업인 등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8조		
합 계			
3. 추가납부세액			
8. 구분	9. 법근거조항	10. 대상세액	11. 세액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농업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129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사업시행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132조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	「지방세법」 103조의5		
합 계			

「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작성

본 서식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해당하는 서식으로서 「f12 불러오기」기능을 이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내용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상의 선납세액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3547] *지방세* *정기*				
종류	코드	전기서식	삭제	
①	101.결산서상 당기순이익		250,000,000	
②	소득조정액	102.익금산입	130,000,000	
	103.손금산입		50,000,000	
	104.차가감소득금액 (101+102-103)		330,000,000	
	105.기부금한도초과액			
	106.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107.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4+105-106)		330,000,000	
③	108.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8+107)		330,000,000	
	109.이월결손금			
	110.비과세소득			
	111.소득공제			
	112.과세표준 (108-109-110-111)		330,000,000	
④	113.과세표준 (113+112+159)		330,000,000	
	114.세율		2%	
	115.산출세액		4,600,000	
⑤	116.지점유보소득			
	117.지점유보소득에대한법인세산출세액			
	118.산출세액			
	119.합계 (115+118)		4,600,000	
⑥	120.산출세액 (120-119)		4,600,000	
	121.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 세액			
	122.차감세액		4,600,000	
	123.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 감면 세액			
	124.가산세액			
	125.가산세액계 (122-123+124)		4,600,000	
	⑦	126.중간예납세액		
		127.수시부과세액		
		128.특별징수납부세액		140,000
		129.간접회사등외국납부세액		
	⑧	130.소계 (126+127+128+129)		140,000
		131.신고납부전가산세액		
		132.합계 (130+131)		140,000
	⑨	133.감면분추가납부세액		
134.차가감납부할세액 (125-132+133)			4,460,000	
⑩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TAB로 이동)				
⑪	151.차가감납부할세액계 (134+150)		4,460,000	
	15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결정세액공제			
	153.분납세액계산범위액 (151-124-133-145-152+131)			
⑫	154.현금납부			
	155.물납			
⑬	156.계 (154+155)			
	157.현금납부		4,460,000	
⑭	158.물납			
	160.계 (157+158) [160-(151-152-156)]		4,460,000	

「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

본 서식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해당하는 서식으로서 「세무사랑2」의 회사등록 정보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자료를 반영하여 자동으로 작성된다.

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3548] *지방세* *정기*																															
종류	도움	코드	마감																												
(13)법인가분	1	1.내국 2.외국 3.외투	비율%																												
(15)종류별 구분	중소 중견 출자 그외	당기순이익과세	(14)조정구분																												
영리 법인	상장법인	11 71 81 91	(17)신고구분																												
	코스닥상장	21 72 82 92		1.정기신고																											
	기타법인	30 73 83 93		2.수정신고																											
비영리법인	60 74 84 94	50	3.기한후신고																												
(19)결산확정일	-----	(20)신고일	20 -04-30																												
(22)신고기한연장승인	1.신청일	-----	2.연장기한																												
(23)주식변동	2	1.여 2.부	(24)장부전산화																												
(25)사업연도외제	2	1.여 2.부	(26)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27)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2	1.여 2.부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여부(비영리법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법인지방소득세</th> <th>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28)수입금액</td> <td></td> <td>3,272,366,000</td> <td></td> </tr> <tr> <td>(29)과세표준</td> <td>330,000,000</td> <td></td> <td>330,000,000</td> </tr> <tr> <td>(30)산출세액</td> <td>4,600,000</td> <td></td> <td>4,600,000</td> </tr> <tr> <td>(31)총부담세액</td> <td>4,600,000</td> <td></td> <td>4,600,000</td> </tr> <tr> <td>(32)기납부세액</td> <td>140,000</td> <td></td> <td>140,000</td> </tr> <tr> <td>(33)차감납부할세액</td> <td>4,460,000</td> <td></td> <td>4,460,000</td> </tr> </tbody> </table>				구분	법인지방소득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	(28)수입금액		3,272,366,000		(29)과세표준	330,000,000		330,000,000	(30)산출세액	4,600,000		4,600,000	(31)총부담세액	4,600,000		4,600,000	(32)기납부세액	140,000		140,000	(33)차감납부할세액	4,460,000		4,460,000
구분	법인지방소득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																												
(28)수입금액		3,272,366,000																													
(29)과세표준	330,000,000		330,000,000																												
(30)산출세액	4,600,000		4,600,000																												
(31)총부담세액	4,600,000		4,600,000																												
(32)기납부세액	140,000		140,000																												
(33)차감납부할세액	4,460,000		4,460,000																												
환급금계좌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는 경우)																															
(34)예입처		은행	본(지점)																												
(35)예금주																															
(36)계좌번호																															

※ 특히 「주식변동」여부와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여부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소득세안분신고서(일반법인용)」 또는 사업장별지방소득세안분신고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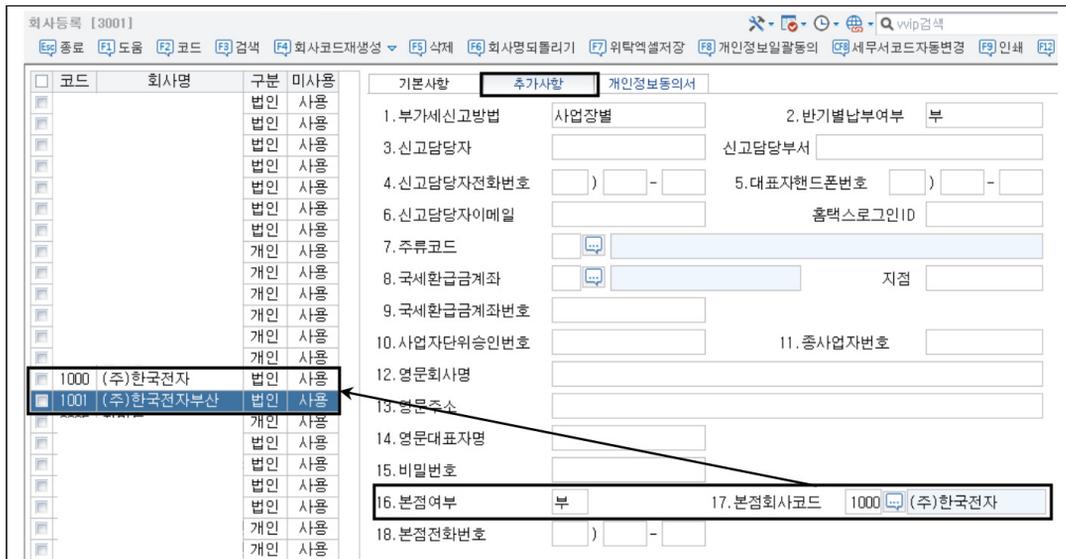
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법인이 하나의 사업장만 있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안분신고서(일반법인용)」을 작성하며,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장별 지방소득세안분신고서」를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여 신고하고 납부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세무사랑2」에서 본 서식을 작성하면 「지방소득세안분신고서」와 「지방소득세납부서」가 동시에 작성된다.

위 사례는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별 지방소득세안분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즉, 본점과 지점사업장의 경우 먼저 「회계관리-기초정보등록-회사등록」에서 본점과 지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회사등록」메뉴의 「추가사항」란의 「16.본점여부」에서 본점이 아닌 사업장은 「부」를 선택하고 반드시 「17.본점회사코드」를 입력하여야 지방소득세신고서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된다.

사업장별지방소득세안분신고서 [3558] > 지방세 > 정기 > wwp검색

종료 도움 코드 삭제 전체삭제 차액조정 인쇄 저장 불러오기 회사등록사항안 불러오기

영리 비영리 기한 내 기한 후 수정신고 주사업장 여부 여 부

사업자등록번호 214-81-21210 전화번호 - -
 사업장소재지 13707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497-1
 법인세 결정 · 결정 또는 수정 신고일 20 -03-31
 신고 · 납부일 20 -04-30 지방소득세납세지 서초구
 전자우편주소

구분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		특별징수	
	총액	안분후	총액	안분후	총액	안분후
법인세산출세액	4,600,000	3,039,680				
지방소득세산출세액	460,000	303,968				
공제세액						
가산세						
기납부세액	140,000	92,512				
경정수정 가감액						
감면분추가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211,450				
특별징수 납부세액					140,000	92,512
기타세액						
법인세총액						
지방소득세총액	4,600,000	211,450				

구분	종업원(명)	건축물(㎡)				종업원 건축물 전체 비율(%)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40	360	360			100
시군구내	30	200	200			평균 비율(%)
비율(%)	75	57.14	57.14			66.08

- ※ 본 서식에서는 본점과 지점사업장의 코드를 입력하여 납세지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고 「법인세산출세액」을 총액란에 직접 입력한다. 이 경우 지점사업장에서는 별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
- ※ 본 서식의 하단에 있는 본점과 지점의 종업원수와 건축물 면적을 사업장별로 각각의 종업원수 및 건축물 면적을 입력한다. 각각 사업장별로 입력된 정보를 자동으로 반영하여 안분율이 계산되며 그 안분율을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를 안분계산하게 된다.
- ※ 종업원 건축물 전체비율이 100%가 아닌 경우 「F8 차액조정」을 이용하여 100%로 수정하여야 한다.

사업장별지방소득세안분신고서 [3558] "지방세" "정기" wvip검색

종료 도움 코드 삭제 전체삭제 차액조정 인쇄 저장 불러오기 회사등록사함만 불러오기

<input type="checkbox"/> 코드	회사명	본지점	<input checked="" type="radio"/> 영리	<input type="radio"/> 비영리	<input checked="" type="radio"/> 기한 내	<input type="radio"/> 기한 후	<input type="radio"/> 수정신고	주사업장 여부	<input type="radio"/> 여	<input checked="" type="radio"/> 부
1000	(주)한국전자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120-85-37962	전화번호	-	-	-
1001	(주)한국전자부산	지점			사업장소재지	47809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 100	(명륜동)		
					법인세 결정 · 경정 또는 수정 신고일	20. -03-31				
					신고 · 납부일	20 -04-30	지방소득세납세지	동래구		
					전자우편주소					

구분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		특별징수	
	총액	안분후	총액	안분후	총액	안분후
법인세산출세액	4,600,000	1,560,320				
지방소득세산출세액	460,000	156,032				
공제세액						
가산세						
기납부세액	140,000	47,488				
경정수정 가감액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108,540				
특별징수 납부세액					140,000	47,488
기타세액						
법인세총액						
지방소득세총액	4,600,000	108,540				

구분	종업원(명)	건축물(㎡)			종업원 건축물 전체 비율(%)
		계	건물	기계장치	
법인전체	40	350	350		100
시군구내	10	150	150		평균 비율(%)
비율(%)	25	42.85	42.85		33.92

9.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1)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1) 결손금소급공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동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공제함으로써 직전 사업연도에 기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① 중소기업
- ②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법인
- ③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을 한 법인

따라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결손금소급공제환급]란에 「여」로 표시함과 동시에 [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이 신청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결손금은 자동적으로 이월공제가 적용되며¹¹¹⁾ 경정등청구도 불가능하다.

[3071]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3071]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13)법인구분	1	1.내국	2.외국	3.외부	비율%	(14)조정구분	1	1.외부	2.자기
(15)종류별 구분	중소	중견	출자	그외	당기순이익과세	(16)외부감사대상	2	1.여	2.부
영리 법인	상장법인	11	71	81	91	(17)신고구분	1	1.정기신고	
비영리법인	코스닥상장	21	72	82	92		2.수정신고	1.서면분석	2.기타
	기타법인	30	73	83	93	(11)사업연도	20	-01-01	- 20 -12-31
		60	74	84	94	(18)법인유형별구분	100	기타	
(19)결산확정일					(20)신고일	20	-03-31		
(22)신고기한연장승인					1.신청일				
						2.연장기한			
(23)주식변동	2	1.여	2.부		(24)자본적사회				
(25)사업연도외계	2	1.여	2.부		(26)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1.여	2.부	
(27)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제출	2	1.여	2.부		(28)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2	1.여	2.부	
(29)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2	1.여	2.부		(30)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원단위)				
(31)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2	1.여	2.부		(32)국제회계기준(K-IFRS)적용	2	1.여	2.부	
(47)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	2	1.여	2.부		(48)감가상각변경신청승인신청	2	1.여	2.부	
(49)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									

결손금소급공제에 대한 환급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환급세액} = \text{①} - \text{②}$$

111) 소득공제 법인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인46012-1314, 2000.6.7)

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을 수 없다.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② $\left(\begin{array}{l} \text{직전사업연도의} \\ \text{과세표준금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당해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 \text{소급공제를 받고자하는 결손금} \end{array} \right) \times \text{직전 사업연도의} \\ \text{법인세율}$

결손금소급공제에 대한 환급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여 적용한다.

$$\text{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frac{\text{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text{과세표준금액}} \times \frac{\text{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율}}{\text{법인세율}} - \text{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법인세 공제 감면세액}$$

(2) [세무사랑2] 운영방법

(주)한국세무의 해당 사업연도에서 결손금이 300,000,000원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직전과세기간의 법인세신고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결손금소급공제신청서를 작성하시오.

구 분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외의 경우
과세표준	70,000,000	300,000,000
세 율	10%	20%
산출세액	7,000,000	40,000,000
감면세액	2,000,000	15,000,000
차감세액	5,000,000	25,000,000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70,000,000-2,000,000/10% =50,000,000	300백만원-15백만원/10% = 150,000,000
이월공제 가능 결손금	250,000,000	150,000,000

과세표준	과표구분	산출세액	산출세액구분	세액별 과세표준
300백만원	100백만원	2,000만원(20%)	20,000,000	20,000,000/20% =100,000,000
	200백만원	2,000만원(10%)	5,000,000	5,000,000/10% =50,000,000
			15,000,000 (감면세액)	15,000,000/10% =50,000,000

법인조정-세액계산및신고서-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서

결손금소급공제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소급공제 받고자하는 결손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입력하여야 추후 이월결손금공제 적용시 오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특히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이는 결손금소급공제환급액의 한도액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으로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액보다는 작은 금액을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세무사랑2]에서 자동으로 계산지 아니하므로 직접 계산하여 정확한 공제액을 찾아야 한다.

※ [⑦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은 직접 계산하여 정확한 결손금액을 찾아 반영하고 차액은 이월결손금으로 반영되어야 불이익이 없다.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은 결국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계산에서 [⑭ 차감할 세액]이 [⑩ 공제감면세액]이 되도록 계산하여 입력한다.

$$\text{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 \text{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 - \frac{\text{직전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text{직전사업연도의법인세율}}$$

또 소급공제받은 결손금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서식의 [이월결손금]

에서 당기분 결손금과 소급공제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하다.

(6)사업연도	이월결손금 발생액			(10) 소급공제	(11) 차감계	감소내역		
	(7) 계	(8) 일반 결손금	(9) 배분 한도초과 결손금((9)=(25))			(12) 기공제액	(13) 당기 공제액	(14) 보 전
20 -12-31	300,000,000	300,000,000		150,000,000	150,000,000			
계	300,000,000	300,000,000		150,000,000	150,000,000			

2) 지방세법상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1) 결손금소급공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른다.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공제세액} = \text{Min}[(\text{①} - \text{②}), \text{③}]$$

- 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② $\left(\begin{array}{l} \text{직전사업연도의} \\ \text{과세표준} \end{array} - \begin{array}{l} \text{해당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 \text{소급공제를 받고자하는 결손금} \end{array} \right) \times \begin{array}{l} \text{직전} \\ \text{사업연도의 세율} \end{array}$
- ③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begin{array}{l} \text{공제 또는 감면된} \\ \text{법인지방소득세액} \end{array}$

(2) [세무사랑2] 운영방법

(주)한국세무의 해당 사업연도에서 결손금이 300,000,000원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직전과세기간의 법인세신고현황과 지방세신고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결손금소급공제신청서를 작성하시오.

구 분	법인세신고현황	지방소득세신고현황
과세표준	300,000,000	300,000,000
세 율	20%	2%
산출세액	40,000,000	4,000,000
감면세액	15,000,000	0
차감세액	25,000,000	4,000,000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300백만원-15백만원/10% = 150,000,000	30,000,000
이월공제 가능 결손금	150,000,000	0

소급공제지방소득세환급신청서 [9554] "지방세" "정기" Q vip검색

종로 도움 코드 전체삭제 불러오기 인쇄 저장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

(6)결 손 사 업 연 도	20 -01-01 ~ 20 -12-31	(7)직 전 사 업 연 도	20 -01-01 ~ 20 -12-31
결 손 사 업 연 도	(8)결손금액		300,000,000
결 손 금 액	(9)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300,000,000
직 전 사 업 연 도	(10)과세표준		300,000,000
법인지방 소득세액	(11)직전연도세율		2.0%
계 산	(12)산출세액		4,000,000
	(13)공제감면세액		
	(14)차감세액((12)-(13))		4,000,000
환 급 신 청 세 액	(15)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 ((15)=(12))		4,000,000
계 산	(16)차감할 세액(((10)-(9))×세율)[(16)≥((12)-(14))]		
	(17)환급신청세액((15)-(16))((17)≤(14))		4,000,000

신고일 : 20 년 04 월 30 일

※ 법인세법에 의한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작성방법과 동일하다. 법인세법의 규정과 달리 지방세법은 「(13)공제감면세액」이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산출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9)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은 「(10)과세표준」금액 범위 안에서 신청하면 된다.

※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환급액의 10%가 지방세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환급액이 되지만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세법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환급액의 10%보다 지방세법상의 결손금소급공제환급액이 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의 이월결손금잔액과 지방세법상의 이월결손금잔액이 달라지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0. 법인중간에납신고납부계산서

1) 개념정리

각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¹¹²⁾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중간예납이라 한다.

(1) 중간예납의무자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¹¹³⁾이다.

(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다음의 ①과 ② 중 선택하여 신고하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¹¹⁴⁾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②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12) 제외대상법인은 다음과 같다.

- ① 청산법인
- ② 세무서장이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을 확인한 휴업 등의 법인
- ③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중 분리과세 방법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법인
- ④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 ⑤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법인세 전액 감면법인
- 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13)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 ①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은 최초사업연도에도 중간예납을 하여야 한다.
- ②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③ 청산법인도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

114)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란 결손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가결산방법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으나 중간예납, 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

①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text{중간예납세액} = \left(\begin{array}{l} \text{직전 사업연도의} \\ \text{법인세로서 확정된-} \\ \text{산출세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직전 사업연도의} \\ \text{감면세액} \\ \text{원천징수세액} \\ \text{수시부과세액} \end{array} \right) \times \frac{6}{\text{직전사업연도월수}}$$

② 가결산방법: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계산

$$\begin{aligned} \text{중간예납세액} = & \left[\left(\begin{array}{l} \text{중간예납기간} \\ \text{의 소득금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이월결} \\ \text{산금 등} \end{array} \right) \times 12/6 \times \text{법인세율} \right] \times 6/12 \\ & - \text{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end{aligned}$$

(3)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

중간예납세액은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을 미납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4)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작성하는 사업연도가 3기이상인 경우 [세무사랑2]에서 별 문제없이 진행되지만 작성사업연도가 2기인 경우로서 직전년도실적기준으로 계산할 때 직전사업연도월수가 자동으로 12개월로 입력이 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1기 사업연도 사업개시일이 연도 중에 개시일 있는 경우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작성시 적용되는 직전사업연도월수가 12개월이 아닌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개시일은 [재무회계 전체메뉴-기초코드등록-회사등록-설립연월일 또는 개업연월일]로 적용하면 된다.

2) [세무사랑2] 운영방법

(주)한국세무의 전기 법인세 신고내역 자료는 다음과 같고 이를 이용하여 직전년도 실적기준으로 당기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과세표준	300,000,000
× 세율	20%
= 산출세액	40,000,000
- 세액감면	10,000,000
- 세액공제	5,000,000
+ 가산세	700,000
- 기납부세액	5,000,000
= 자진납부세액	20,700,000

※ 기납부세액에는 원천징수세액 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해답)

$$\text{중간예납세액} = (40,000,000 - 10,000,000 - 5,000,000 + 700,000 - 1,000,000) \times 6/12 = 12,350,000(\text{분납도 가능함})$$

[3077]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구분 1 1.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 기준 2. 자기계산기준 종류별구분: 영리법인 1. 중소기업

12. 사업연도 2013.01.01 ~ 2013.12.31 13. 직전 사업연도 월수 12 개월 14. 예납기간 20 .01.01 ~ 20 .06.30

15. 수입금액 16. 신고일 20 .09.02 17. 신고납부구분 1. 정기신고

신고 및 납부세액의 계산

구분		법인세	
①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 기준 (『법인세법』 제63조제1항)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	101. 산출세액	01 40,000,000
		102. 공제감면세액	02 15,000,000
		103. 가산세액	03 700,000
		104. 확정세액(101 - 102 + 103)	04 25,700,000
		105. 수시부과세액	05
		106. 원천납부세액	06 1,000,000
		107. 차감세액(104 - 105 - 106)	07 24,700,000
	108. 중간예납세액(107 × 6 / 직전사업년도 월수)	09 12,350,000	
	109.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1	
	110. 차감중간예납세액(108 - 109)	12 12,350,000	
	112. 가산세액	13	
	112. 납부할세액계(110 + 111)	14 12,350,000	
	113. 분납세액	15 2,350,000	
114. 납부세액(112 - 113)	16 10,000,000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3 / 10,000

※ 중간예납신고서 작성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을 적용할 경우 [세무사랑

2)에서는 직전사업연도월수가 자동으로 12개월을 반영하여 계산되도록 하고 있다. 이때 2기 사업자의 경우에는 1기 사업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계산하여 반드시 수정입력 한다. 즉 1기 사업연도의 법인세상당액을 연환산한 금액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3077]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구분		2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2. 자기계산기준		종류별구분: 영리법인 1. 중소기업	
12. 사업연도	20 .01.01 ~ 20 .12.31	13. 직전 사업연도 월수	12	개월	14. 예납기간	2013.01.01 ~ 2013.06.30			
15. 수입금액		16. 신고일	20 .09.02		17. 신고납부구분	1. 정기신고			
신고 및 납부세액의 계산									
구 분					법 인 세				
◎자기계산기준	115.과 세 표 준 금 액	31			75,865,000				
	116.세 율	32			10 %				
	117.산 출 세 액(115×116)	33			7,586,500				
	118.공 제 감 면 세 액	34			2,500,000				
	119.수 시 부 과 세 액	35							
『법인세법』 제63조제5항)	120.원 천 납 부 세 액	36							
	121.중 간 예 납 세 액(117-118-119-120)	37			5,086,500				
					38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 율	3 / 10,000		
123.납 부 할 세 액 계(121+122)					39			5,086,500	
124.분 납 세 액					40				
125.납 부 세 액(123-124)					41			5,086,500	

※ 자기계산기준에 의한 중간예납신고 범인은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작성하며 신고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참고서류와 함께 중간예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 개념정리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이다.

(1) 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을 감면받는 자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①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면제
- ② 비과세, 소득공제
- ③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은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이 아니다.

(2)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 법인세의 감면세액이며 세율은 20%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신고납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본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비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분납이 가능하며 본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분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다.

(4) 비과세

- ①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일정한 감면

- ②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③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 ④ 고용중대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⑤ 기술 및 인력개발,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

(5)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관련 오류사항

- 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등을 받은 자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여부의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②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등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여 신고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세무사랑2]에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를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2) [세무사랑2] 운영방법

구분	과목명	세율	과세표준	세액
(8)세액감면	108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세액감면	제33조의2	120	
	109 무역조정지원기업의사업전환세액감면	제33조의2	12E	
	110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주식양도차익감면	제10조·제40조	12F	
	111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112 행정중심복합도시 등공장이전조세감면	제85조의2	12G	
	113 사회적기업에 대한감면	제85조의6	12H	
	114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 대한세액감면(철수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2J	
	115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 대한세액감면(유지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11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조세감면	제121조의8	126	
	117 제주투자진흥지구등입주기업조세감면	제121조의9	127	
	118 기업도시 등 주거입주세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128	
	119 기업도시 등 개발사업시행자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129	
	1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감면	제121조의20제1항	121	
	1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2K	
12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H		
123		125		
(9)세액공제	13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3,000,000
	132 기업외어음제도개선유위험세액공제	제7조의2	132	
	13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현 세액공제	제8조의3	130	
	134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4	
	135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제25조	135	
	136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3	
	137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36	
	138 의약품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4	144	
	139 임시투자세액공제	제104조호 부칙제10	137	
	14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3E	
	14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5	
	142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38	
	143		145	
	144		145	

※ [법인조정-공제감면세액조정-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에 반영된 공

제감면세액 중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을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반영한다.

[3109] 농특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①법인유형	②과세표준		세율	③세액	
	구분	금액			
④일반법인	⑤	법인세감면세액	3,000,000	20%	600,000
	⑥				
	⑦				
	⑧	소계	3,000,000		600,000
③조합법인등	⑩	법인세감면세액		20%	
	⑪				
	⑫	소계			

[참고사항]

⑤ 법인세 감면세액의 금액에는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별지 제13호]의 ⑩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⑩ 법인세 감면세액의 금액에는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별지 제13호]의 2. 조합법인 감면세액 ①감면세액을 입력합니다.

※ [농특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상의 내용을 자동으로 반영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3108] 농특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항 목	농어촌특별세	작성방법
(7) 과 세 표 준	3,000,000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⑤ 또는 ⑩ 소계 란 중 ② 과세표준 금액을 입력합니다
(8) 산 출 세 액	600,000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⑤ 또는 ⑩ 소계 란 중 ③세액을 입력합니다.
(9) 가 산 세 액	미 납 세 액	
	미 납 일 수	
	가 산 세 액	
(10) 총 부 담 세 액	600,000	③산출세액 + ④가산세액
(11) 기 납 부 세 액		
(12) 차 감 납 부 할 세 액	600,000	⑩총부담세액-④기납부세액
(13) 분 납 할 세 액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 농특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14) 차 감 납 부 세 액	600,000	⑩차감납부할 세액-⑬분납할 세액
(15) 총 당 후 납 부 세 액	600,000	⑩ 차감납부 세액 - 총당할 농어촌특별세
(16)국세환급금 환 급 법 인 세		
총 당 신 청	총당할농어촌특별세	

신고년월일 : ____-__-__ 신고인(대표자) : 나세무

※ [농특세과표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며 분납세액은 법인세의 분납비율로 자동으로 반영된다.

세무사랑2를 활용한 법인세 신고 실무

발행일 : 2016. 2. 24.

발행인 : 한국세무사회 회장 백운찬

집필·편집 : 세무사 손창용

발행처 : 한국세무사회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 (서초동)

전 화 : 02-521-8907~8

팩 스 : 02-521-8909

홈페이지 : www.kacpta.or.kr

이 책의 내용을 한국세무사회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출판하는 것을 금합니다.

